



2023년 호원중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계획』



2023. 3 .



호원중학교
Howon Middle School

사고대응 **일이삼**

할 “사고대응 일이삼”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시 학생, 교직원 등은 가장 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님, 혹은 관리자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1

119 신고

전화 119번 누르기
사고 내용 간단명료하게 설명



2

구조

생존자 구조 및 구호 조치



3

보고

교사, 관리자에게 보고





목 차

I. 개 요

1. 근 거	1
2. 비전과 목표	1
3. 학교안전 위험성 분석	2
4. 추진 배경	2
5. 성과지표(교육부)	5
6. 학교안전계획의 구성 요소	6

II. 학교 현황

1. 2023학년도 1학기 전체 수업일람표 : [붙임 1]	7
2. 학교 일반적 현황	7
3. 학교안전책임관 및 부책임관 지정	8
4. 교직원 비상연락망(명단 및 연락처) : [붙임 2]	8
5. 학교 위치도	8
6. 교육청 재난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	9
7.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18
8.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망	19
9. 호원중학교 비상 상황 발생 시 사고 지휘 체계	20
10. 비상경보발령 및 상호연락 방법	26
11.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26
12.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등 교직원의 위기대응 전문기술 보유 현황	28
13. 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 포함) 배치 및 근무(활동) 현황	29

III. 예방 활동

1.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30
2.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30
3. 물품수령 방침 및 시설공사 안전관리	31
4.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차량 및 보행 등하교생 등)	31
5.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 방침	32
6.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 관리 방침	32
7. 보관구역{식료품, 유해(위험·화학) 물질, 장비,약품 등} 관리 방침	32

8. 교무실과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구축 현황	32
9. 비상탈출구, 2차 탈출구(창문) 관리	33
10. 소화기 관리 방침	33
11. 방과 전·후 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33
12. 외부인에 대한 시설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34
13. 보건실 치료 데이터 관리 및 활용	34
14.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관리 및 검토	35
15. 위험성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	35
16. 안전한 학교풍토의 조성	43
17. 학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4

IV. 대비 활동

1. '23년도 재난 위험성진단 결과에 따른 재난대응훈련계획	47
2. 비상배낭의 마련과 관리	49
3. 관련 도면(-비상시설 및 용품의 위치 표시 포함)	50

V.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1. 비상커뮤니케이션(재난대응기관, 교육청, 교직원, 학생, 학부모)	55
2. 장애학생 지원	55
3. 대피 / 역 대피 / 대피소 피난	56
4. 락다운	59
5. Drop-Cover-Hold	60
6. 폭염	61
7. 황사	62
8. 태풍·집중호우	63
9. 식중독	64
10. 실험·실습실 사고	65
11. 화재	67
12. 지진·해일	69
13. 흥기 난동	72
14. 무단 침입/인질극	73
15. 폭발 사고	75
16. 폭파 위협	78
17. 체험학습활동 사고<현장체험 버스사고>	79
18. 위험(화학)물질 유출사고	82

19. 응급 상황 86

VI. 복구 활동

1. 피해상황 보고 86

2.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 86

3. 시설 복구 86

4. 피해보상의 청구 등 86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일람표 87

[붙임 2]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88

[별지 2] 재난상황 보고서 103

[별지2-1] 피해 현황 사진 104

[별지 3] 자연재해(기상특보) 종류별 학교 수업대책 대응조치 105

[별지 4]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체계 111

[별지 5] 황사 발생 시 대응 체계 115

[별지 6]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체계 117

[별지 7] 학교 비상대책반 (호원중학교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118

I

개 요

1. 근거

- 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 나.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세부집행계획 수립), 동법 시행령 제28조
- 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지역계획 수립), 제6조(학교계획 수립), 제7조(평가)
- 마.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 바.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2. 비전과 목표

비 전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

목 표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토대 구축

중점 추진 과제 (4대 분야 10대 과제)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
2. 학교안전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시스템 구축

2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연수
내실화

1. 현장중심의 경기도안전교육과정 보급
2.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연수 강화
3. 학교 구성원의 안전 역량 강화

3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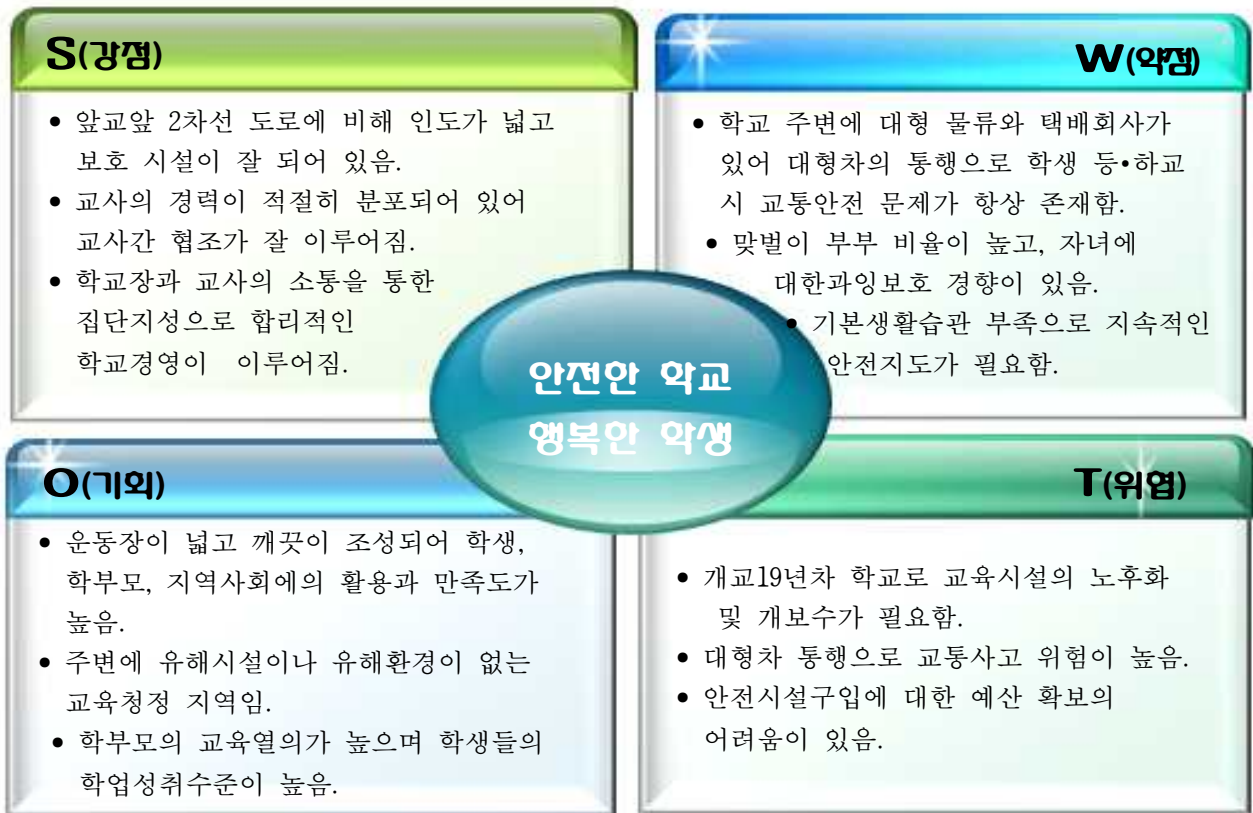
1.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
2. 교육활동 안전 강화 및 지원여건 마련

4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1. 학교 안전문화 진단 및 학교문화 혁신
2. 학교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3. 학교안전 위협성 분석

가. SWOT 분석



4. 추진 배경

가. 경주·포항 지진 발생,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빈번한 테러 발생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발생과 학교 안전 위협 요소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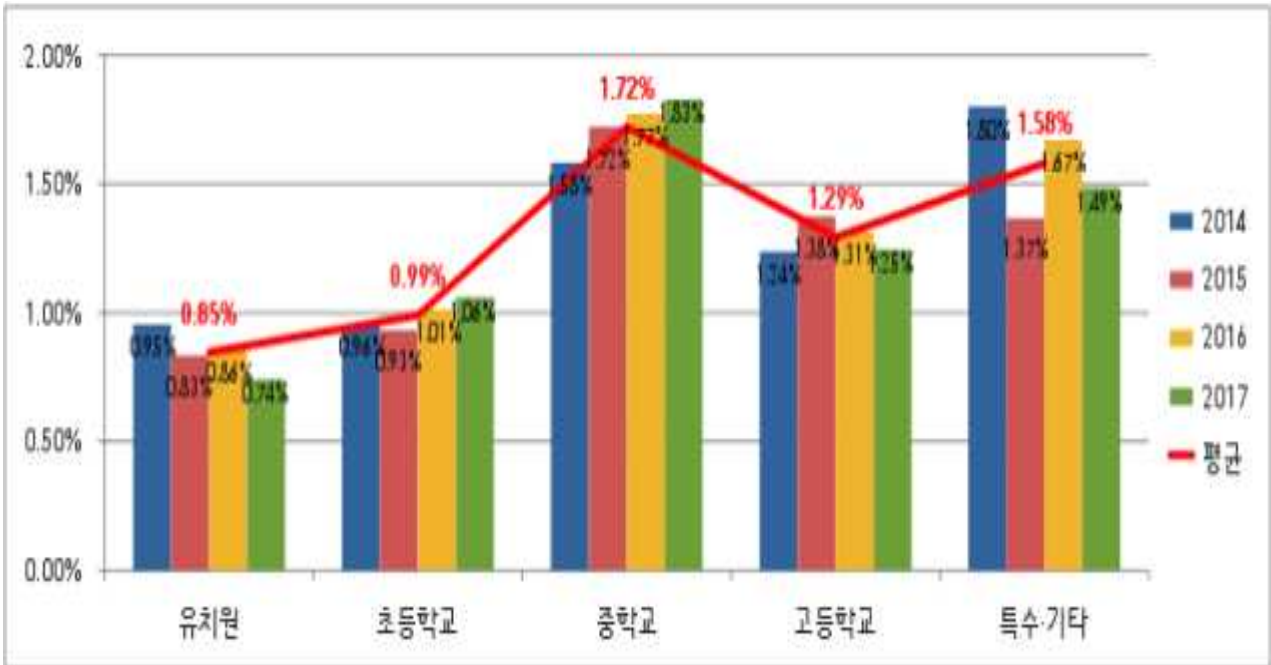
- 경주 지역 지진발생(2016.09.12.)으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등 총 417건, 약 63억원의 피해 발생. 재난 발생의 기존 틀 붕괴
- 포항 지역 지진발생(2017.11.15.)으로 대입수능시험장 학교의 벽체 균열 등 피해 발생. 수험생 안전을 위하여 사상초유의 대입수능시험 연기
-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재확인 함
- 학생과 교직원의 해외 체험학습, 여행 증가로 국외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대비와 국내로 유입 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대책 필요
- 우리나라 기온은 2099년까지 3~5.9℃ 상승 전망(교육부, 2015.)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대비 필요

나. 대형·복합·신종 유형의 재난 발생으로 국민 불안심리 확대

- 마우나리조트 붕괴(2014.2.), 세월호 참사(2014.4.), 글램핑 화재(2015.3.), 중동호흡기증후군(2015.5.), 금융 피싱, 싱크홀 발생 증가 등
- 서울 목동의 모 중학교 부탄가스를 이용한 테러(폭발)사고(20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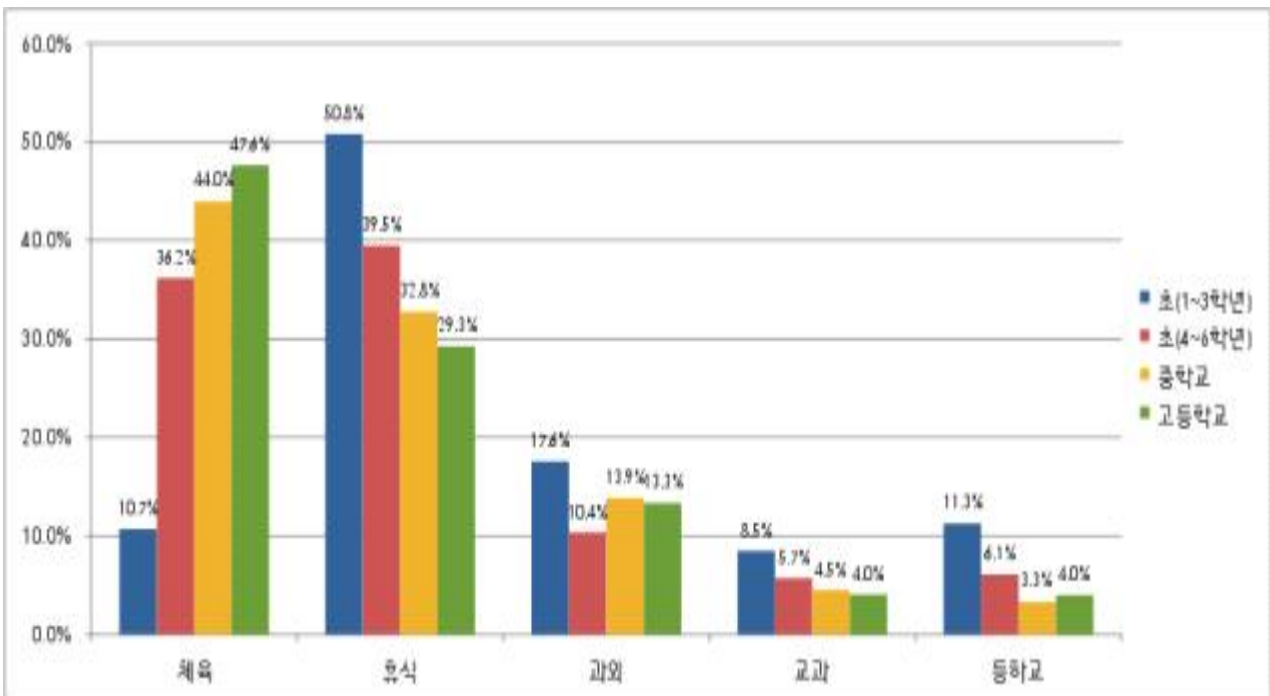
다.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안전한 학교 운영 토대 구축 필요

○ 경기도 각급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2014~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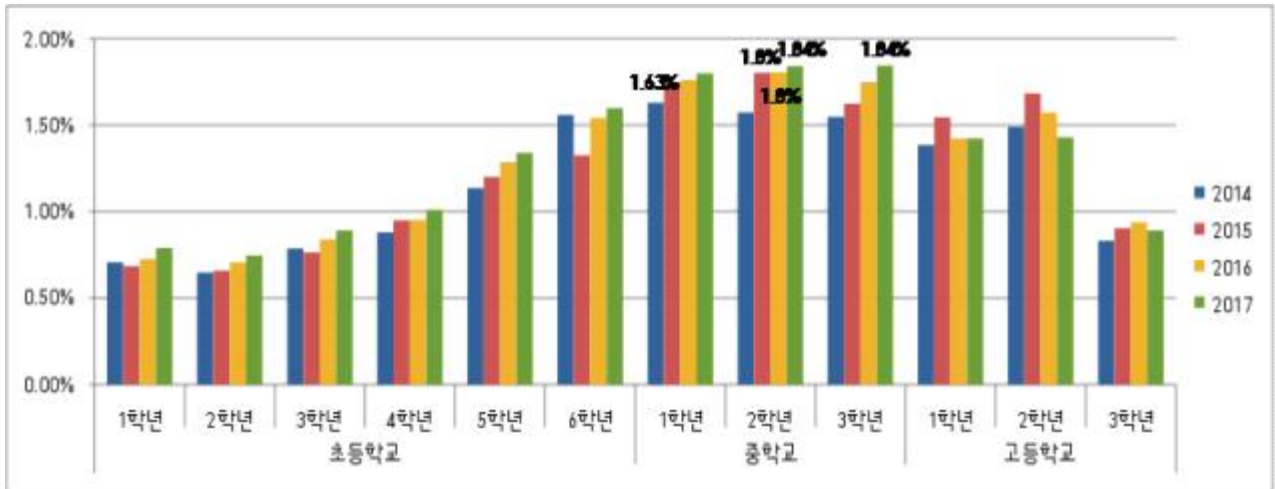
<출처 :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 경기도 각급학교 학년별 안전사고 발생 시간 현황(2014~2017년)



<출처 :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 경기도 각급 학년별 학생 수 대비 사고발생률 현황(2014~2017년)



<출처 :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료

라. 미세먼지, 황사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학생, 교직원의 건강관리 강화 필요

- 대응 매뉴얼 정비 및 공기 질, 환경·위생분야의 안전의식 강화 필요
- 보건, 환경 관련 전문적인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필요

마.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역량 제고, 계획수립 요구

-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전략 등 계획수립, 청사진 제시
-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안전교육 강화, 학교구성원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및 풍토조성 등 핵심과제 추진

5. 성과지표(교육부)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 7.8%('12~'14) → 0%('16~'18)

정책 분야	성과지표	2015	2018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학교안전사고 발생 증가율 (최근 3년 연평균)	7.8% ('12~'14년)	0% ('16~'18년)
	학교 안전책임관 지정·운영	52%	100%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생 연간 안전교육 시간	27시간 ('14년)	51시간
	안전사고에 대한 자기 대처능력 긍정 평가(학생)	78%	85%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율 (15시간 이상)	12% ('14년)	100%
	안전사고에 대한 자기 대처능력 긍정 평가(교원)	82%	85%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재난위험시설(D, E급) 해소	126동	0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최근 3년 평균)	487건 ('12~'14년)	438건 ('16~'18년)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 대처능력 긍정 평가(학부모)	81%	85%
	학교 안팎의 생활안전 체감도 (학부모)	73%	80%

6. 학교안전계획의 구성 요소

I. 학교 현황	II. 예방 활동	III. 대비 활동	IV.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V. 복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도(학기) 수업일람표 ▪ 교직원 명단과 연락처 ▪ 학교 위치도 ▪ 교육청 재난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 ▪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 조기관 비상연락망 ▪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 체 비상연락처 ▪ 안전 관련 MOU 체결 현황 ▪ 비상시 사고지휘체계 ▪ 비상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등 교직원의 위기대응 전문 기술 보유 현황 ▪ 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 포함) 배치 및 근무 (활동 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과 절차 ▪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스쿨버스, 차량 및 보행 등학교생 등) ▪ 마스터키(비상열쇠)관리방침 ▪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 관리 방침 ▪ 보관구역(식료품, 유해(위험/화학)물질, 장비, 약품 등) 관리 방침 ▪ 교무실과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현황 ▪ 비상탈출구, 2차탈출구(창문) 안전관리 ▪ 방과 전·후 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 돌봄교실 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 보건실 치료 데이터 관리 및 활용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관리 및 검토 ▪ 위험성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 ▪ 안전한 학교풍토의 조성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배포와 실제 훈련 ▪ 비상 배낭 마련과 관리 <p>※ 관련 도면 (건물배치도 건물(층별) 평면도- 비상시설 및 용품의 위치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커뮤니케이션 (재난대응 기관, 교육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 장애 학생 지원 ▪ 대피/역대피/ 대피소 피난 <p>*학교에서는 교육부 제공 매뉴얼을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락다운 ▪ Drop-Cover-Hold ▪ 폭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 황사 ○ 미세먼지 ○ 교통사고(도로) ○ 강풍 ○ 폭염 ○ 한파 ○ 태풍·집중호우 ○ 산불 ○ 폭발 사고 ○ 감염병 ○ 지진 ○ 에너지 부족 ○ 단수/식수 오염 ○ 낙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 보고 ▪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 ▪ 시설 복구 ▪ 피해보상 청구 등

II

학교 현황

1. 2023학년도 1학기 전체 수업일람표 : [붙임 1]
2. 학교 일반적 현황

학교명	호원중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우 480-855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05				
전 화	829-0742	FAX	829-0744	홈페이지	http://www.howon.ms.kr
교 장 (학교안전 책임관)			교 감		행정실장

학교 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총		비고				
	학급수		10		10		9(1)		29(1)						
	평균 학생수		302		303		259								
교직 원 현황	* 2023. 1말. 현재 안전연수 이수율 현황 : 64/74														
	교장	교감	행정 실장	교 사		행정직		계약제 직원		교육활동 참여		전체 (74명)		안전관련 자격증소지자	
	남	여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	1	15	42	1	3	1	7	0	8	18	62	0	0
시설 현황	학교평수			실험실수			기숙사유무			체육실 유무				기타	
	10376m ²			유			무			유					

3. 학교안전책임관 및 부책임관 지정

구분	직위	내용
학교안전책임관	학교장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총괄
학교안전부책임관	교감	학생안전교육 총괄
학교안전부책임관	행정실장	시설안전관리 총괄
학생안전인권부장	부장교사	안전관련 업무 총괄

4. 교직원 비상연락망(명단 및 연락처) : [붙임 2]

5. 학교 위치도

가. 학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05 호원중학교

나. 학교 주변으로 대형물류 창고, 택배회사, 예비군 훈련장 등이 있어 대형 차량 통행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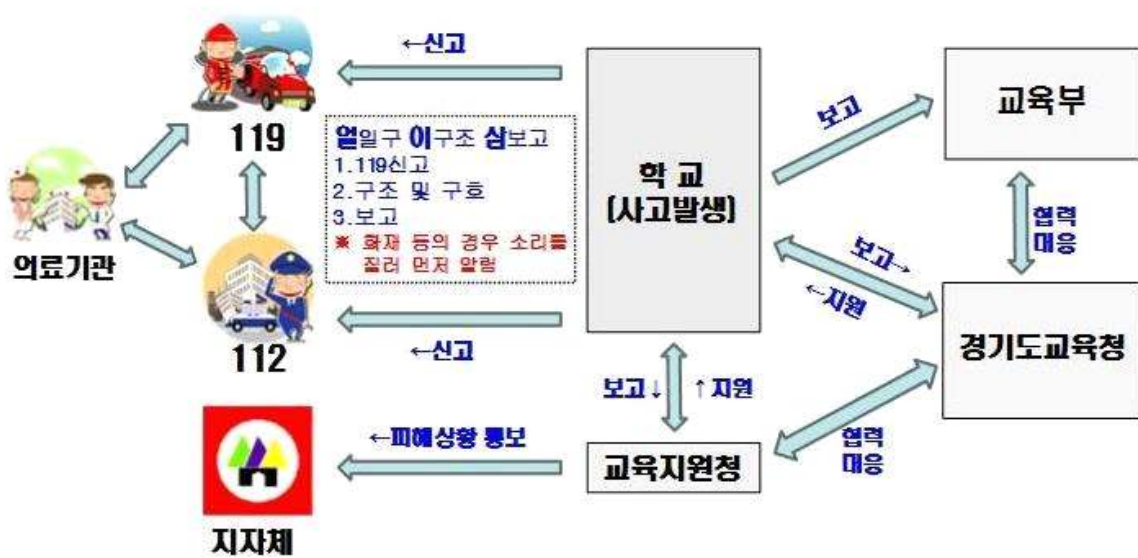
다. 학교 앞 2차선 도로가 있어 차량 통행이 많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음.



- 대형/중소형 긴급차량은 도로를 따라 교내와 연결
-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어려운 지역은 본관 뒤편
- 보건실(본관 1층) 070-4363-7776
- 행정실(본관 1층) 031-829-0744
- 숙직실(본관 1층) 031-873-1683

6. 교육청 재난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

가. 경기도교육청 상황전파 및 대응 체계 개요



※안전사고 내용 및 경중에 맞춰 상황전파 범위 적정하게 조정하여 적용

□ 운영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하여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의 협력 대응 및 재난안전사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대응

- 단계별(관심·주의, 경계, 심각) 점진적 대응체계 구분 운영
- 주요 재난발생 시 학교, 교육지원청 상황실, 유관기관과 초동대처 체계 가동
- 보고 수단은 가장 신속하고 즉각적인 보고가 가능한 다양한 통신 매체 활용

□ 재난·안전사고의 긴급 구호 및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

-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전 기관 협력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력 강화
- 학교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119신고(필요 시 112 신고)와 긴급구조구호를 실시한 후 관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 동시 보고
- 보고대상: 교육부 재난·안전사고 보고 대상을 참고하여 안전사고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 '외부인 침입에 의한 범죄'는 경중에 상관 없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보고

- 최초 보고 이후 사안보고서 제출 시 교육부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부(moe119@moe.go.kr)로 동시 제출

교육부 재난·안전사고 보고 대상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교육지원청은 NDMS(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시스템) 피해현황 탑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 보고)
- 도교육청 사안담당부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위 결재선 보고 및 경기도교육청 단계별 재난·대응 절차에 따라 대응
- 안전정책과는 사고 추이에 따라 상황판단회의와 학교안전회의 등 회의 주관


□ 재난·안전사고 보고 시 주의사항

- 재난·안전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임
단, ‘교직원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고

“교직원인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처리 요령

- 최초 1회 사안보고서 제출(의무)

- * 피해자 이름, 성별, 담당업무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기재 생략
- 본인이 추가 보고를 반대하는 경우 추가 보고 생략
- 최초 보고 시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음’을 명시

 도교육청 주요 사안별 담당부서

사 안 명	전화번호 (주간)	주관부서	협조부서
급식, 식중독 사고	031-249-0584~8	학생건강과	
건강, 보건, 감염병	031-249-0291~5	학생건강과	
체육교육, 학교운동부 사고	031-249-0286~7	학생건강과	
환경, 위생	031-249-0914	교육환경개선과	
미세먼지	031-249-0918,0922	교육환경개선과	
과학실 실험·실습실 사고	031-820-0673	융합교육정책과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사고	031-820-0605~6	미래교육정책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중 사고	031-820-0792	융합교육정책과	
학교폭력·성폭력	031-820-0752~9,0766	학생생활인권과	
수상활동(물놀이) 중 안전사고	031-249-0291	학교안전기획과	
외부인 침입에 의한 범죄	031-249-0692	학교안전기획과	직종별 인사담당
자살, 자살시도, 자해, 아동학대	031-249-0863	학생생활인권과	
유괴·실종 사고 교통 및 통학 중 안전사고 (유치원) (특수학교)	(인권) 031-249-0862 (유아) 031-820-0594 (특수) 031-820-0771~0788	학생생활인권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감염병(유치원)	031-820-0594	유아교육과	
아동학대(유치원)	031-820-0594	유아교육과	
특수학교 안전사고	031-820-0771~0776, 0780~0789	특수교육과	
유치원 안전사고	031-820-0594	유아교육과	
교원에 의한 학교성폭력	031-249-0231	교원정책과	
자연재난, 화재, 폭발, 승강기	031-249-0683~4	학교안전기획과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031-249-0926	교육환경개선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안전사고	031-820-0686~9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	031-820-0544	평생교육복지과	
국지도발 및 테러에 의한 피해	031-820-0699~0700	운영지원과	

◆ 사안을 접수한 주관부서에서 대응 및 지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부서를 협조 부서로 지정하는 경우 **협조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의무적 협조**

※ 사안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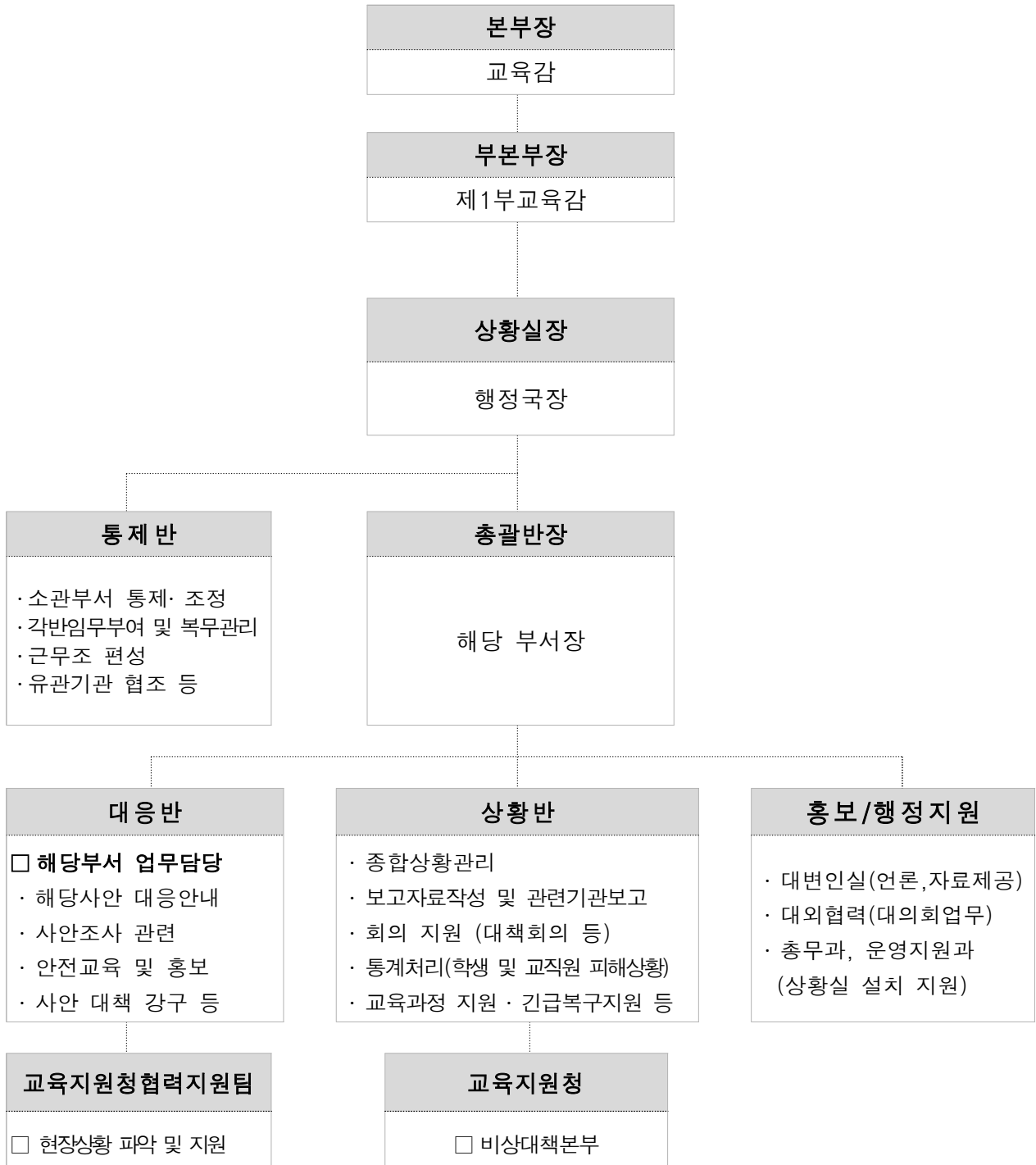
야간 및 공휴일	<☎>031-820-0514, 0524 <FAX> 031-821-1023
----------	--

□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 대책본부(비상상황실)

○ 기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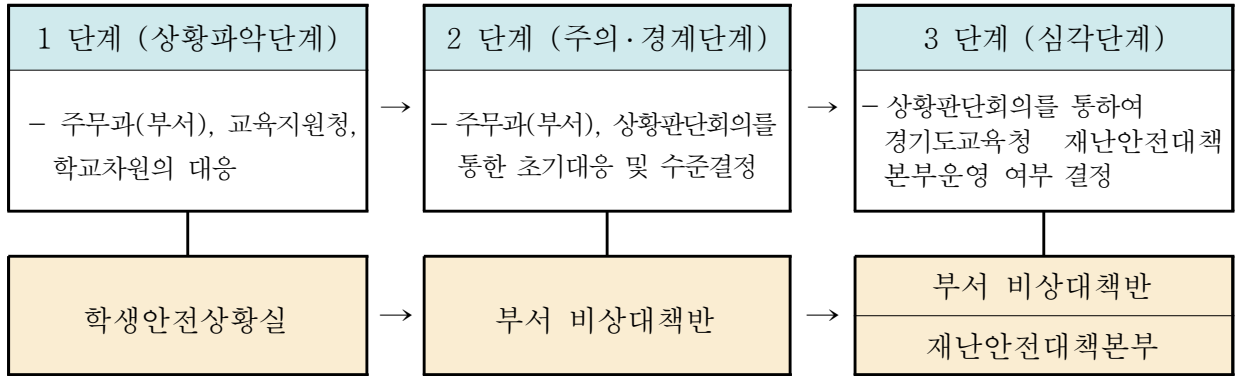
- 현장중심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신속한 복구지원
- 재난·안전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 유관기관 지원요청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재난상황 관리

○ 조 직



○ 설치 및 운영

- 사망 3명 이상 혹은 부상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재산의 피해정도가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 및 경기도 지역의 **종합적 대처가 필요한 재난 발생 시 편성·운영**



※ 3단계(심각단계) : 해당 사안에 대한 대처를 부서 비상대책반에서 재난안전 대책 본부로 이관 여부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결정

○ 상황판단회의

- 구성 : 제2부교육감, 안전지원국장, 해당 실·국장, 안전정책과장, 해당 부서장
- 기능 (재난 발생시 수시 개최)
 - ▶ 대응수준 결정(비상대책반 운영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전환 등)
 - ▶ 단계별 비상근무 범위 결정 및 진행단계별 지원사항 판단
 - ▶ 지휘권 이양시 교육지원청 파견근무자 범위 결정

○ 비상대책반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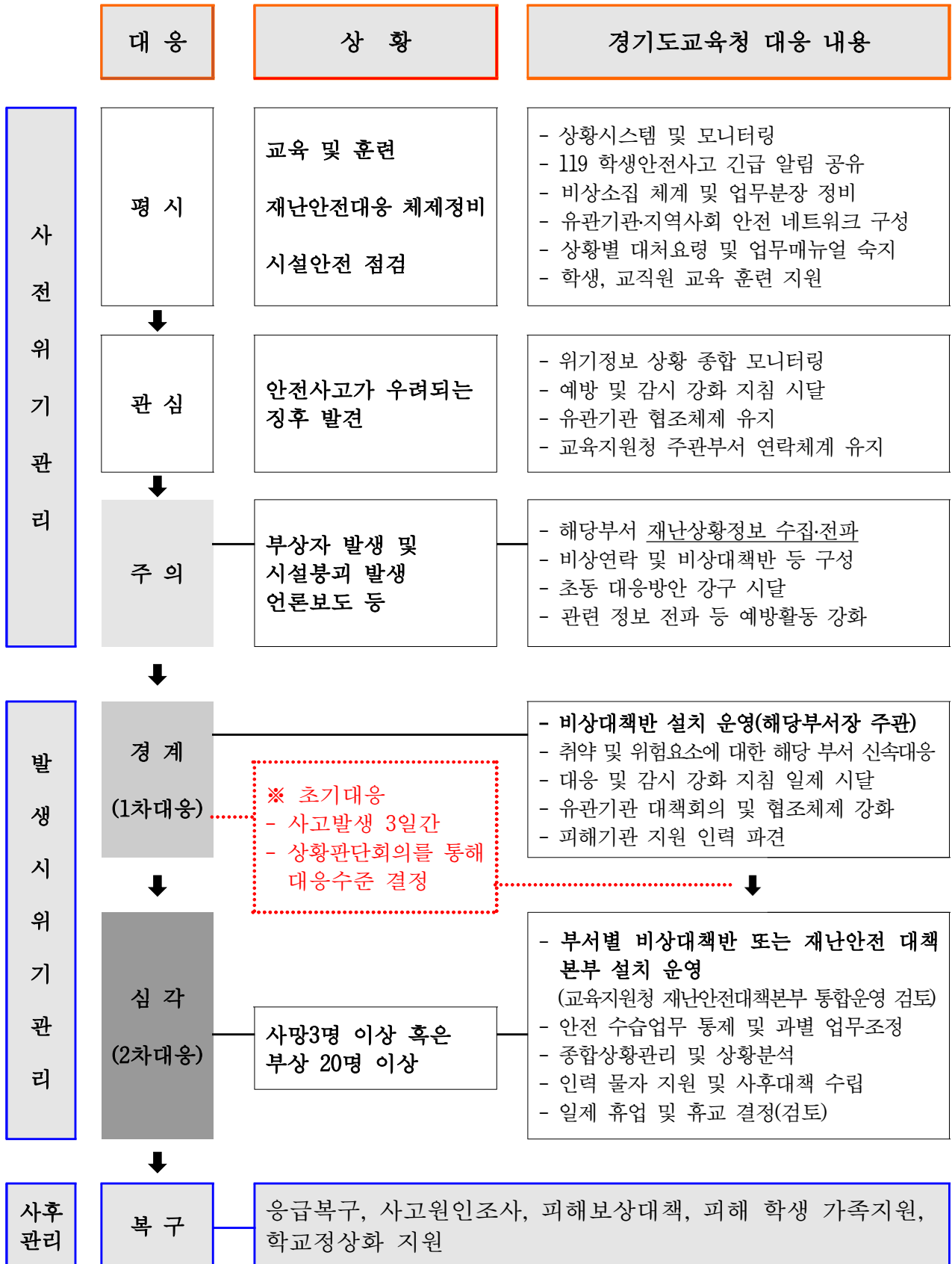
- 구성 : 재난유형별 대응책임업무 부서장을 비상대책반장으로 대책반 구성
- 기능
 - ▶ 재난안전 상황 발생시 구성(재난유형별 대응책임)
 - ▶ 재난상황, 조치상황, 재난수습, 재난현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재난상황에 따라 초기대응 및 본부장에게 보고
 - ▶ 적절한 안전대책과 인명 보호 대책 확인 및 단계별 비상대응
 - ▶ 지휘권 이양시 교육지원청 지원 범위 결정

○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원 임무

※ ()안은 본청 조직임

직 책		초기 대응 (발생 3일 간)	중장기 대응
본부장	교육감	- 재난대책본부 업무총괄	상황판단회의 후 결정
부분부장	제1부교육감	- 본부장 보좌 - 본부장 유고시 업무대행	상황판단회의 후 결정
상황 실장	행정국장	- 본부장, 부분부장 보좌 및 대책본부 운영 - 재난발생시 안전 수습업무 통제 및 과별 조정 업무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정보공유	상황판단회의 후 결정
		- 재난·안전정책 업무 총괄 - 경기도교육청 기관 안전환경 개선 - 재난·안전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통제반	【주무】 학교안전 기획과	- 소관부서 지정 및 통제·조정 - 각반임무부여 및 복무관리 - 대외협력, 유관기관 협조 - 상황수준에 따른 근무조 편성 총괄	상황판단회의 후 결정
총괄 반장	해당부서장	- 종합상황관리 재난상황 총괄	상황판단회의 후 결정
대응반	해당부서 (관련부서)	- 교육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판단회의 운영) - 종합상황관리·재난상황 분석 판단 - 긴급상황관리 (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피해상황 등 파악 -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처리 보고 및 조치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주요인사 현장 방문 시 상황보고 및 보고서 작성 - 상황판단회의 결과 조치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교육지원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지원	상황판단회의 후 결정
상황반	관련부서	- 관련정보 수집 및 상황접수 - 보도자료작성 및 교육부 보고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각종기관 보고 및 통제 - 대내외 공개등급 선정 - 상황보고 준비 / 종합 - 학교공문발송 및 문의전화 응대 - 현장대응 및 실질적 조치 - 피해상황 파악·보고 및 사고원인 조사 - 사고현장 수습처리 업무 - 응급 복구조치 및 확인 - 시설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 사후 대책(시설, 심리지원 등) 수립	상황판단회의 후 결정
홍보/행 정 지원	대변인 대외협력 총무과 운영지원과	- 지휘체계 내에서 대외 언론창구 단일화 - 오보 및 추측성 보도예방 대책 강구 - 필요시 대외홍보 관련 업무(홍보 및 언론보도) - 재난 상황별 학생 행동요령 및 수업방안 홍보 - 대의회업무 수행 (대외협력) - 상황실 설치 지원 (총무과, 운영지원과)	좌 동
기타	교육지원청 협력지원팀	- 현장상황 파악 및 지원	좌 동
	교육지원청	- 비상대책본부	좌 동

○ 경기도교육청 단계별 재난·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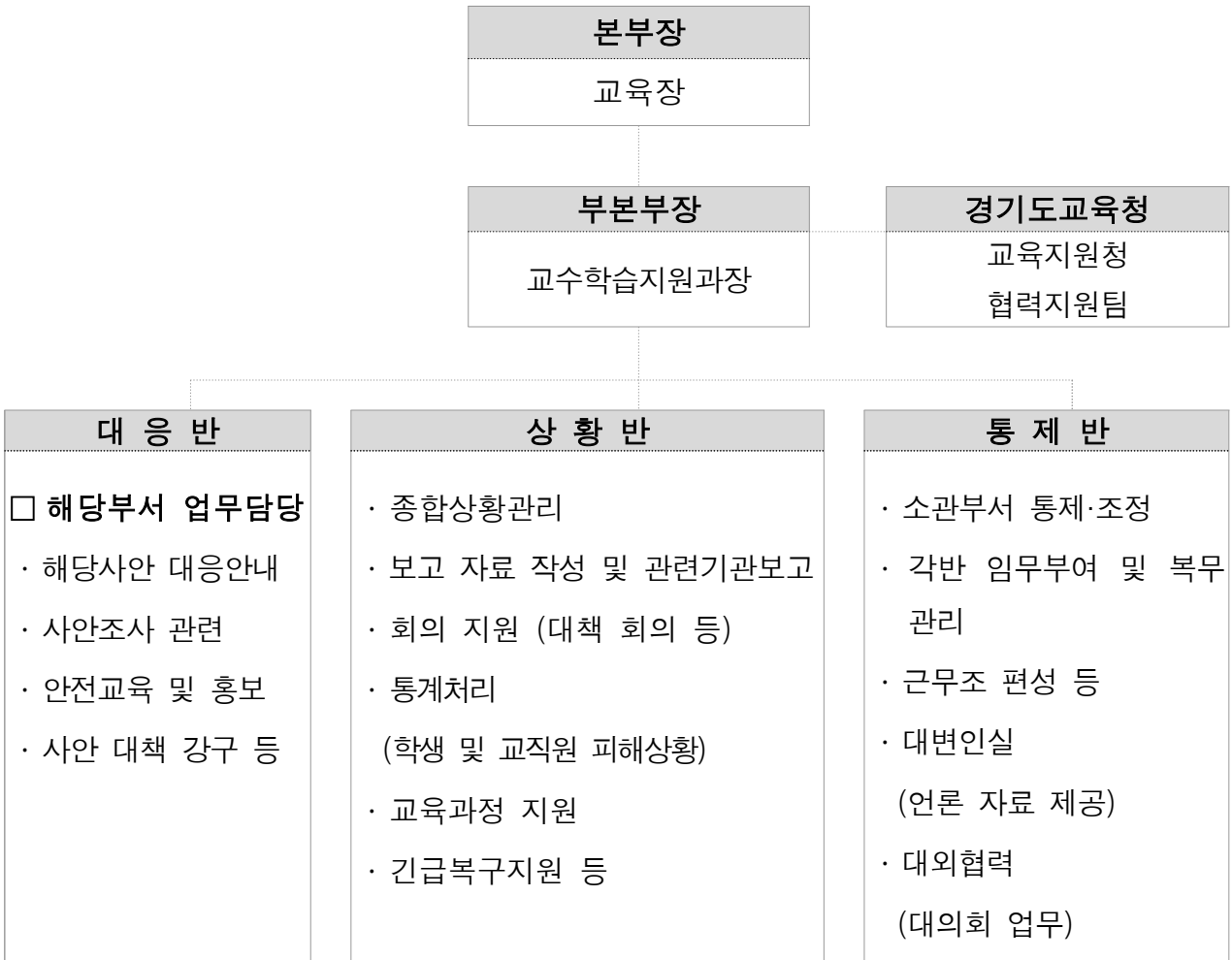
나. 의정부교육지원청 재난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

- 학교교육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한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교육지원청 중심의 비상대책본부 신속히 설치·운영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 구축
- 지역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분야별 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공동 대응

1) 기능

- 가) 휴업, 교육과정 운영, 민원상담, 계기교육 및 생활습관 교육 지원
- 나) (예시)시·군청 보건소, 의료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역자율성 제고
- 다)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 지역사회 분야별 전문가 활용으로 학교교육 조기 정상화 지원
- 라) 교육지원청 자체 상황처리가 어려운 경우 경기도교육청 협력지원팀 협력체계 운영
- 마) 지역 교육지원청 상황판단회의 : 도교육청 상황판단회의에 준함

2)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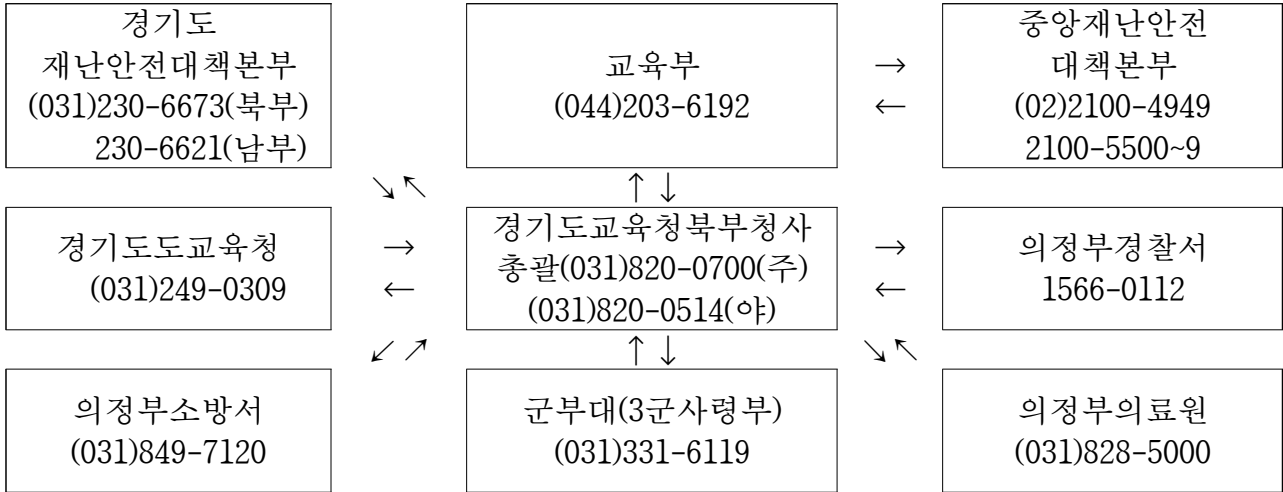


3)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담당부서 구성현황

부 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주요업무
학생배치관재팀 경영지원팀	팀장	000	031-820-0140	◦ 사전대비 업무 총괄
	주무관	000	031-820-0143	◦ 재난 상황접수 및 전파.보고
	주무관	000	031-820-0125	◦ 유관기관 협조.지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장학사	000	031-820-0030	◦ 재난발생 시 학생 수업관리 (휴업 등.하교시간조정 등 확인.점검)
	장학사	000	031-820-0040	
교육시설팀	팀장	000	031-820-0180	◦ 시설 안전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총괄
	주무관	000	031-820-0181	◦ 신속한 시설 안전 대응 및 응급복구 대응체 제 구축
	주무관	000	031-820-0182	
	주무관	000	031-820-0184	
	주무관	000	031-820-0185	
	주무관	000	031-820-0186	
	주무관	000	031-820-0187	
	주무관	000	031-820-0183	

7.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나. 도교육청

부서명	전화번호	FAX	비고(분야)
총무과	2490-301~7	249-0393	1부교육감소속사고보고
행정관리담당관	2490-611~6	246-6999	정보보안
교육과정지원과	2490-136~40	253-0030	학교교육과정
과학직업교육과	2490-261~5	246-6590	실험·실습, 특성화고안전
체육건강과	2490-586~9	248-2119	보건, 감염
친환경급식과	2490-450~454	249-0456	급식
(북부)민주시민교육과	820-0666	820-0659	자살
(북부)유아특수교육과	820-0605~0610 0671~0675	820-0679	유아특수 안전사고
(북부)안전정책과	820-0691~0696 0698~0703	820-0719	안전정책기획 안전협력, 비상계획
(북부)학생안전과	820-0751~0755	820-0769	체험학습, 학교폭력 학생생활안전, 법률
(북부)재난예방과	820-0726~0730	820-0749	방재재난, 안전지원 예방교육
(북부)안전관리과	820-0771~0775	820-0799	시설안전, 소방안전, 수련체육시설

8.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망

가.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망

연번	기관	주소	주무부서	전화	비고
1	한강유역환경청	하남시 망월동 231	화학물질관리과	031-790-2894	
3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번지	산림경영팀	031-240-8901	
4	경기지방경찰청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비과	031-888-2761 1566-0112(대)	
10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6	구호복지팀	031-230-1600	
11	아주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응급의학과	031-219-5114, 4660 031-219-7700	
12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정부시 천보로 271	응급의학과	031-820-3000,3400 1661-7500(대)	
13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조협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구호팀	02-3272-0123 1544-9595(대)	
22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4-1 SCC빌딩2-3층	검사2팀	031-259-3564 야)259-3500	
23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4	안전총괄팀	031-701-0141~9	
24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안전관리역실	400-7239,400-7204 야)400-7315-7	
25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33번길 21	기술부	031-240-4412 야)240-4400	
26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0	기술지원팀	031-230-8335 야)230-8203	

나. 권역응급의료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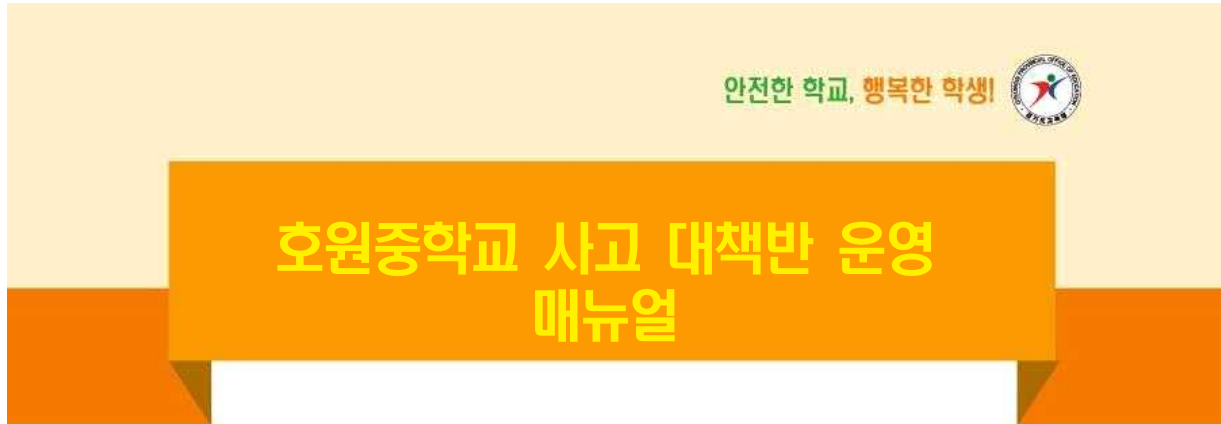
관할지역	의료기관명	소재지	대표전화	응급실전화
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6114	219-7700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천보로 271	1661-7500	820-3300

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현황

지역	의료기관명	대표전화	응급실	주소
고양	보험공단일산병원	900-0114	900-0760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인제대일산백병원	910-7114	910-7119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명지병원	810-6114	810-7119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의정부	의정부의료원	828-5000	828-5119	의정부시 흥선로 142
	신천병원	871-8200	교)139	의정부시 서부로 681-2
	의정부백병원	856-8111	842-1211	의정부시 금신로 312
남양주	현대병원	574-9119	574-9119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남양주우리병원	570-1000	570-1000	남양주시 오남읍 진전오남로797번길 9
양주	양주예쓰병원	825-5000	825-0119	양주시 회정로 103
포천	포천의료원	539-9114	539-9119	포천시 포천로 1648
	우리병원	542-0222	541-0119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661

9. 호원중학교 비상 상황 발생 시 사고 지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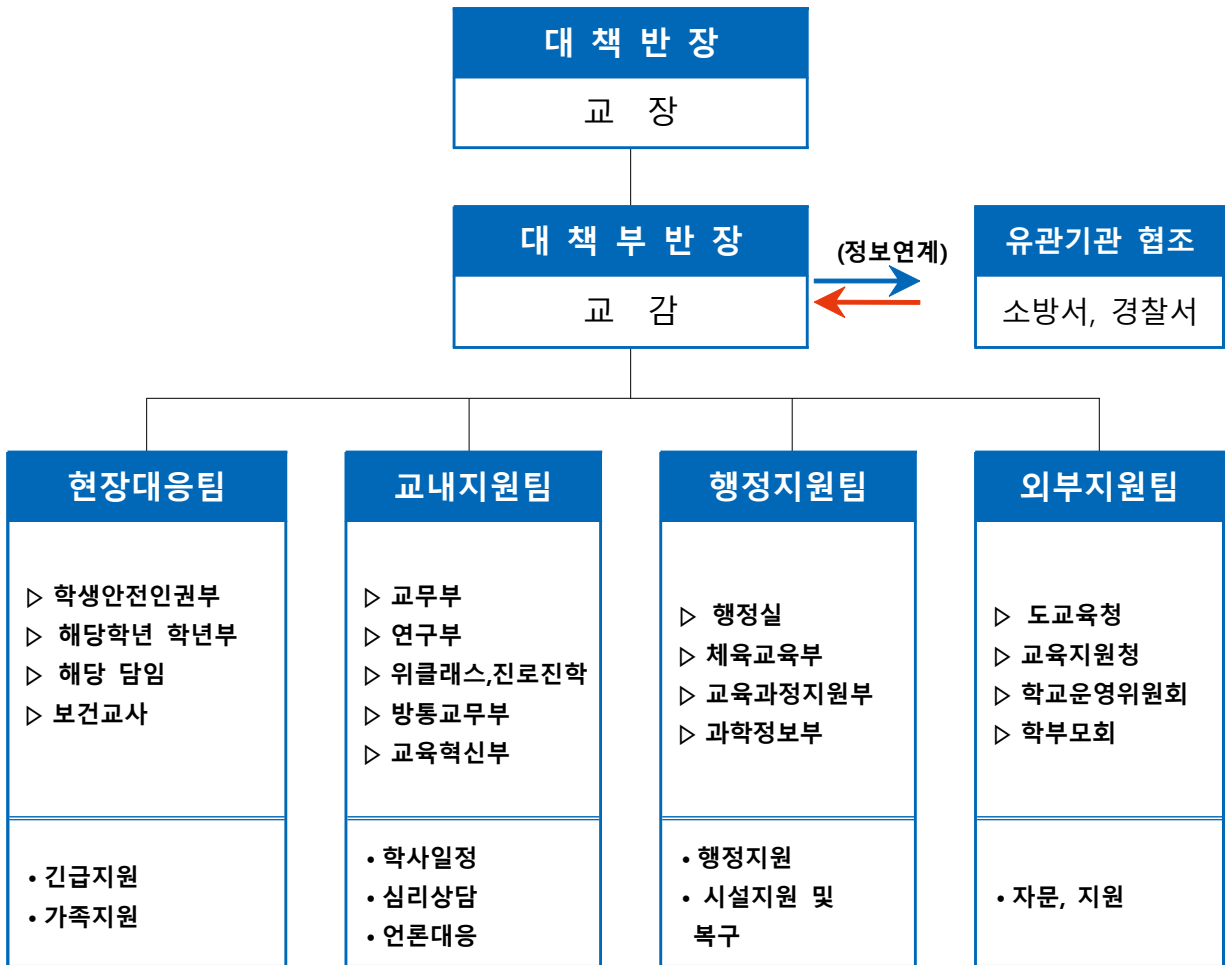
가. 사고 대책반 운영 매뉴얼



긴급연락 담당자 : 학생안전인권부장 TEL : 829-0724

호 원 중 학 교

나. 학교안전사고 비상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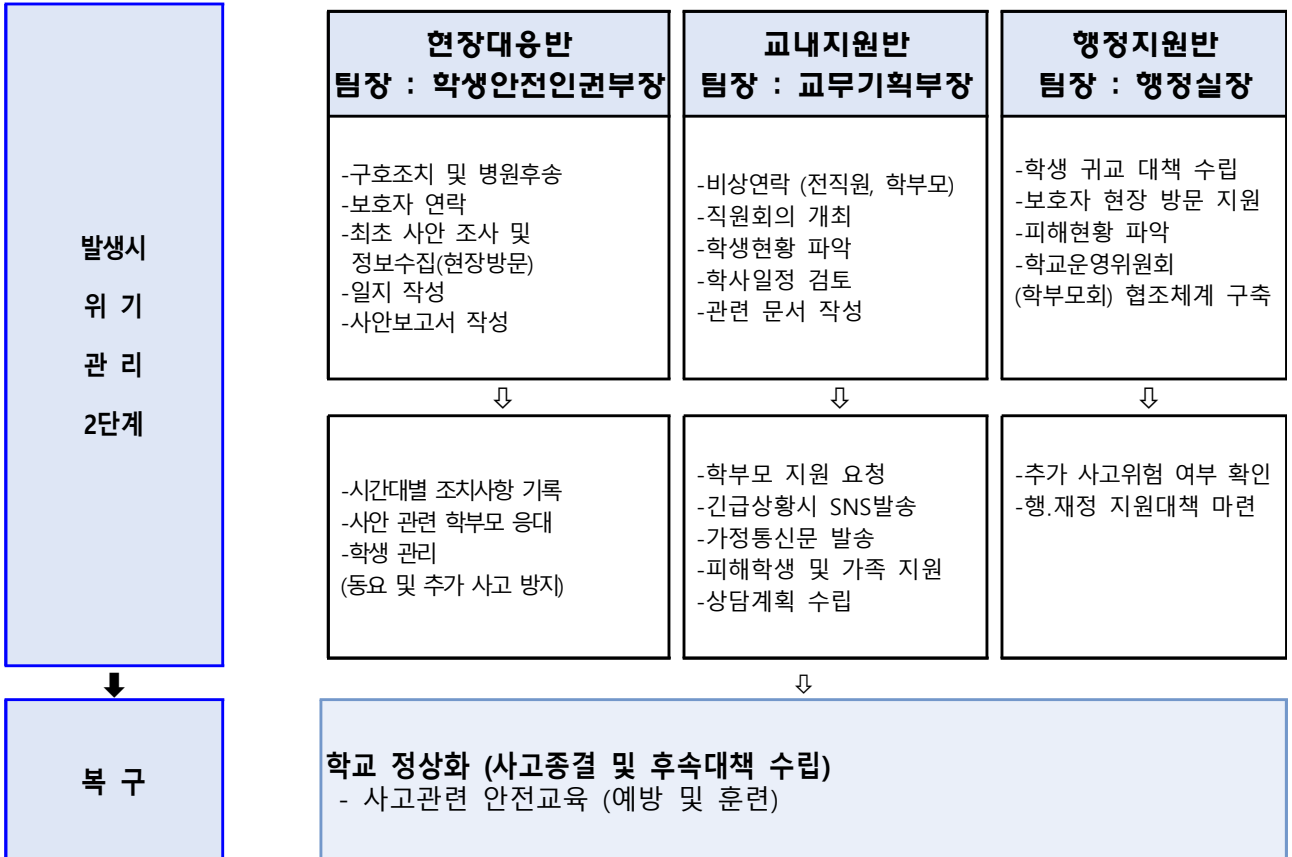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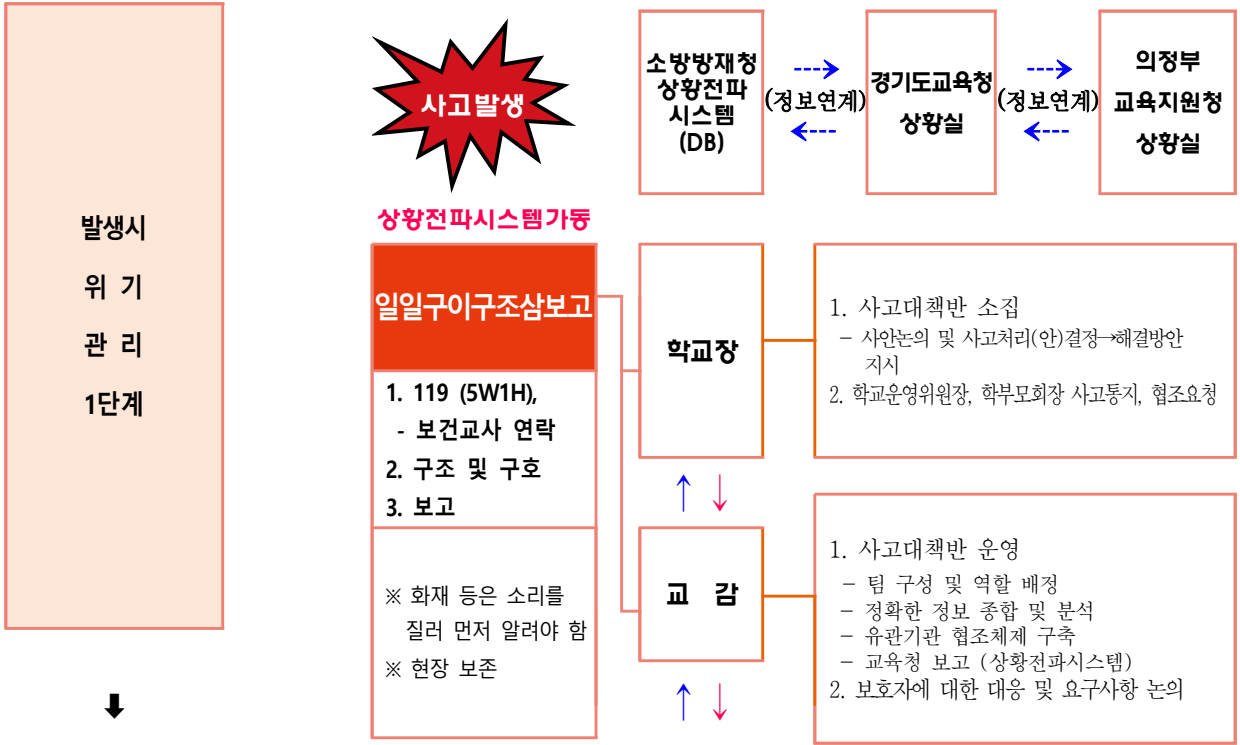
※ 팀별 인원구성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구성

다. 운 영

- 1) 자살 · 현장체험학습 · 학교 내 사고 등 학생사고 발생시 편성·운영
- 2) 평시 상황발생 대비 『사고대응 일의삼』 슬로건 숙지

대응	상 황	학 교 상 황 대 응
사 전 위 기 관 리	<p>체제정비 학교사고 대책반 업무분장</p> <p>교육 및 훈련 놀이형 체험교육 실시 교원 대응능력 강화</p> <p>점검 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시스템 가입 및 점검 - 유관기관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성 - 상황별 행동대처 방법 세분화 - 상황별 대처요령 및 업무매뉴얼 숙지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교육·체험활동 시간 활용 안전교육 실시 - 안전업무 담당자 전문성 신장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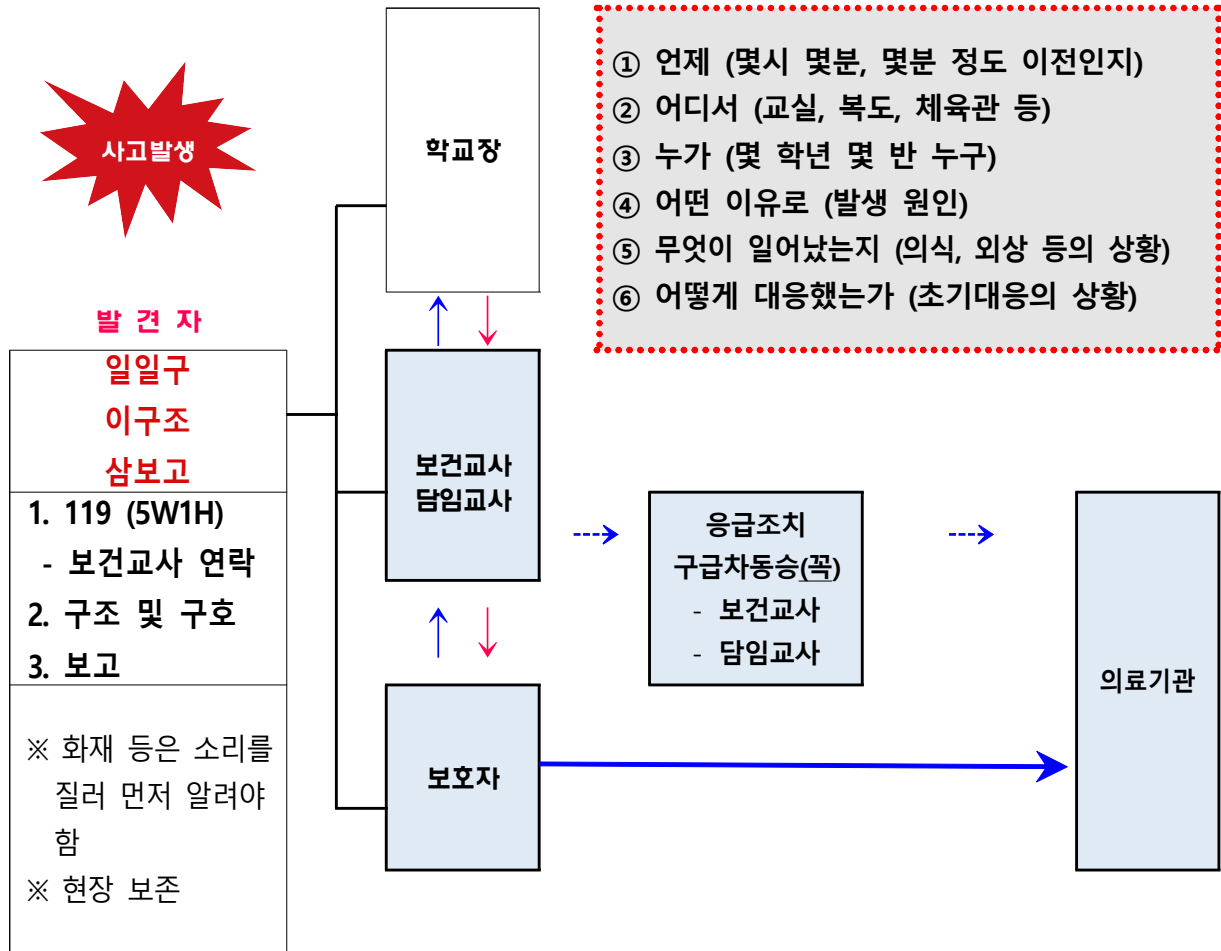
라. 학교안전사고 처리절차



마. 학교안전사고 직책별 임무

직 책		임 무	비 고
최초 발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5W1H 는 육하원칙을 의미
대책 반장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 대응팀 팀장 : 학생안전인권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안전인권부 ▷ 해당학년 학년부 ▷ 해당 담임 ▷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팀 팀장 : 교무기획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기획부 ▷ 교육연구부 ▷ 방통교무부 ▷ 과학정보부 ▷ 교육혁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 위클래스, 진로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적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시 외부지원팀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팀 팀장 : 행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실 ▷ 체육교육부 ▷ 방과후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팀	협력지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바. 학교내 사고 발생시 보호자 응대



■ 보호자 연락 시 유의사항

💡 **“보호자 연락”**은 : 사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인의 추측이 섞인 표현과 감상은 삼가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위급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긴급연락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

- 사고발생 상황과 상태에 대해 상세히 전달한다.
- 병원명과 주소지, 전화번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묻는다.
- 사고를 당한 학생의 인도장소, 시간에 대해 연락을 취한다.

사. 사안대응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조치 시간	확인자	비고
<input type="checkbox"/> 사고 신고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input type="checkbox"/> 사고현장 보존 및 구호조치 (2차사고 예방)			
<input type="checkbox"/> 상황보고 - 학교장 보고, - 상급기관 보고			
<input type="checkbox"/> 현장사고 수습본부 가동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설치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분배 - 반별 사안처리 및 진행상황 확인			
<input type="checkbox"/> 언론 대응 (본청 대변인실과 협조)			
<input type="checkbox"/> 현장대응반장 - 현장대응반 담당자별 세부 역할 지시 - 해당 학년 피해상황 종합 - 후송병원별 담당교사 배치			
<input type="checkbox"/> 피해학생 보호자 연락			
<input type="checkbox"/> 사고관련 정보 수집 - 최초신고자 진술 - 목격자 진술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 - 기타 사고관련 자료			
<input type="checkbox"/> 사안보고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피해상황 확인 (시간대별) - 인적 피해; 사망 명, 부상(중·경상) 명, 실종 명 - 물적 피해;			
<input type="checkbox"/> 사안당사자 정보제공 및 반별 학생관리			
<input type="checkbox"/> 교내지원반장 - 학생 현황 파악 - 장례(조문) 계획 수립 - 학사일정 조정계획			
<input type="checkbox"/> 비상연락 - 전직원,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관련문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 요상담, 요보호학생 조치			
<input type="checkbox"/> 행정지원반장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학생 귀교 대책 계획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자문기관) 협조 요청 (법률자문 및 지원)			

10. 비상경보발령 및 상호연락 방법

구분	주수단	보조수단	정전 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 경보사이렌	유선	가두방송	행정구청
전파(내부)	학교 내 방송 내부전산망(메신저)	음성 방송, 타종, 호루라기	타종, 메가폰, 호루라기	방송실, 교무실

11.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가. 학교장

- 1) 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책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 2)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다.
- 3) 학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 한다.

나. 사고지휘관 (교감/행정실장)

- 1)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한다.
- 2)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한다.
- 3)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린다.
- 4)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한다.
- 5)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한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 구조대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
- 6)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다. 교사

- 1)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 2) 재난대응 지침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3) 서면, 교내방송, 인터콤,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 대응 지침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한다.

- 4)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하도록 지시한다.
- 5)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학생들의 인원을 확인한다.
- 6)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7)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8)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9)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라. 보조교사, 강사 등

- 1)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요청에 따른 보고와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마. 보건교사

- 1)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2)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한다.
- 3)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바. 행정실 및 교육공무직원(건물관리 용역업체 직원 포함)/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 1)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한다.
- 2)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벨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
- 4)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한다.
- 5)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6)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보낼 주고 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 7)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8)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9) 학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한다.
- 10)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한다.
- 11)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 급식 업무 담당자

- 1)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필요량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 2)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아. 학생

- 1) 재난대응훈련이 실시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2)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는다.
- 3)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4)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 역량을 학습한다.
- 5)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

자. 학부모/보호자

- 1)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2)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3)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 4)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한다.
- 5)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출처 : 「학교 현장 실전대비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행 가이드, 교육부

12.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등 교직원의 위기대응 전문기술 보유 현황

가. 전 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연수 실시

나. 교직원 안전연수 이수율: 2023.03.03. 현재 100%

구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위험물관리	카울슬링 / 정신건강	화재진압	무술유단자	수영구조	계
인원	0	72	0	2	0	0	0	74

13. 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 포함) 배치 및 근무(활동) 현황

구 분	인원	근무시간	취약지구 및 특이사항
배움터지킴이 : ○○○	1명	오전 08:00~11:00 오후 12:00~15:00	교문, 주차장 인근, 교내 순회
학교전담경찰관 : ○○○	1명	-	학교폭력예방 등교시간 캠페인 활동 및 연수
방법순찰 : ○○○	1명	평일 16:40 ~ 08:00 공휴일	야간 방호활동

1.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구 분		내 용(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학교 출입 지점 현황	교문 수	정문 1, 후문 1				
	건물별 현관 수	본관 3개, 호원관 1, 급식실 4				
학교 출입 지점 관리자 현황	학교보안관 수 (또는 학교배움터지킴이)	1명				
학생 보호 인력 현황	학교전담경찰관	1명				
학교출입 지점 안전 관리방침 내용	CCTV 설치 현황	위치		대수	적외선 카메라 기능	설치 기종
		학교외부 (고정식)	주차장	1	○ (210만 화소)	kce전자 모델명- khd-n1600r
			중앙현관	1		
			급식소 후면	1		
			운동장	1		
			자전거 보관소	1		
			진입로	2		
		학교내부 (고정식)	교사 옆	2	○ (210만 화소)	모델명 - SPDTI 6524
			1층 복도	2		
			2층 복도	4		
			3층 복도	4		
			4층 복도	4		
		5층 복도	2			
			엘리베이터	1		
	총 계		26	26		
시건장치 및 출입시 통제	가. 교실 : 하교시 각 교무실에 비치된 열쇠함에 보관 나. 관리실, 특별실 : 퇴근시 각 담당교사가 시건 다. 교문, 현관문 : 당직기사 시건 라. 교실, 관리실, 특별실등 비상열쇠는 당직실에 비치 마. 출입시 통제 : 방문증 패용 안내 부착					

2.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구 분	내 용(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방문객(학부모 포함) 출입 관리 방침	일과시간 중 학교 출입을 원하는 경우 행정실에서 일일방문관리대장을 작성 후 신분확인 및 일일방문증을 발급받아 패용 후 출입하여야 하며 방문목적이 끝난 후 방문패찰은 행정실에 반납한다.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즉시 출입증 교부장소(행정실)로 인계,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출입증 관리 방침 및 절차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교내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거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객 및 출입증 관리자	행정실 및 배움터 지킴이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재정적·환경적 제약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최적의 방안을 마련

-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의 역할 수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자 기록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활동을 빈번하게 실시한다.
- 학생보호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의 방문객 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가 정해 놓은 외부출입문 통제 규정을 철저히 실행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3. 물품수령 방침 및 시설공사 안전관리

가. 물품수령 방침

구 분	내 용(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학부모 음식(간식) 제공 허용 여부 및 방침과 절차	- 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완성품 중 유통기한 내의 조리가 필요 없는 음식으로 한다.
택배 수령 방침 및 절차 (학습 관련 물품 및 개인 물품)	- 정문 경비실의 출입자 조정이 종료한 후 1층의 행정실에서 수령하여 개인 또는 주무부서에 이관
급식 자재 배달 차량 및 택배 기사 출입 통제 방침	- 급식소 입구에서 통제

나. 시설 공사시 안전관리

- 1) 시공업체에 건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공사와 필요한 경우(소규모공사) 착공 후 7일 이내에 공사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안전을 위한 상호협조체계 등 학교 실정이 고려된 「학교안전관리 계획서」 요청
- 2)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공사 착공시 학교장은 공사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일지를 관리하고, 각 시공사는 작업 계획 시행 전 제출

4.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차량 및 보행 등하교생 등)

가. 학교 교직원, 학생회, 경찰 등을 활용하여 학교 주변 등·하곳길 안전지도 강화

구 분	내 용(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통학 안전 지도 교육 내용 및 교육 횟수	통학안전교육 학기 별 1회 실시, 교통안전교육 실시
통학 안전 지도 방법 및 담당자 현황	비담임교원,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및 학생자치회, 학생안전인권부 교사,
등하교 지도 방법 및 내용	교직원 및 방문자 차량 서행 안전관리, 자전거 등교
자전거 통학 허용 여부 및 내용	자전거 안전교육 이시 및 안전 장구류 착용 시 자전거 통학 허용

나. 스쿨존 안전시설의 개선과 설치를 위해서 지자체, 경찰청에 적극 협조 요청(노후

횡단 보도,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5.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 방침

구분	보관장소	관리 방법	특이사항	비고
평상 시	본관동 1층 교무실·행정실 열쇠보관함	각 교실 등 열쇠번호 교체시 즉 각 교무실에 변경 처리	비상열쇠(마스타키)는 시설 관리직원 및 당직자가 관리	
비상 시	행정실 비상배낭	“	“	

6.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 관리 방침

구 분	내 용(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차량 통행 관리 방침	교문 쪽 정문 개방을 통해 방문자 차량 통행 허용
주차 관리 방침	학교 방문차량은 주차장을 이용

7. 보관구역{식료품, 유해(위험·화학) 물질, 장비,약품 등} 관리 방침

구 분	내 용(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구역 (담당자 : ○○○)	- 과학 실험물품은 과학실 약품함에 보관하고 약품 수불 대 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식료품 보관 및 사용 구역 (담당자 : ○○○)	- 급식자재를 수령하기 전 검사 규정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식자재 창고에 보관하고 일일 출고 일지를 작성 하여 관리한다.
약품 보관 및 사용 구역 (담당자 : ○○○)	- 보건실 의약품은 보건실 약품함에 보관하고 약품 수불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위험물질 관리 방침 (담당자 : ○○○)	- 담당 주무관이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관리하며, 가능한 계획에 따라 구입하고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한다.

8. 교무실과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내 용(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방송 시설	- 전체 방송 및 각 실별로 분할하여 소통함.
전화(인터넷폰)	- 인터넷 전화 폰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소통함.
메신저	- 학내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까지 빠르게 해결함.
기타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관리 방침	- 비디오 망을 구축하여 체육관과 일반 교실을 연동하여 교육 및 행사를 일체형으로 운영함.

9. 비상탈출구, 2차 탈출구(창문) 관리

구 분	내 용(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비상 탈출구	각 현관 출입문
2차 탈출구	건물 1층 유리창문 등

10. 소화기 관리 방침

총개수	보관장소	소화기 관리	비고
126개	각 교실, 특별실, 호원관 복도	소화기 관리대장에 의해 관리 - 구입일시 : 수시구입 - 총약일시 : 점검 후 수시총약 - 관리방법 : 매월1회 소방안전관리업체에서 관리	

11. 방과 전·후 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구 분	내 용(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방과 후 교실 운영 현황	방과 후 교실 사용 현황	11개 (2학년 전체 교실)
	방과 후 특별실 사용 현황	7개 (음악실, 과학실, 스포츠교실, 상담실, 미래형교실, 탄젠실, 도서관)
	방과 후 강당 (체육관) 사용 현황	1개 (배드민턴반. 월,수)
	방과 후 체육관 사용 현황	1개(태권도부)
방과 후 교실 안전 관리 방침	<p>▣교내외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수업 담당교사에 대한 안전연수 실시 - 교내 수시 순찰 강화 - 방과 후 참여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참여 학생 범죄 예방 <p>▣ 안전사고 대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담당학급 비상연락망 비치 -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이행 철저 	

12. 외부인에 대한 시설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가. 지역주민의 운동장, 체육관 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방침 기술, 운동장 및 체육관 이용수칙 명시, 계약시 안전관리 이행 각서 징구

시설명	개방시간	이용자	안전 관리	비고
운동장	방과후 ~일몰 전	지역주민	화기물품 소지 금지	

13. 보건실 치료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가. 학교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 1) 보건실 설치 여부 : 설치(독립된 보건실)
- 2) 보건교육실 설치 여부 : 미설치

나. 보건연간 교육계획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영역	사업내용	대상	목표	시기(월)	비고(협조)		
보건교육	보건교육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전학년	1회	5/2	학생/보건	
		응급처치교육	전교생	1회	5/12	학년/보건	
		음주예방교육	2학년	1회	12월	학년/보건	
		심폐소생술교육	2학년	1회(4시간)	7월	학년/보건	
		생활습관병 예방(비만예방)	전교생	수시	연중	통신문	
		계절건강교육	전교생	수시	연중	통신문	
		개인위생교육	전교생	수시	연중	담임, 보건	
		전염병예방교육	전교생	수시	연중	보건	
	성교육	성교육	전교생	20회	4-12월	교과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교육	2학년	1회	7월	보건, 체육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전교생	1회	5/23	보건, 체육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교직원	1회	11월	보건, 연구	
	교직원연수	학부모 성교육	학부모	5회	4-12월	통신문	
		감염병관리체계	교직원	1회	3월.수시	보건, 교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교직원	1회	3월	보건, 교무	
	학부모교육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지도 - 교무업무시스템 보건영역	교직원	1회	4월, 수시	보건, 교무	
		월별 보건소식지 발송	전교생	월 1회	3-12월	보건	
	보건관리활동	보건실운영	약품 및 비품 정비	보건교사	연 2회	3, 9월	보건
			보건실 환경정리	보건실	연 2회	3, 9월	보건
학생·교직원 건강상담			학생, 교직원	수시	연중	보건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			학생, 교직원	수시	연중	보건	
요보호자 선정·개별상담, 추후관리			대상자	수시	4월, 연중	보건, 담임	
비만아 파악·개별상담·추후관리			대상자	수시	6-12월	담임, 보건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등교중지 처리			전교생	발생시	연중	보건, 담임	
건강기록부 나이스기록안내(담임) & 관리			담임	수시	연중	담임, 보건	
각종 문서 작성 및 공문 제출			보건교사	각 시기	연중	보건교사	
학교보건활동 연간 계획·평가			보건교사	1회	연중	보건교사	
건강검사		건강검진	1학년	1회	4월~5월 연중	담임, 보건	
		시력검사(별도검사)	2,3학년	1회	5/16	담임, 보건	
		건강조사	전학년	1회	4월	담임, 보건	
	소변검사(별도검사)	2,3학년	1회	7/10	학교보건협회		

나. 2023학년도 학생 보건 및 건강증진계획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다. 2023학년도 응급환자 관리계획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14.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관리 및 검토

가. 2023년 2월 6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공제회 보상 청구 현황 : 청구 14건으로

조, 종례 시간에 안전지도 및 각 교과 시간 부상예방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

고 있음.

나. 체육활동 간에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수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함.

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방안

- 1) 교실, 운동장, 강당 등에 산재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 2) 교과교육과정내에서 운영하는 7대안전교육 시간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요소도 반영한다.
- 3) 배움터 지킴이를 중심으로 교직원은 점심시간 및 등하교 시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 4) 학교 실내외에서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질서 계도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 5) 학생안전인권부 교육계획에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실내 질서·안전생활 지도 계획을 세워 반영한다.
- 6) 학생안전인권부 교육계획에 따라 학급 담임 교사 및 전담 교사는 복도 통행 및 실내 질서·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15. 위험성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

가. 예비점검 체크리스트 결과

위험 요인	개선 필요 사항
5. 학교가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 있다. 주행차량과 교통흐름으로 인한 학교안전의 잠재적 위험 유해요인은?	학교앞에 2차선도로 교차로가 있으며, 차량은 많지 않으나 신호위반, 보행위반이 드물게 일어남.
8. 학교 교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출입지점에 대한 통제가 수업 및 방과 후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주차장을 벗어나 지정공간을 넘어서 들어올수 없음.
10. 교직원과 방문객 차량의 주차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정되어 있다.	방문차량 주차구역 안내 및 표시
16. 관리실(경비실)에서 학교의 정문이나 운동장에 대한 시야가 조경수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의해 방해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CCTV로 상시 점검
38. 수업시간과 방과후시간에 지역경찰관에 의한 교내외 순찰이 실시되고 있다.	가끔 순찰함.

위험 요인	개선 필요 사항
41. 모든 교직원 차량의 앞 유리창에는 학교 출입증이 부착되어 있다.	출입증을 제작하여 교직원 차량에 부착
64. 모든 교직원들(임시직이나 자원봉사자 포함)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이나 배지를 착용하고 있다.	교직원 명찰 제작 착용
71. 복도의 시각적 사각지대와 계단통 등에는 볼록거울 등과 같은 안전사고방지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복도나 계단에서 천천히 걷도록 지도
116. 학교는 제대로 작동하는 양방향 소통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권문제 등으로 방송실에서는 교실의 소리를 감시하거나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음. 층별 학년교무실 배치로 교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1분내에 신고할 수 있음.
117. 인터콤은 일반교실은 물론이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다른 모든 교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118. 인터콤에는 비상호출버튼 기능이 설치되어 있다.	

나. 재난 위험성진단 대상 선정

위험요인	위험요인의 영향	취약성					대상 여부 진단 대상 여부 (3~5번 중 "예" 응답이 있으면 포함)
	1. 위험요인이 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아니오⇒ 다음 위험요인으로 이동 예⇒2번으로 이동	2. 위험요인이 학교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input type="checkbox"/> 낮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3. 위험요인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위험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위험요인으로 인한 교육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위험성진단 대상 여부 (3~5번 중 "예" 응답이 있으면 포함)	
화재 (학교 건물 내부, 교정의 가건물과 시설, 학교 건물 주변의 나무, 들판, 산림에서 화재 또는 연기의 발생 등에 의한 피해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낮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황사 (중국·몽골 사막지대나 황토고원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온 흙먼지로 건강상의 질환을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낮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미세먼지 (주로 배기가스 등 연소작용에 의해 배출된 10 μm /1 μm 는 1/1,000mm이하의 먼지로 천식, 폐질환, 조기사망률 등의 증가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낮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강풍 (지상의 강한 바람에 의해 시설물이 파손되고 시설물, 나무 등이 쓰러지거나 날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낮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변지역 대형 화재 (학교 주변의 주거, 상업,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지역사회에 대규모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며 교통불편, 학교가 피난시설 제공 등 직·간접적 피해를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낮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폭염 (여름철 33도 이상의 최고기온이 2일 이상 이어지는 이상 고온현상으로 열사병, 일사병, 열 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낮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한파 (겨울철 -12도 이하의 최저기온이 2일 이상 이어지는 기온하강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낮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태풍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하는 열대성저기압으로 해일, 수해, 풍해 등에 의한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낮다 <input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산불 (번개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나 담뱃불과 같은 인위적 요인들에 의해 산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낮다 <input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폭발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가스 등 폭발물의 폭발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낮다 <input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감염병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 및 유행하는 질환으로 인명피해를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낮다 <input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지진 (땅의 흔들림이나 갈라짐으로 건물, 도로, 교량의 붕괴, 수도·전기·가스공급 손실, 화재, 폭발 등을 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낮다 <input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다. 재난 위험성진단 대상 추정 및 결정

위험요인 <A>	요인별 위험성 추정			위험성 추정점수 <E=B+C +D>	우선 순위 (위험성 결정) <F>
	발생가능성 (발생빈도) 	피해심각성 (취약성) <C>	대응 준비시간 <D>		
	매우낮음 → 1점 낮음 → 2점 높음 → 3점 매우높음 → 4점	경미한 피해 → 1점 제한적 피해 → 2점 중대한 피해 → 3점 재앙적 피해 → 4점	24시간 이상 → 1점 12~24시간 → 2점 6~12 시간 → 3점 즉시 → 4점		
화재	4	4	4	12	1
황사	4	2	4	10	2
미세먼지	4	2	4	10	2
교통사고(도로)	3	3	3	9	3
강풍	3	2	3	8	4
학교주변대형 화재	2	2	4	8	4
폭염	3	2	3	8	4
한파	2	2	4	8	4
태풍	1	1	4	6	5
홍수/호우	1	1	3	5	6
산불	2	1	2	5	6
폭발	1	1	3	5	6
감염병	1	2	2	5	6
지진	1	1	2	4	7
에너지부족	1	2	1	4	7
단수/식수오염	1	1	2	4	7
낙뢰	1	1	1	3	8

라.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방안

1) 화재

- 가) 평소 동영상 및 인쇄물을 통해 화재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나) 화재발생을 가정한 학생과 교직원의 실제 대피 훈련과 소방서 합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다) 화재발생 시 비상대피도 또는 지정된 대피 경로를 따라 학생들을 가능한 빨리 지정된 장소로 대피한다.
- 라) 장애학생(또는 이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동을 도와준다.
- 마) 대피경로에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 시, 학생들은 자세는 낮추고, 연기를 최대한 마시지 않도록 입과 코를 젖은 수건이나 옷자락으로 막은 상태에서 낮은 자세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이동한다.

2) 황사/미세먼지

- 가) 기상청의 황사주의보 발령 시 학생들의 실외·현장체험활동을 실내학습활동으로 검토·조정하도록 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교직원 및 학부모)을 점검·확인한다.
- 나) 기상청의 황사경보 발령 시 황사 관련 질환자를 파악·보고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조기귀가, 치료 등) 여부를 결정한다.
- 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학생들의 실외수업을 자제 또는 금지시키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점검·확인한다.
- 라)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등·하교시간조정 및 휴업을 검토·실시한다.
- 마) 황사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학생들에게 황사 및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교육한다.

3) 교통사고: 도로

- 가) 학급별로 아침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의거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나) 교통 위험상황 및 시설 개선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할 경찰서 및 구청에 개선을 요청한다.
- 다) 학교 주변에 교통 피켓을 들고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라) 교통안전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홍보 자료를 탑재한다.
- 마)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및 규정속도 준수, 안전띠 착용에 대한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상기시킨다.
- 바)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는 학교안전봉사단 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4) 태풍 / 호우: 옹벽, 축대 급경사지 재해

가) 학생들에게 태풍·집중호우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재난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집중호우 주의보·경보를 확인한다.

다)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라)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경보 발령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필요시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한다.

- 학생들의 교외 학습활동(현장학습, 체험활동 등)을 검토·조정한다.

- 토석류 붕괴, 산사태 등 학교 내 위험지역 접근을 막는다.

- 등·하교 시 위험상황(침수, 통학로 소실 등)을 확인하여 알리고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5) 폭염

가)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한다.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한다.

다) 폭염특보에 따른 체육활동 및 실외와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라) 폭염에 대한 각 학년 학생 계기교육 실시한다.

마)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계획을 세운다.

바)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한다.

- 현기증, 탈수, 열사병, 두통 등의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6) 지진

가) 평소 동영상 및 인쇄물을 통해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실·특별교실, 실험실, 건축분야 등 역할분담을 통하여 주요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다) 지진발생을 가정한 학생과 교직원의 실제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라) 지진발생 시 머리보호 및 책상 아래로 피난을 지시한다.

마) 흔들림이 멈춘 후 지정된 대피경로에 따른 신속한 대피를 지시한다.

바) 대피 후 학생 안전조치 및 보호자 조치사항을 전파한다.

7) 감염병

가) 보건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유인물 홈페이지 탑재, 방송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한다.

나) 감염병 유행 시 『일일 감시 체계』 운영을 통한 확산을 방지한다.

다) 교직원, 학교 종사자 중 감염자 관리와 감염학생의 치료상황 파악 및 관리 상태를 기록한다.

라)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학교 단체 활동 자제하고 다수 발생이 생기면 단축수업

또는 임시 휴업 조치를 한다.

마)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과 규칙적인 실내 환기 및 청결 유지를 통해 학교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마. 학교안전사고 위험성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학교안전 사고유형	위험요인	현 재		개 선		
		위험성 통제 운영현황	위험성 추정	위험성 통제 개선방안	위험성 추정	담당자실행일
낙상사고	부적합한 바닥재	바닥의 손상, 패임, 구멍, 평평하지 못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B2(M)	교직원들은 미끄러짐 문제 발생 시 이를 행정실에 즉시 알려 적절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실에서는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는 지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한다.	C2(L)	주무관 및 교직원 매월 5일
	젖은 바닥	젖은 걸레 사용 후, 바닥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도록 마른 걸레를 사용하여 바닥의 물기가 마르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B2(M)	가급적 복도에는 물과 같이 바닥을 미끄럽게 할 수 있는 오염원들을 근처에 두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에게 바닥이 젖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안전 지도를 강화한다.	C2(L)	교직원 상시
	비	교내 보행로는 비에 젖은 경우에도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한다.	B2(M)	우천시에는 우산에 있는 물기를 현관 밖에서 잘 제거하고 실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2(L)	교직원 우천시
	눈/빙판	눈과 빙판은 가능한 한 즉시 제거한다. 교내 보행로의 눈을 치우고 모래(염화칼슘)을 뿌린다.	B2(M)	눈 예보가 있는 경우 염화칼슘이 비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해 놓는다. 많은 눈과 빙판이 예상되는 경우 교직원은 30분 일찍 출근하여 교내 보행로의 눈을 치우고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린다.	B3(L)	교직원 눈예보 및 대설시
	헛딴거나 부딪침	교실, 복도, 계단, 운동장, 체육시설, 놀이 공간, 보행로 등에 발이 걸리거나 헛딴거나 부딪혀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일상적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발견 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한다.	B2(M)	교직원과 학생들은 마루나 복도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보는 즉시 집어서 치우도록 장려한다. 교실과 복도에 설치된 가구들은 잘 정돈된 상태로 유지되고 쓰러질 위험성이 없도록 관리한다.	C2(L)	교직원 상시
	건물 내 계단과 복도	아동의 키에 적절한 높이에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내부의 복도와 계단은 손상, 패임, 흠이나 구멍, 평평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관리한다.	B2(M)	학생들이 계단과 복도에서 장난을 치거나 뛰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한다.	C2(L)	주무관 및 담임교사 상시
교실(실험 실과 실습실 포함)	미끄럼 사고 유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전기제품의 전선이 바닥에 늘어져 있지 않도록 관리한다.	B3(L)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교실 출입문을 통해 들어 오거나 나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실 내 보행로(공간)을 명확하게 마련해 놓는다. 벽 모서리 등이 있는 곳에서 장난을 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C2(L)	주무관 및 담임교사 상시	
손 끼임 사고	문에 손이나 손가락 끼임	학생들이 문 근처에 일시에 모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한다.	B2(M)	학생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을 출입문 옆에 두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문 근처에 자주 가지 않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손 끼임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C2(L)	교직원 상시
학교 및 학교주변 교통사고	자녀 등하교 학부모 차량/교직원 차량의 출입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는 교정 출입 지점에 대한 자녀 등하교 학부모 차량의 접근을 금지한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의 교내 교통 안전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B2(M)	교직원 및 외부 차량 진입시 비상등을 켜고 운행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강화한다.	C2(L)	교직원 상시
	학교 출입 지점(정문 등)의 차량 주정차	학부모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걸어서 등하교 시키도록 권장한다.	B2(M)	학원차량 교문 앞 정차 금지, 교문 근처 유턴 금지에 대한 내용의 안내장을 만들어 학원 차량기사 및 학원장에게 배부한다.	C2(L)	안전담당 2023.3
	물류(택배)차량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경식재나 설치물 등의 시야 방해요인을 정돈하여 관리한다.	B2(M)	택배차량은 본관 뒤편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중앙 현관 쪽에 주차를 금지한다.	C2(L)	주무관 및 교직원 상시
	교직원 차량의 교내 주차	보행로와 차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차	B2(M)	교직원 차량은 5부제를 준수하도록 한다.	C2(L)	교직원 상시

학교안전 사고유형	위험요인	현 재		개 선		
		위험성 통제 운영현황	위험성 추정	위험성 통제 개선방안	위험성 추정	담당자실행일
		량 진입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펜스 등)을 마련한다.		학생들이 주차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분리수거 등 주차장 근처에 가야 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사가 동행하도록 한다.		
휴식·점심시간 사고	미흡한 지도·감독 활동	구기(축구, 농구 등)등의 운동놀이는 놀이공간(운동장, 농구장 등)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실시한다.	B2(M)	휴식·점심 시간에 학생의 안전한 휴식과 놀이활동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의 교직원들을 장소별로 지정해 놓고 이들에 의한 지도·감독활동을 실시한다.	C2(L)	학생인권부장 2023.3
	날씨 상황	학생들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장소를 주의하거나 피해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B2(M)	교사 자치 활동 조직을 통하여 당일 신속한 정비 활동 실시한다.	C2(L)	안전담당 2023.3
놀이공간 사고	놀이기구의 사용	놀이공간 및 놀이기구에 대해 월4회 자체 점검 및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B2(M)	놀이공간에서의 올바른 행동에 관한 학교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C2(L)	학생안전부장 2023.3
	놀이터에서의 갑작스런 환자 발생	학생들에게 손상 사고 발생시, 즉시 가장 가까운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B2(M)	학생들에게 교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장소를 인지하도록 한다. 특히 가까운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배움터지킴이실, 행정실, 보건실의 위치를 숙지시킨다.	C2(L)	교직원 2023.3
교내 폭력과 경비 관련 사고	무단침입자의 접근	무단침입자의 접근경비 활동과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CCTV 또는 펜스의 손상 등) 발견 시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B2(M)	교직원들은 교내에서 항상 명찰을 패용하도록 관리한다. 방문증 미착용자를 발견시 방문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행정실로 안내한다.	C2(L)	교직원 상시
체육활동 사고	학생의 운동능력, 의학적 상태에 대한 고려 미흡	지도교사는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개인/그룹의 능력을 평가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체육활동을 실시한다.	B2(M)	수업 전 학생의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황을 점검한다.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특정 활동/장비 사용을 제한한다.	C3	교직원 상시
	부적합한 복장	체육활동 시작 전 지도교사는 복장 점검을 통해 손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액세서리 등의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B2(M)	체육활동(놀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복장(신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C3	체육부장 2023.3
	체육활동 지도자의 지식/경험 부족	체육활동 시작 전 지도교사는 학교(담당교사)로부터 학생 개인/그룹에 관한 정보(예: 행동상의 장애 정도, 의학적 요구사항 등)를 제공받아 이를 인지한 후 체육활동을 지도한다.	B2(M)	지도교사의 안전한 지도를 위하여 실기활동 중심의 교사 연수활동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C3	교직원 상시
	안전장비의 부족/결함	지도교사는 필요시, 학생들에게 운동중 손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예, 정강이보호대)	B2(M)	체육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인지 즉시 보충하도록 한다.	C2	체육부장 및 지도교사 상시
	무리한 운동경기 참여	운동경기 참여 전, 지도교사는 선수들에게 경기 규정 준수를 통한 부상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운동경기 중 지도교사는 선수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물을 마시기보다는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도록 하여 탈수로 인한 손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B2(M)	운동경기 중 지도교사는 선수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과열행동을 보이는 경우 즉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운동경기 중 지도교사는 선수들에게 과격한 경쟁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알려주어 선수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2	체육 지도교사 상시
현장체험 학습 사고	불충분한 정보 제공	현장체험학습 지도교사는 참가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체험학습 시의 주의사항과 지켜야 할 수칙,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전달한다.	B2(M)	현장체험학습시에 체육복 또는 유니폼을 착용하여 시인성을 확보한다.	C2	지도교사 상시

학교안전 사고유형	위험요인	현 재		개 선		
		위험성 통제 운영현황	위험성 추정	위험성 통제 개선방안	위험성 추정	담당자실행일
	(전세버스)운행 중 질환자 발생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인솔교사는 요보호자에 관한 사항을 인솔자, 운전자, 수련시설 책임자 등과 공유한다.	B2(M)	요 보호자의 복용약 소지 여부 확인 후, 보호자와 통화를 통해 복용(투약)허락을 받은 후 복용(투약)할 수 있도록 한다.	Q2	지도교사 상시
	(전세버스)운행 중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	인솔교사는 차량 운행 중에는 모든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운행 중에 학생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B2(M)	인솔자는 버스 통로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Q2	지도교사 상시

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방안

- 1) 교실, 운동장, 강당 등에 산재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 2) 교과교육과정내에서 운영하는 7대안전교육 시간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요소도 반영한다.
- 3) 배움터 지킴이를 중심으로 교직원은 점심시간 및 등하교 시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 4) 학교 실내외에서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질서 계도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 5) 학생안전인권부 교육계획에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실내 질서·안전생활 지도 계획을 세워 반영한다.
- 6) 학생안전인권부 교육계획에 따라 학급 담임 교사 및 전담 교사는 복도 통행 및 실내 질서·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16. 안전한 학교풍토의 조성

내용	운영시기	운영부서	비고
생활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험·실습수업·체육 등)	수시	담당교사	
안전점검의 날 운영(모든 구성원 참여)	매월 4일	담당부서	
주간 안전의 날 운영 (아침 조회시간 등 5분 안전교육 실시)	매주 월요일	담임교사	
민방위 훈련, 화재대비 훈련 실시	학기 별 2회	전교직원	
7대 안전교육 실시	수시	각 교과	
생활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험·실습수업·체육 등)	수시	방송통신중학교 담당교사	
7대 안전교육 실시	수시	방송통신중학교 원격수업	

17. 학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가. 2023학년도 안전교육 계획

1) 목적

- 가) 안전 의식의 내면화 및 습관화로 각종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활동 유지
- 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능력 함양
- 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하여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 유지

2) 방침

- 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안전교육 규정에 따른 이수시간 및 「2016년도 교육부 주요정책」 중학교안전교육 영역의 7대 안전교육표준안에 따른 연간 이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 나)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학년별 반영

3) 세부 추진 계획

가) 2023학년도 7대 안전교육 연간 지도 계획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1) 운영방안 :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학습, 관련 교과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하되, 관련교과의 연간 수업시수 부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2) 학년 및 교과별 안전교육 전체 이수 시수

영역	학년	교과	내용	학기	차시	누계
생활안전교육 (학기당 2회이상, 10시간)	1	과학	과학실험 안전교육	1	1	10
		기가	감전, 화재사고 안전수칙 및 예방법 알고 실천하기	1	1	
		기가	미끄러짐, 추락 예방 및 대처 방안	1	1	
		기가	기술실습 안전교육	1	1	
		체육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I	2	1	
		체육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II	2	1	
		체육	수상안전 예방과 대처 방안	2	1	
		기가	식품 안전 알고 이해하기	2	1	
		도덕	도덕적 사고와 행동 이해하기	1	1	
	도덕	낙태와 왜곡된 성에 대해 알아보기	2	1		
	2	과학	과학실험 안전교육	1	1	10
		정보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1	1	
		영어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	1	1	
		과학	식품 안전 알고 이해하기	2	1	
		체육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I	2	1	
		체육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II	2	1	
		체육	수상안전 예방과 대처 방안	2	1	
		체육	안전한 체육기구 사용교육	2	1	
		수학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안전 경사로 이해하기	2	1	
	수학	가구당 소화기함 설치개수에 대한 확률구하기	2	1		
	3	기가	감전, 화재사고 안전수칙 및 예방법 알고 실천하기	1	1	10
		기가	식품 안전 알고 이해하기	1	1	
		기가	미끄러짐, 추락 예방 및 대처 방안	1	1	
		기가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	1	1	
		기가	기술실습 안전교육	1	1	
		과학	과학실험 안전교육	1	1	
		체육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2	1	
체육	수상안전 예방과 대처 방안	2	1			

		과학	전열기구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기	1	1	
		중국어	중국 여행시 안전수칙 알아보기	1	1	
교통안전교육 (학기당 2회이상, 10시간)	1	기가	자전거안전, 제품안전	1	1	10
		진로	교통안전, 직업안전문화	1	1	
		기가	보행자, 비행기 안전수칙	2	1	
		과학	오토바이 안전, 실험실습 안전	1	1	
		과학	자동차사고의 원인 및 예방법, 보호구 착용	2	1	
		진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2	1	
		사회	재미나 안전이나. 잘못된 교통통행습관 고치기!	2	1	
		창체	교통사고예방수칙	2	1	
		미술	색이 전달하는 메시지 이해하기	1	1	
		국어	교통수단과 관련된 경험을 글로 쓰기	1	1	
	2	미술	보행자 안전, 시설안전	1	1	10
		미술	자전거안전, 제품안전	1	1	
		창체	대중교통안전, 직업안전문화	1	1	
		정보	재미나 안전이나. 잘못된 교통통행습관 고치기!	1	1	
		체육	자동차사고의 원인 및 예방법, 보호구 착용	2	1	
		체육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2	1	
		창체	교통사고예방수칙	2	1	
		과학	오토바이 안전, 실험실습 안전	2	1	
	영어	교통안전수칙, 교통표지판 영어로 표현하기	1	2		
	3	기가	자전거안전, 제품안전	1	1	10
		기가	대중교통안전, 직업안전문화	1	1	
		기가	보행자 안전, 시설안전	1	1	
		과학	오토바이 안전, 실험실습 안전	1	1	
		창체	교통사고예방수칙	2	1	
		중국어	재미나 안전이나. 잘못된 교통통행습관 고치기!	2	1	
		체육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2	1	
		사회	재미나 안전이나. 잘못된 교통통행습관 고치기!	2	1	
		영어	길거리 교통안전 영어로 표현하기	2	1	
		영어	교통안전관련 직업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2	1	
	<폭력 및 신변 안전교육 (학기당 2회이상, 10시간)>	1	도덕	가정윤리	1	1
체육			청소년기 신체이해와 자기 존중	1	1	
창체			아동학대 예방교육	2	1	
사회			사회집단에서의 차별과 갈등 문제	2	1	
기가			청소년의 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1	1	
국어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1	1	
음악			제재곡을 노래하고 집단 따돌림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하기	1	1	
진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기	1	1	
국어			언어폭력 문제점 알기	2	1	
사회			학교폭력 해결방안 토론하기	2	1	
2		도덕	평화적 갈등 해결	1	1	10
		체육	청소년기 신체이해와 자기 존중	1	2	
		창체	아동학대 예방교육	2	1	
		체육	청소년기의 신체이해와 자기 존중	2	1	
		한문	행복한 가정	2	1	
		영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유해성 이해하기	2	1	
		정보	사이버폭력의 피해사례 알고보고 예방법 익히기	1	1	
		국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사용 태도 기르기	1	1	
수학		집단따돌림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의 확률 알아보기	2	1		
3		기가	가정 폭력의 대처와 지원 방안	2	1	10
		체육	청소년기 신체이해와 자기 존중	1	1	
		창체	아동학대 예방교육	2	1	
		사회	다국적 기업과 어린이 노동 탐구	2	1	
		기가	성폭력의 이해와 예방	2	1	

		기가	가정 폭력의 대처의 이해와 대처	2	1	
		영어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해 알고 예방하기	1	1	
		국어	성상품화에 대해 알고 성적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2	1	
		사회	무장군인들의 폭력을 통해 신체폭력의 위험성 각인하기	1	1	
		음악	제재곡을 노래하면서 신변안전사례에 대해 토론하기	1	1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 (학기당 2회이상, 10시간)>	1	체육	기호품과 약물의 종류	1	2	10
		창체	흡연예방교육	1	1	
		창체	정보통신 윤리교육	1	1	
		창체	정보통신 윤리교육	2	1	
		기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1	1	
		미술	흡연의 피해사례 조사하기	1	1	
		영어	인터넷 선포달기에 대해 알아보기	2	1	
		국어	인터넷게임을 즐기기 위한 실천 강령 만들기	2	1	
		음악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습관에 대해 토론하기	1	1	
	2	정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1	1	10
		영어	스몸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안전대책 말하기	2	1	
		창체	정보통신 윤리교육	1	1	
		창체	흡연예방교육	1	1	
		과학	감염성 질병의 확산과 역학 조사 탐구 활동	1	1	
		미술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4컷 만화로 제작하기	2	2	
		정보	인터넷 중독 증상 이해하기	1	2	
	수학	하루에 섭취하는 첨가물의 양을 식을 세워 구하기	1	1		
	3	기가	정보 통신 기술과 미디어의 이해	2	1	10
		창체	정보통신 윤리교육	1	1	
		창체	흡연예방교육	1	1	
		과학	감염병 예방하기	2	2	
영어		스마트폰 자가진단 및 개선방법을 찾아보기	1	1		
영어		웹툰 보는 습관을 체크해보기	2	1		
중국어		중국의 인터넷 용어와 문화를 알아보기	2	1		
국어		약물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 만들기	2	1		
음악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1	1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기당 2회이상, 6시간)	1	기가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2	1	6
		사회	황사발생시 행동요령	1	1	
		기가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2	1	
		기가	물놀이 안전사고	2	1	
		기가	태풍발생시 행동요령	2	1	
		체육	재난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방법 이해하기	2	1	
	2	과학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1	1	6
		과학	황사발생시 행동요령	1	1	
		과학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2	1	
		체육	물놀이 안전사고	1	1	
		과학	태풍발생시 행동요령	2	1	
	국어	빛 공해로 인한 재난사고 이해하고 예방법 알아보기	2	1		
	3	과학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1	1	6
		역사	황사발생시 행동요령	1	1	
		역사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2	1	
		체육	물놀이 안전사고	1	1	
		사회	태풍발생시 행동요령	2	1	
		과학	해안에서의 물놀이시 밀물에 대한 행동요령 익히기	1	1	
직업안전교육 (학기당1회이상, 3시간)	1	진로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1	1	3
		창체	직업안전수칙 익히기	2	1	
		기가	조리 실습시 안전한 실습 방법 숙지하기	1	1	
	2	과학	직업안전의 중요성	1	1	3
		창체	직업안전수칙 익히기	2	1	

	3	국어	직업군인 이해하기	1	1	3
		기가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1	1	
		기가	직업안전수칙 익히기	2	1	
		사회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법 알아보기	1	1	
응급처치교육 (학기당1회이상, 2시간)	1	기가	응급처치방법 익히기	2	1	2
		체육	응급처치법	2	1	
	2	도덕	응급처치방법 익히기	1	1	2
		체육	응급처치법	2	1	
	3	기가	응급처치방법 익히기	1	1	2
		체육	응급처치법	2	1	

방송통신중학교 안전교육 영역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교 육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1학기	5	3	7	3	8	2	2
2학기	5	3	7	3	8	2	2
합계	10	6	14	6	16	4	4

나)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 교육 관련 교육 철저

- (1) 교과 교육과 안전 교육 연계 지도
- (2)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학교 시설,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 등 안전교육 실시
- (3) 화재 시 대처요령 등 각종 재난 시 안전행동요령을 반드시 실습 교육으로 실시
- (4) 각종 안전 교육 관련 시청각 자료 활용
- (5) 실험·실습 시 유해위험물 취급 요령 지도 및 안전 수칙 교육 실시

※ 「실험실 안전 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kisco.or.kr)참조

다) 행사 및 참여를 통한 안전 교육

- (1) 글짓기, 그림 그리기, 표어 짓기 등
- (2) 학급회의 시간 활용 토론회 개최

라) 체험 학습 및 각종 학생 수련 활동 시 사전 안전 교육 강화

- (1) 수련 활동 계획 수립 시 안전교육 내용 삼입
- (2) 각종 체험활동 및 수련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3) 견학 장소 및 야영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 (4) 담당 지도교사 입장지도 철저, 야외 단체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교사와 사제동행으로 실시

마) 교육 과정에 안전 유관 기관의 활용

- (1) 안전 일반 : 한국산업안전공단
- (2) 교통안전 :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 (3) 소방 안전 :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사)
- (4) 전기, 가스안전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5) 시설물 안전 : 시설안전관리공단

바) 나침반 5분 안전교육

- (1) 대상 : 전교생
- (2) 시기 : 연중 학급별 09:00~09:05(5분) 아침 시간 활용
- (3) 운영
 - 위기주제별 상황별 5분 안전교육 실시
 - 매일 위기상황별 주제에 따른 반복 학습, 미디어교육과 체험교육 병행

요일	주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월요일	생활안전	- 학교 안전사고 동영상 보기 - 위험요소 찾기, 체육 및 여가 생활 안전	학급별 동영상 교육
화요일	교통안전	- 자동차 및 대중교통 안전사고 동영상 보기 - 토론을 통한 실천과제 찾기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학급별 동영상 교육
수요일	폭력예방및 신변안전	- 신체 폭력 및 집단 따돌림 - 성폭력 및 생명 존중 교육 - 자살 예방 및 가정 폭력	학급별 동영상 교육
목요일	응급처치· 약물 및 사이버 중독	- 응급처치 동영상 보기 -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익히기 - 약물 중독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학급별 동영상 교육
금요일	직업· 재난 안전	- 화재 및 사회 시설 재난 - 교실내에서 대피법 익히기	학급별 동영상 교육

사)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아) 전교생 대피훈련 실시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1) 대상 : 전교생 및 교직원
- (2) 시기 : 3월, 5월, 8월, 10월
- (3) 비상시 피난 안내도 (학급별 대피 시 이용 계단과 출구)

자) 위기관리 대책반 조직 운영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차) 기관 시설물 안전 점검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카)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1)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급식 관계자에 대한 위생 교육 강화
- (2) 월1회, 수시교육은 일 1회 실시

타) 각 교과 안전에 관한 사항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1) 활동중심 교과, 실험·실습 교과, 위험물 사용 교과 등은 자체 안전 계획 수립

파) 특수학급 안전에 관한 사항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1) 특수학급 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공감대 형성
- (2) 특수학급 안전계획 수립 운영
- (3) 특수학급 교출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반 운영

하) 교직원 안전연수에 관한 사항

- (1) 모든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실시
 -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 * ‘2023년까지 전체 교직원이 이수토록 하며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체육·보건 교사, 담임교사부터 단계적으로 이수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 모든 교직원은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모든 교사 매년 이수

4)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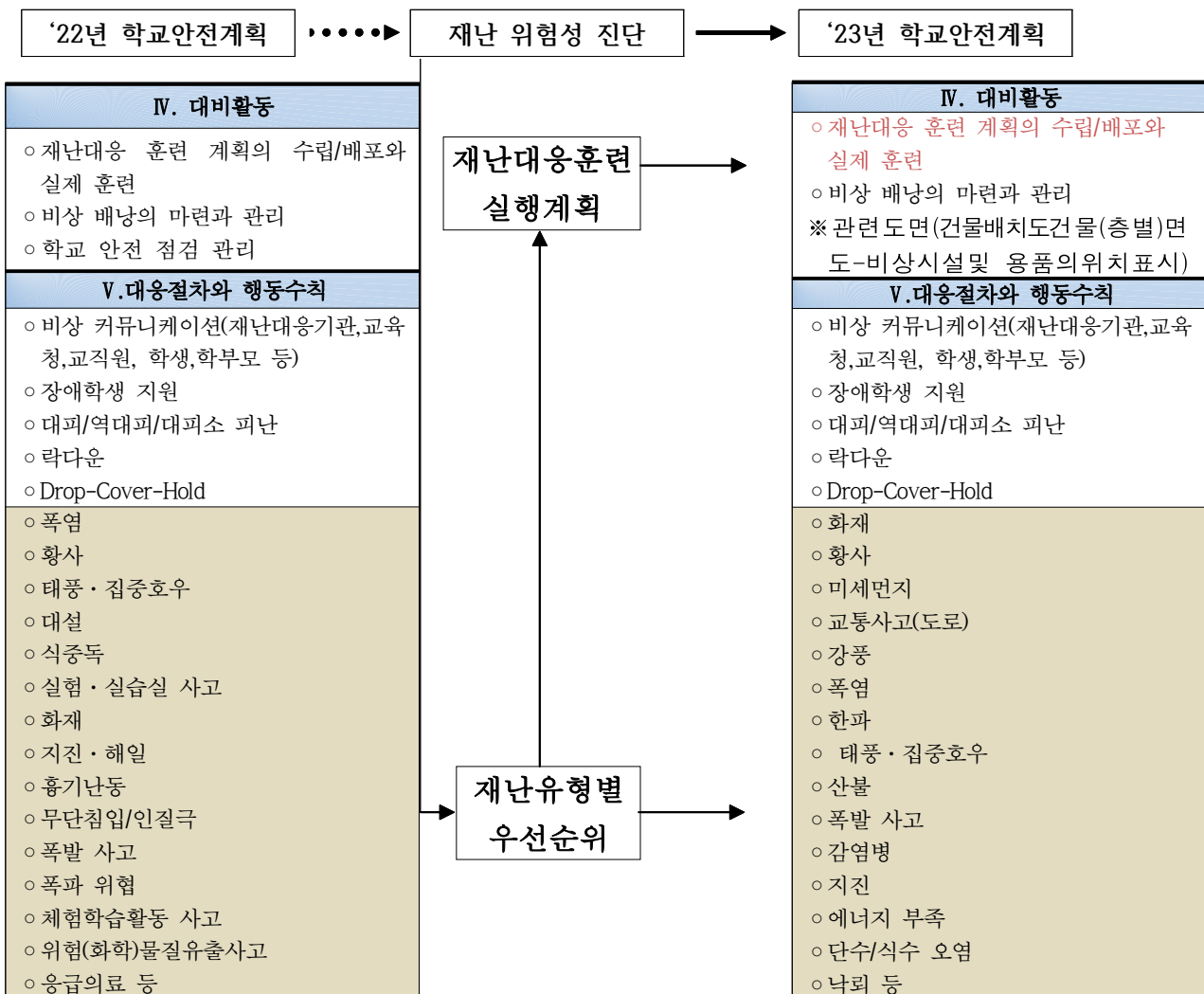
- 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 여건 조성.
- 나) 안전한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
- 다) 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및 학부모의 신뢰 형성.
- 라) 학교 내·외의 인적 자원을 정비하며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IV

대비 활동

1. '23년도 재난 위험성진단 결과에 따른 재난대응훈련계획

가. 재난 위험성진단 결과에 따른 학교안전계획의 변화



나. 재난대응훈련 실행계획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3월	재난대응계획 설명회	세미나	모든 교직원	학생안전인권부장	
4월	화재 훈련	드릴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담당교사	
5월	지진 훈련	드릴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담당교사	
5월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도상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5월	안전한국 재난대응훈련	워크숍, 기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담당교사	CPR
6월	태풍 훈련	드릴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담당교사	
9월	화재 훈련	드릴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담당교사	
10월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도상훈련	체험학습 지도교사	체험학습 담당교사	
11월	화학물질사고	드릴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담당교사	
12월	위험성진단 결과 설명회	세미나	모든 교직원	안전담당교사	

※ 재난대응훈련의 유형

- 세미나(Seminar, 또는 설명회) : 교직원들에게 학교가 수립한 새로운 정책, 계획, 절차 등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설명회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학교가 교직원들에게 학교안전사고 위험성진단 결과나 학교안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 세미나 훈련이다.
- 워크숍(Workshop) : 세미나(설명회)와 유사하지만, 학교안전계획이나 정책의 초안과 같은 구체적인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학교안전 위험성진단 실시 때 이루어지는 구성원간 협의회는 이러한 워크숍 훈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 재난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재난 발생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재난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등의 실효성을 검토, 평가, 개정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시간에 화재가 났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학교가 수립해 놓은 화재 대응절차와 행동수칙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정하는 활동은 도상훈련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드릴(Drill) : 학교 내에서 한 가지의 특정한 대응행동이나 기능을 검증(테스트)하기 위한 훈련으로 새로운 비상장비의 사용법, 새로운 대응절차와 행동수칙의 검증, 대응행동의 연습과 유지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학교가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화재 대피 훈련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기능훈련(Functional Exercise) : 재난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 지휘, 통제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훈련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에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메시지 전달 훈련이 이러한 기능훈련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2. 비상배낭의 마련과 관리

가.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에 비상배낭 상시 비치

나. 행정실장 등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캐비닛 보관 등 보안 관리에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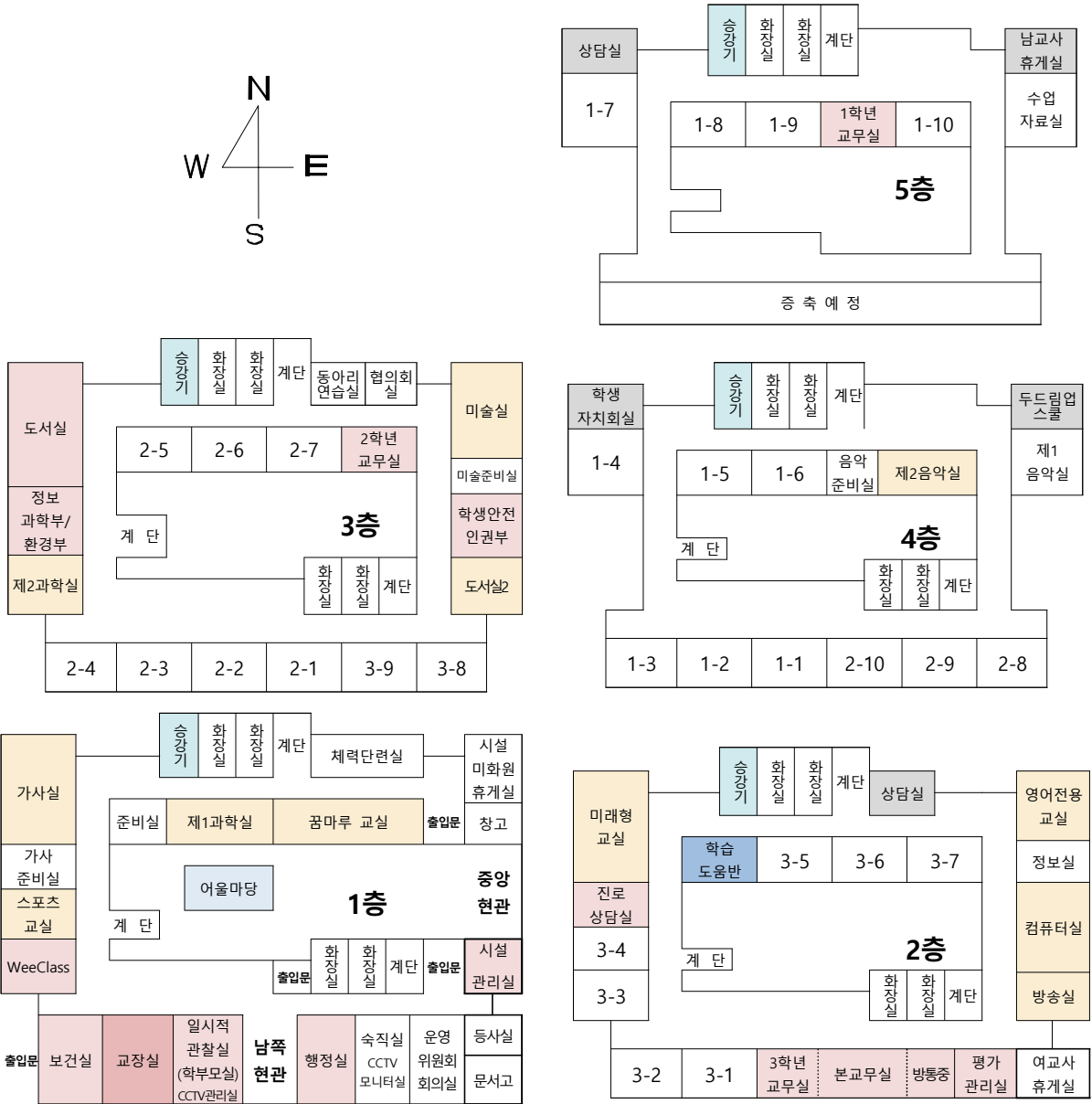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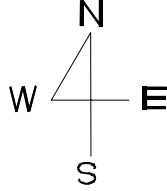
다. 비치장소 : 행정실

비상 배낭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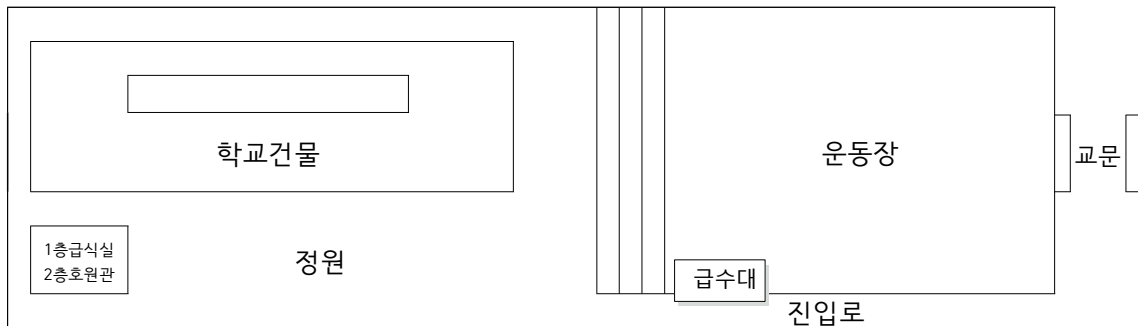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등)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학생 대피장소, 구급약품 배치 현황 등
설비(전기/가스/수도)밸브 잠금 방법,
학교 안전계획서(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 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재난대응기술 보유 교직원 명단),

3. 관련 도면(-비상시설 및 용품의 위치 표시 포함)

가. 건물배치도, 건물(층별)평면도



< 평 면 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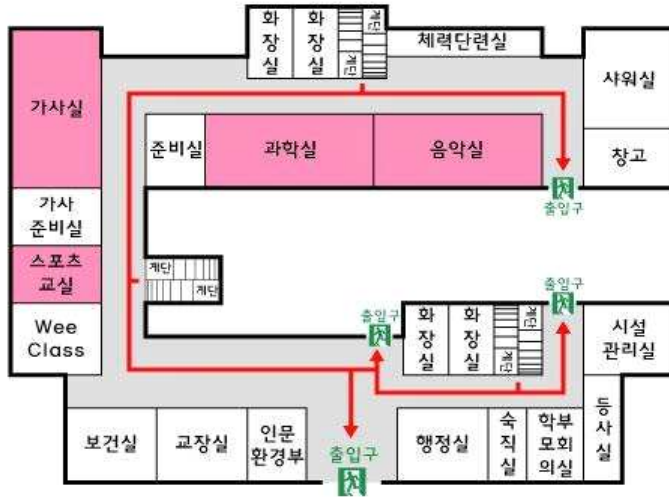
나. 비상대피로

비상대피 안내도

본관 1층

- 화재시대처방법**
1.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친다.
 2. 발신기(비상벨)을 누른다.
 3. 피난안내도에 있는 피난동선을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 소화기사용방법**
1. 소화기를 바닥에 두고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는다.
 2. 한손은 손잡이, 다른 한손은 호스를 잡는다.
 3.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로 쓸듯이 방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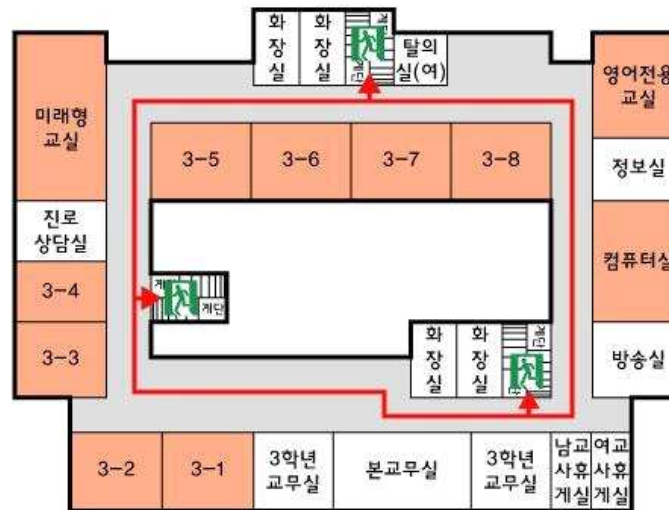
화재신고는 **119** **호원중학교** (주)한국소방 031)847-4219

비상대피 안내도

본관 2층

- 화재시대처방법**
1.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친다.
 2. 발신기(비상벨)을 누른다.
 3. 피난안내도에 있는 피난동선을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 소화기사용방법**
1. 소화기를 바닥에 두고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는다.
 2. 한손은 손잡이, 다른 한손은 호스를 잡는다.
 3.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로 쓸듯이 방사한다.



화재신고는 **119** **호원중학교** (주)한국소방 031)847-4219

비상대피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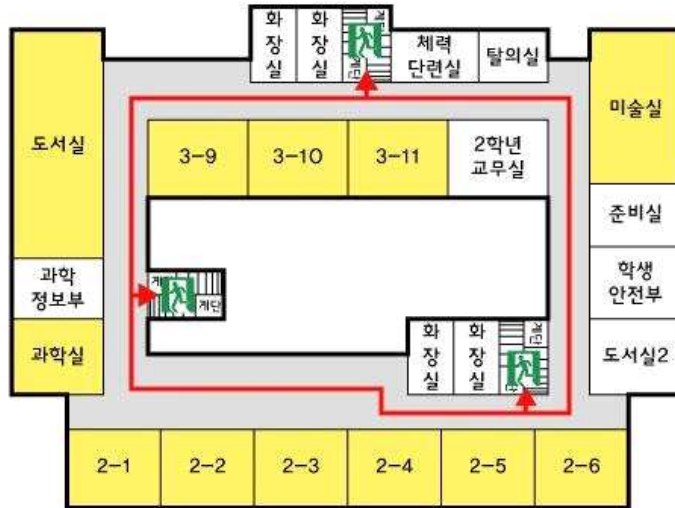
본관 3층

화재시대처방법

1.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친다.
2. 발신기(비상벨)을 누른다.
3. 피난안내도에 있는 피난동선을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소화기사용방법

1. 소화기를 바닥에 두고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는다.
2. 한손은 손잡이, 다른 한손은 호스를 잡는다.
3.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로 쓸듯이 방사한다.



화재신고는 **119**

호원중학교

(주)한국소방 031)847-4219

비상대피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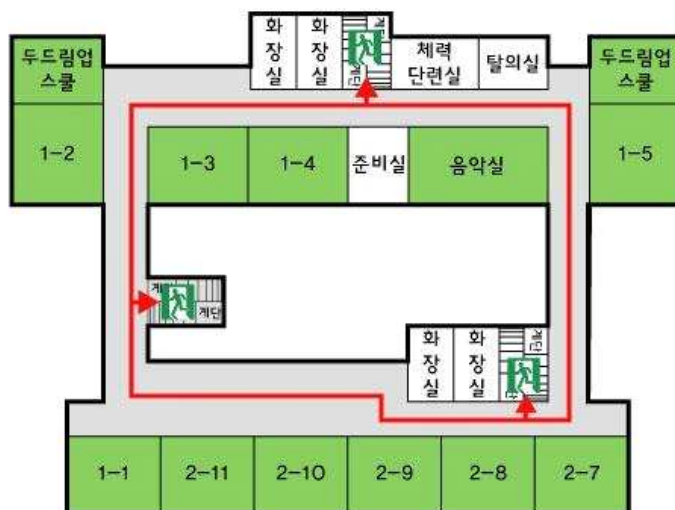
본관 4층

화재시대처방법

1.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친다.
2. 발신기(비상벨)을 누른다.
3. 피난안내도에 있는 피난동선을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소화기사용방법

1. 소화기를 바닥에 두고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는다.
2. 한손은 손잡이, 다른 한손은 호스를 잡는다.
3.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로 쓸듯이 방사한다.



화재신고는 **119**

호원중학교

(주)한국소방 031)847-4219

비상대피 안내도

본관 5층

화재시대처방법

1.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친다.
2. 발신기(비상벨)을 누른다.
3. 피난안내도에 있는 피난동선을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소화기사용방법

1. 소화기를 바닥에 두고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는다.
2. 한손은 손잡이, 다른 한손은 호스를 잡는다.
3.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로 쓸듯이 방사한다.



화재신고는 **119**

호원중학교

(주)한국소방 031)847-4219

소방·피난 안내도



법		례	
①	소화기	②	비상구
③	소화전	④	방화셔터
★	현위치		

호원중학교 별관 2층

피난안내도

- ※ 비상시 피난안내도에 표시된 비상구로 향하는 환은실을 숙지하시며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신고는 국번없이 119

소화기 사용방법

1.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2. 한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호스를 잡습니다.
3.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4. 상하 손잡이를 누르고 빗자루 쓸 듯이 뿌립니다.



화재시 대피요령

1.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2.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십시오.
3. 낮은 자세로 피난안내도의 피난동선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십시오.

화재, 구조, 구급등 위급 상황 발생시 119

다. 비상용품의 위치

- 1) 심장자동 충격기 : 1층 현관 로비
- 2) 비상배낭 : 행정실
- 3) 소화기 : 각 층별 복도
- 4) 소화전 : 각 층별 복도
- 5) 각 종 약품 : 1층 보건실

1. 비상커뮤니케이션(재난대응기관, 교육청,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가. 학교는 발생한 재난 또는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에 따라 교직원 명단과 연락처, 재난대응, 응급의료, 관계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교육청 재난안전관리체계와의 연계 포함), 시설 및 물품 공급업체 비상연락처 등에 따른 비상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한다.

나. 비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 1) 유선전화 :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부모들의 정보요청에 응대하기 위해 학교 전화번호 중 하나(또는 그 이상의 회선)를 핫라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2) 휴대전화 :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으로, 교직원들이 이동하는 중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2. 장애학생 지원

가.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 방안

- 1)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 후송 또는 119 신고
- 2) 학교에 상황을 보고 및 학부모에게 통보
- 3) 사고 경위 파악 및 증빙자료 확보
- 4) 사고 경위 조사 시 학생들의 인권 존중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유의
- 5) 피해학생은 별도로 상담
- 6) 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생 지도에 상호 협조
- 7) 피해학생에 대한 위문, 위로 등 성의있는 자세로 신뢰 구축

나.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발생 시 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 응급 상황을 목격한 아동은 119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기
↓		
보건교사 담임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여부 결정 (상태가 중한 환자일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119 연락 또는 이송차량을 확보하여 전문의료 기관으로 이송) •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연락(건강보험증 지참 안내) • 응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
↓		
학교장 및 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및 상부기관에 사고 경위 보고 • 학교 창구의 일원화 • 완치될 때까지 연락, 문병
↓		
행정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결과를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건일지에 기록 • 학교안전공제회에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 해당 담임교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가 보상 신청

3. 대피 / 역 대피 / 대피소 피난

가. 대피

대피는 화재, 폭발, 불법침입자, 위험물질 유출 등으로 인해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직원, 학생, 방문객이 운동장, 체육관, 또는 학교 밖의 안전지대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1) 학교장의 행동요령

가) 119(필요에 따라 112 포함)에 즉시 전화를 걸어 사건·사고로 인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있음을 알린다.(상황에 따라 통화담당자를 지정한다)

나) 교육청 담당자에게 학생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린다.

다) 화재경보기, 확성기를 사용하여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물 전체 또는 건물내 특정지역으로부터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린다. 정보방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들은 즉시, 학생들을 가져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대피 시 출석부를 지참하고 지정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학생 인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건·사고가 발생한 위치와 비상상황의 형태에 따라 대피경로를 결정한다.

마) 비상상황이 발생한 장소와 형태에 따른 대피경로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 무전기 또는 핸드폰을 통해 대피 절차를 지원할 교직원을 지정한다.

사)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벨, 무전기, 전령 또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이를 알린다.

2) 교사의 행동요령

가) 지정된 비상대피로 또는 학교장이 지시한 경로를 따라 건물 바깥으로 나가도록 지시한다. 건물 각 층의 평면도에 표시된 비상대피도는 각 교실 내부의 전등 스위치 옆에 부착해 놓아야 한다.

나) 1차 비상대피로가 막혀있다거나 위험한 상황인 경우에 2차 대피로를 이용한다. 비상상황과 이로 인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학교장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대피경로와 건물 내의 대피 장소를 선택한다.

다)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돕는다.

라) 교실을 떠날 때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문을 닫고 불을 끈다.

마) 학생 또는 교직원의 소지품들로 인해 대피 행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

바) 출석부, 전화번호부, 응급처치키트, 그 밖의 비상용품을 지참하고 대피한다.

사) 건물 밖으로 나오는 동안 화장실, 복도, 편의시설 등을 체크한다.

- 아) 지정된 대피 지역을 이동한다.
- 자) 건물 밖 대피장소나 건물 내부의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즉시 부상자 발생유무를 확인한다.
- 차) 추가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지역에서 대기한다.

3) 행정직원의 행동요령

- 가) 방문자 기록지와 교외출입허가자 기록지를 지참하여 대피지역으로 이동한다.
- 나) 교사들로부터 인원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학교장에게 부상학생과 부상교직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나. 역대피

학교 건물 바깥보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상화 즉, 격렬기상, 지역사회에서의 비상상황 발생, 조직범죄활동, 또는 교정 밖에서의 위험물질유출 등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다.

1) 학교장의 역할

- 가) 학교 건물 바깥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역대피 명령을 내린다. 메가폰, 무전기, 전화 등의 연락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 나) 교육청 관계자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 다) 라디오,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교원을 지명한다.
- 라) 119 또는 112에 신고한다.
- 마) 외부문과 창을 닫고 참근다.

2) 교직원의 역할

- 가) 가장 가까운 건물 입구를 통해 즉시 학생들을 교실 또는 건물 내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나) 학생이나 교직원 어느 누구도 건물 밖에 있지 않도록 한다.
- 다) 모든 위부분과 외부창을 닫고 잠그도록 지도한다.
- 라) 만일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 건물 밖에 있는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집합하도록 지도한다.
- 마)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출석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바) 학교장으로 부터의 추가 지시를 기다린다.
- 사) 위험요인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학교의 추출입구를 감시한다.

다. 대피소 피난

피난 절차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동안 학생, 교직원, 시민들이 학교 내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피소 피난은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험한 경우에 사용되지만, 대피소는 비상사태를 유발시킨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1) 학교장의 행동요령

가) 교내방송, 무전기, 전화기, 메가폰 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주의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대피소 피난 절차를 실시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지정된 대피 장소와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주세요. 건물 밖에 있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즉시 건물 안으로 대피하여십시오.”

나) 학교 건물 바깥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역대피 명령을 내린다. 교내방송, 메가폰, 무전기, 전화, 연락병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집합시킨다.

다) 모든 외부문과 외부창을 닫고 잠그도록 지시한다.

라) 교육청에 학교가 대피소 피난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한다.

마) 라디오,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대피소 피난을 유발시킨 사건·사고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교직원을 지명한다.

바) 재난안전요원과의 접촉을 유지하며 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실시한다.

사) 사건·사고에 의한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2) 교직원의 행동요령

가) 학생들을 지정된 장소 즉, 창문이 없는 방, 화장실, 설비실, 또는 커다란 창이나 문이 없는 복도의 구석 공간 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나) 교실 밖으로 나가면서 문과 창을 닫아 놓는다.

다)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 자세를 낮추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도록 지시하여 날아올 수 있는 파편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만일 건물 바깥에 있는 경우라면, 학생들에게 학교 건물 내부의 안전한 지역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대피 장소로 들어갈 것을 지시한다.

마) 돌풍이나 태풍 등의 격렬 기상으로 인해 건물이나 대피소 안으로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계곡의 나무나 전봇대 등이 없는 배수로나 낮은 장소로 이동해 쪼그리고 앉거나 누워있도록 한다.

바) 건물 내부로 이동 시 유해한 화학연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연기가 닿지 않는 장소로 학생들을 이동시킨다.

사) 학교장은 바깥이 안전해졌으니 대피소에서 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피소 안에 머물도록 지시한다.

3) 건물 관리자의 행동요령

- 가) 학교장 또는 응급구조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시설을 잠근다.
- 나) 난방, 환기, 냉방 등의 공기순환시스템을 잠그라는 지시가 있을 시 이를 시행한다.
- 다)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피소가 마련된 건물의 현관에 “대피소”란 것을 알리는 안내 카드를 부착한다. 그러나 흉기난도, 불법침입,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학교 내 건물에 들어왔을 때는 안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락다운

흉기난동이나 불법침입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간 장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문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대비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가. 학교장의 행동요령

- 1) 교내방소, 무전기, 전화,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전달한다.
“주의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지금 락다운을 실시합니다.”
- 2) 112신고자를 지정하고, 그는 학교명과 주소, 비상상황을 설명하고, 학교가 락다운을 실시하였다는 사실과 불법 침입자의 인상착의와 소지한 흉기, 학교의 사건지휘소 위치 등을 전달한다. 상황 변화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고자가 전화통화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 3) 건물 외부에 있는 교직원들과 운동장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즉시, 교정 밖 집합장소로 이동할 것을 통보하고,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이들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4) 교육청에 락다운이 실시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나. 교직원의 행동요령

- 1) 화장실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교실로 들어오도록 하여 모든 사람들이 교실로 들어가도록 한다.
- 2) 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커다란 물건들을 옮겨 놓는다. 이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의자 등의 물건들을 활용한다.
- 3) 출석을 확인하여 실종된 학생 또는 자신의 교실에 피신 중인 학생이나 방문객에 대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 4) 학생들에게 교실 내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 것을 지시한다. 흉기소지자나 불법 침입자가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이들로부터 학생들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 5) 교직원과 학생들은 큰소리를 지른다거나 휴기소지자/불법침입자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향해 물건을 던짐으로써 이들이 흥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실행한다.
- 6) 학교장으로부터 위협상황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전달받는다거나 창문 등을 통한 안전한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전까지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다. 행정직원의 행동요령

- 1) 응급구조 기관과 학교장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시를 기다리며 전화기 옆에 대기한다.
- 2) 교내방송, 컴퓨터 등의 방법을 통해 교실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한다.
- 3) 학교장은 지휘소 설치를 지원한다.

5. Drop-Cover-Hold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로 갑작스런 폭발, 건물 붕괴, 지진 등에 의해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파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

가. 실내 행동요령

- 1) 바닥으로 몸을 낮춘다
- 2) 튼튼한 테이블, 책상, 또는 그 밖의 가구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만일 자신이 있는 곳에 이를 위한 적합한 가구가 없다면, 자신의 팔로 얼굴과 머리를 보호한다.
- 3) 멈추라는 지시가 있기까지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도록 한다.
- 4) 교직원은 학교장의 지시가 있다거나 또는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때, 학생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장소로 대피시킨다.
- 5) 교직원과 학생은 피난 시에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나. 실외 행동요령

- 1) 건물, 가로수, 전력선에서 떨어진 장소로 이동한다.
- 2) 지면을 향해 몸을 낮춘다.
- 3) 자신의 팔을 이용하여 얼굴과 머리를 보호한다.
- 4) 교직원은 학교장의 지시가 있다거나 또는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때, 학생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장소로 대피시킨다.

다. 차량이동 요령

- 1) 즉시 차량의 속도를 줄여서 정차시킨다.
- 2) 모든 학생/교직원에게 차량 안에 머물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 될 때는 조심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 밖으로 대피한다.

6. 폭염

가. 폭염 발생시 학교와 교사의 대처 요령

상황/단계	학교와 교사 대처 요령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한다 -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폭염에 취약한 질병보유 학생을 특별관리 한다. - 폭염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폭염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점검 확인한다. - 폭염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의 실외 야외활동을 자제시킨다. - 체육활동 등의 실외 수어버은 그늘이나 체육관에서 실시한다.
폭염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실외 야외활동을 금지시킨다. - 체육활동 등의 실외 수업은 실내수업으로 대체한다.

나. 폭염 발생시 학생 행동 요령

상황	학생 행동 요령
등하교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 전 학교의 임시휴교 등의 비상연락망을 확인한다. - 되도록 천천히 걷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 교복이 아닌 경우 가볍고 얇은 옷을 착용,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가린다.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단. 폭염경보 발령 시 실외, 야외활동 금지)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스포츠음료, 과일쥬스 등을 마신다.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가정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 물을 끓여 먹고, 날 음식은 삼가며 변질이 의심되면 버린다. - 에어컨, 선풍기는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커지도록 한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홀로 있지 않는다. - 어둡고 달라붙는 옷은 가급적 입지 않는다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는 먹지 않는다.
이상 증세 발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과 관련된 증상이 보이거나 폭염 환자(쓰러진 학생)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한다(선생님, 보호자 또는 119에 연락)

7. 황사

흡입되는 미세먼지, 황사의 양은 활동의 강도와 시간에 비례하므로 미세먼지나 황사의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가.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대처방법

- 1) 신체노출부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 소매 옷을 입고 황사방지용 마스크(황사, 미세먼지 차단율 92.8%)를 착용한다.
- 2) 마스크가 없으면 물을 적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천천히 깊게 호흡한다.
- 3) 가능하면 도로변 쪽으로 걷는 것을 피한다. 도로변 쪽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특히 심함.
- 4) 외출 후에는 옷을 잘 털고, 샤워, 세수, 양치질을 하여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와 황사성분을 제거한다.
- 5) 포장되지 않은 야채나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 먹고 노상이나 야외조리음식은 가급적 사먹지 않는다.
- 6) 눈, 목, 코 안의 점막을 세정하는데도 신경을 쓴다.
- 7)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거나 소금물로 씻지 않고,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눈을 깨끗이 한다.
- 8) 콘택트렌즈의 사용보다는 안경을 쓰는 것이 좋지만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소독, 세정을 철저히 하고 장시간 착용은 피한다.

나. 가정이나 실내에서의 대처방법

- 1)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나 황사 성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 2)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나 황사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 3)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실내에 가습기,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하여 적정 습도를 유지시킨다.
- 4)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 물방울 입자에 붙은 미세먼지를 가라 앉힌 뒤 물걸레로 닦아낸다.
- 5) 의류 세탁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유연제의 정전기방지 기능이 옷에 먼지가 달라 붙는 것을 막는다.
- 6) 수분이 부족할 경우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미세먼지나 황사성분의 침투를 더욱 쉽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 1.5L이상의 물을 마신다.
- 7) 황사 속 먼지와 중금속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키는데 이를 막아주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다.
- 8)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때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묻어있을 수 있는 황사 성분을 제거한다.

다. 황사 발생 시 학교와 교사의 대처 요령

상황/단계	학교와 교사 대처 요령
폭염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점검 확인한다. - 황사 발생 대비 학생 행동요령을 교육한다. - 황사 발생 시 실외 야외학습은 실내학습활동으로 조정한다.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를 점검한다.
폭염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 관련 질환자를 파악하고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등)한다.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황사종료 후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p>황사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실정에 맞게 등·하교 시간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p>

8. 태풍·집중호우

남·북위 5~20°의 열대성 해상에서 발생하는 중위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고,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부 최대 풍속이 17m/s이상의 강한 폭우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태풍이라고 함.

가. 호우 시 행동요령

- 1)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는다.
- 2) 하천 인근의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3) 비상 생필품을 미리 준비한다.
- 4) 공사장 근처는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5)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다.
- 6) 물에 잠긴 도로를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 하지 않는다.
- 7) 침수된 곳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에어컨은 반드시 꺼야한다.

나. 강풍 시 행동요령

상황/단계	학교와 교사 대처 요령
대설 주의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방송을 통하여 대설 예보·경보를 청취한다. -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점검·확인한다. - 대설 대비 학생 행동요령을 교육한다. - 제설장비·인력·자재를 점검한다. - 학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 학교 내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표시한다.
대설 경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한다. - 대설 대비 학생 행동요령을 교육한다. - 학교입구, 출입구, 계단 등에 제설작업을 한다. - 등·하교 시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한다. - 피해상황을 파악한 후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한다.

9. 식중독

가. 정의

미생물 혹은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 단시간 내에 배가 아프면서 구토, 설사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을 묶어서 식중독이라 한다.

나. 예방법

1) 세균을 묻히지 않는다.

식중독균이 손이나 조리 기구를 통해서 식품에 부착되어 증식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신이 세균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2) 세균을 증식시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은 실온상태에서 급속히 증식한다. 그러므로 냉장고에 보존해야할 식품을 구입한 경우는 빨리 냉장고에 넣도록 한다. 그리고 조리한 음식은 되도록 빨리 먹도록 한다.

3) 세균을 없앤다.

가열하고 조리한 식품은 중심부가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도록 한다. 조리 기구는 표백제나 뜨거운 물 등에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한다.

다. 식중독 예방법

1) 학교 안

가) 손 씻기(음식 먹기 전, 화장실 사용 후, 재채기 후 등)를 생활화한다.

나) 식사도구(식판, 수전)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관리한다.

다) 급식에서 이 물질이나, 상한 음식 발견 시 섭취를 중지하고 즉시 선생님께 알린다.

2) 학교 밖

가) 비위생적인 조리 식품,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는다.

나) 식품은 유통기한, 원산지, 식품성분(첨가물)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한다.

다) 냉장·냉동식품(소시지, 우유, 아이스크림 등)은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3) 일반적인 예방법

가) 손 씻기와 개인위생을 생활화 한다

나) 식품은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다) 조리 기구는 세척 및 소독해서 사용한다.

라) 식품 조리 및 취급에 주의한다.

마)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다.

바)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한다.

라. 식중독 응급처치

- 1) 탈수에 주의한다.
- 2) 보리차나 정수한 물을 먹인다. 환자가 탈수증상이 보인다면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3) 보온하고 쇼크를 방지한다.

10. 실험·실습실 사고

가. 실험실습 시 학생지도 방침

- 1)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실험실 출입 통제 및 입장지도 철저
- 2) 약품 사용법과 실험실 안전 응급조치법을 교육 후 실험하도록 지도
- 3) 실험 실습 중 학생들이 잤담, 장난 등을 하지 않도록 통제 철저
- 4) 학생이 임의로 시약을 실험실 밖으로 반출하지 않도록 관리

나. 실험, 실습실 관리 방침

- 1) 실험폐수, 시약은 별도 보관 후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 2) 지도교사는 실험 종료 후 관련대장 정리 및 잠금장치 확인 후 퇴실

다. 실험, 실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1)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건교사의 조치에 따름
- 2) 보건교사 부재 또는 중상인 경우 119에 지원요청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함

라. 상황별 응급조치

상 황		행동 요령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시 선생님과 다른 학생에게 알리고, 질서를 지켜 안전한 곳으로 대피 • 화재가 크지 않은 경우 주변의 실험기구나 시약병을 치우고 젖은 걸레나 실험복으로 덮음 • 화재가 클 경우 화재정보기를 울리고 119에 신고함 • 옷에 불이 붙었을 시 바닥에 엎드려 불이 꺼질 때까지 뒹굴거나 물에 젖은 실험복으로 덮음 • 연기가 날 경우 몸을 낮춘 상태에서 수건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 대피로를 통해 밖으로 나감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찬물에 열기를 식히면서 보건선생님의 지시를 받음 • 화상 부위가 넓을 때는 찬수건으로 감싸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함
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용에 탄올로 소독된 거즈를 붙임 • 출혈이 심하면 압박지혈하고 보건선생님의 지시에 따름
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나 나무조각이 박히면 움직이지 말고 보건선생님의 지시에 따름
약품 으로 인한 사고 발생	눈에 들어갔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아래 위 눈꺼풀을 종종 치켜들면서 즉시 눈을 씻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 강한 알칼 리가 눈이나 입에 묻었을 때 2%의 붕산수로 닦는다.
	피부에접 촉했을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된 의복,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한다. • 강한 산이 묻었을 때 묽은 암모니아수 또는 탄산수소 나트륨수용액으로 중화
	흡입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을 구한다. • 환자가 황산을 섭취 또는 흡입하였을 경우 호흡용 기구를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하고, 구강 대구강법을 이용한 호흡은 하지 않는다.
	먹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임의대로 구토를 시키거나 중화시키지 않음 • 초기에는 삼킨 것을 주의하여 물 등으로 위세척을 하면 좋다. • 식도나 위장내에 화상을 입을 경우, 위세척을 할 때 잠재적인 출혈이나 위천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하도록 한다

11. 화재

가. 화재 원인

- 1) 의도적 원인 : 방화, 테러 등에 의한 화재
- 2) 비의도적 원인 : 전기, 담배, 가스, 유류, 불장난, 난로, 실험부주의로 인한 화재

나. 화재의 종류와 소화기

- 1) A급 일반화재 : 나무나 종이, 솜, 스펀지, 섬유류 같은 일반적인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화재
- 2) B급 유류화재 : “유류화재” 는 쉽게 말해서 기름과 같은 가연성 액체의 화재
- 3) C급 전기화재 : “전기화재” 를 나타내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다. 화재 발생 장소별 대처요령

1)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처요령

- 가) 먼저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화재 발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 나)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라)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기 바랍니다.
- 마)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노력합니다.
- 사)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승강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복도와 계단을 이용하여 옥외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아)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승강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에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2)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처요령

- 가) 승강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 나)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다)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니다.
- 라)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마)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바)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사)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쉽니다.

아)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3) 건물이나 집에 연기가 들어올 경우 대처요령

가)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옷이나 이불로 막습니다(이때, 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쉽니다.

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도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줍니다.

라)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마)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4)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처요령

가)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나)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갑니다.

다)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5)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대처요령

가)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줍니다.

6) 학교에서의 대처요령

가) 화재 발생 즉시 최초 화재 목격자는 “불이야” 하고 외치고 비상벨을 누른다.

나) 화재 경보 접수 시 선생님의 지시에 의거 대피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대피한다.

다) 대피로가 화염에 쌓여 있어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교실로 되돌아가 문을 닫고 옷이나 양말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한다.

라) 연기가 새어 들어 올 때에는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쉰다.

마) 학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화기로 불을 끈다

바) 소방서에서 건물의 안전여부를 판정 전까지는 절대로 건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 화재 발생시 임무 및 행동요령

구분	임무 행동요령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신고전화를 걸거나 신고자를 지정하여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였음을 알리고, 학교 이름과 위치, 화재 또는 연기가 나는 정확한 장소, 교직원 또는 학생들의 부상 유무 및 규모, 대피 실행 여부, 교내 사고지휘소 위치를 알린다. - 대피 명령을 발동시킨다. - 교직원, 학생, 방문객들을 지정된 대피경로를 활용하여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 교육지원청에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소통을 유지한다. - 행정 직원에게 학교 방문자 명단, 조퇴학생 명단, 사고대응에 필요한 중요 문서, 도면, 정보, 물품 등을 교내에 설치된 시고지휘소로 가져오도록 한다. - 교사들로부터 등교학생의 명단을 취합하여 실종학생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직원을 지정한다. - 교육지원청, 소방서,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으로 대피하여 지정된 재배치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 화재 현장에 대한 법적 지휘권을 가진 소방관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안전을 확인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 교직원들에게 비상 상황에 관한 정보, 이들이 언제 교실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부, 비상구조키트,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챙기고, 학생들을 가능한 빨리 기르고 차분하게 건물 밖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킨다. - 이동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탈출을 돕거나 또는 도와줄 사람을 지정한다. -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이나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조명을 끄고서 교실 문을 닫는다. - 집합 장소에서 학생들이 모두 모였는지를 확인한다. 실종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모든 것이 안전해졌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 소방서에서 안전을 확인 받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12. 지진 · 해일

가. 지진발생시 기본 대응요령

1) 집 안에 있을 경우 대응요령

가) 학생들에게 지진 발생시에는 집에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도록 하고,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도록 하며, 화재 발생시에는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끄도록 한다.

- 나) 지진발생 때는 진동에 의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며,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 근처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다)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만일 간헐 사태를 대비하여 대피방법에 관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라) 평소에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히도록 합시다.
- 마) 가족은 물론 이웃사람들과도 협력해서 초기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 집 밖에 있을 경우 대응요령

야외에서 지진 발생시에는 손이나 가방 등 드는 것을 활용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간판이나 유리창은 떨어질 수 있고, 담이나 대문 기둥도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가까이하지 않도록 한다.

3) 건물 안에 있을 경우 대응요령

- 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을 때 지진발생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자의 지시에 침착하게 따르도록 하며, 화재발생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도록 한다.
- 나) 지진 발생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만일 간헐을 경우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나. 장소에 따른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1)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대형, 고층건물

- 가) 소파 혹은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합니다. : 크고 견고한 구조물 밑이나 아래에 생존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나) 계단은 이용하지 맙시다 : 지진발생 시 외부계단은 빌딩본체와 다르게 진동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계단과 빌딩본체가 충돌하여 파괴되면서 계단에 있던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계단은 건물 중 가장 심각한 구조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진으로 바로 붕괴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무게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다) 가능한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외벽 쪽으로 대피합시다 : 건물 내부로 들어갈수록 대피로가 잔해로 막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외벽 쪽에 생존 공간이 생길 가능성과 붕괴 후 구조될 가능성이 높으나 유리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합니다.
- 라) 복사지, 신문지 등 종이 더미 속은 생존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이를 쌓아둔 쪽으로 대피합시다.

2)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소형건물

가) 1층보다는 2, 3층이 안전하므로 위층으로 대피합시다.

나) 목재는 유연하고 지진력과 같은 방향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목조건물은 지진발생시 가장 안전한 시설입니다. 목조건물이 붕괴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이 부서져서 많은 부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콘크리트 건물에 비하면 신체가 어스러져 사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라)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침대에서 굴러 내려온다.

마) TV를 시청 중이거나 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재빨리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파나 큰 의자 옆으로 가서 몸을 구부린 태아자세를 유지합시다.

바) 현관의 기둥이 부서졌을 경우 현관 위의 천정 붕괴에 유의합시다.

사) 학교에서는 책상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합시다.

3) 자동차 안

고가도로 아래는 고가상판이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부서질 수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에서 신속히 빠져 나오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 자동차에서 나와 자동차 바로 옆에 누워있거나 쭈그리고 있도록 합시다.(실제 지진현장을 조사한 결과, 상판 지지기둥이 차량으로 직접 넘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판 밑에 깔린 자동차 옆으로는 1m 높이 정도의 생존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 해일예보 및 발생 시 대처요령

1) 해일에 대한 대비요령

가) TV나 라디오를 통한 기상상황이나 해일경보 등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나) 해안저지대 주민은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다) 해안에서 진동을 느꼈을 경우나 지진해일 경보를 들었을 경우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라) 지진해일시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귀항하지 말고 대기하며, 항구에 있는 선박도 먼 바다로 안전하게 대피합시다.

마) 물이나 전기가 끊기는 것에 대비하여 마실 물, 식료품, 손전등, 라디오 등을 준비합시다.

바) 대피에 대비하여 비상 소지품을 챙겨둡시다.

사) 집 주변에 있는 물건을 치우거나 고정시켜 둡시다.

아) 현관문턱, 개구멍 등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을 막아둡시다.

자) 집 주변 하수구가 흙이나 쓰레기로 막혀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합시다.

차) 방이나 거실의 침수에 대비하여 중요한 물건은 높은 곳으로 옮깁시다.

카) 외출을 하지 맙시다.

타) 한 번이라도 해일피해 경험이 있었던 지역 주민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간단히 짐을 싸두고 피난대피시설을 확인합시다.

2) 해일발생시 행동요령 대비요령

- 가) 태풍 시 행동요령에 맞춰 행동합시다.
- 나)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사전예고가 어렵고 피해정도가 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 매우 심한 지면진동을 느끼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난 것이므로 해안지역의 주민은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 라) 지진해일 경보가 있으면 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합시다.
- 마) 지진해일은 약 10분 간격으로 반복되며 약 30분에서 파도의 높이가 가장 높고 이러한 상태가 약 3~4시간 반복된 후 점차 약화되면서 하루정도 지속된다는 점에 유의합시다.
- 바) 지진해일 경보 시 수영, 보트놀이, 낚시, 야영 등을 즉시 멈추고 해변가나 주택 및 지하실에서 대피합시다.
- 사)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두고 이웃 간의 연락방법을 알아둡시다.
- 아)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떠나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시다.
- 자) 기상청의 해일경보, 시·군·구청 또는 소방서의 대피명령이 있을 때 즉시 대피합시다.
- 차) 지반의 진동이 있을 때 대피합시다.
- 카) 해일이 밀려들 때 대피합시다.

3) 미처 대피를 하지 못했을 경우

- 가)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 나) 목조 주택은 떠나려 갈 가능성이 있으니 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합시다.
- 다) 해안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므로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급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라)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직접적인 파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바닥에서 높이가 2~3m만 높아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13. 흉기 난동

가. 흉기 난동이란?

학교 방문자 또는 학생과 교직원을 상해 또는 살해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러한 불법침입자들은 총, 칼, 폭탄 또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관은 물론이고 응급구조대원들에 의한 구호 활동이 동시에 필요하게 된다. 일단 경찰관이 도착하면, 이들은 법적으로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부여 받은 자이므로 이들의 지시를 따르고 이들에게

협조해야만 한다.

나. 임무 및 행동요령

구분	임무 및 행동요령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신고전화를 걸거나 신고자를 지정하고, 이를 지시 받은 교직원은 학교명과 주소,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 발생한 비상상황의 성격, 불법침입자의 수와 용모, 소지한 흉기의 종류, 이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 학교가 취한 행동, 그리고 현재 학교의 보안요원들이 위치한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사건지휘소에 대한 경비를 실시하고, 커뮤니케이션, 교직원과 학생들의 위치, 교정과 건물의 평면도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학교비상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가용할 수 있는 문서와 물품 등을 준비해 놓는다. - 행정직원들로 하여금 인터폰이나 무선전화기 등을 통해 교사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 교사와 학생들을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학교 밖의 재결집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것을 지시한다. -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학교로 들어오고자 하는 방문객과 차량의 진입을 막도록 지시한다. - 학교를 향해 오고 있는 모든 차량들은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지정된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한다.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락다운을 실행한다. - 건물 밖으로의 대피가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닌 경우, 현장지휘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교실 내에서 락다운 상황을 유지한다. - 불법침입자가 교실에 들어온 상황인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불법침입자가 흉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책, 컴퓨터, 전화기, 가방 등을 던져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거나 침입자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 등 모든 행동이 정당화된다.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교실 밖의 다른 장소로 도망가라고 말한다.

14. 무단 침입/인질극

가. 목적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 내에서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발견하였다거나 인질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학교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내에서 폭력을 휘두를 것으로 보이는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만나거나 보게 된 모든 교직원들은 자신들이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질극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불법침입 또는 인질극 발생으로 인해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경우, 사건현장에 관한 법적 지휘권을 가진 경찰의 지시를 따르고 이들과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책임

1) 모든 교직원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한 행동요령

가)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학교전담경찰관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른다.

나) 만일 교직원이 무단침입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교직원들과 동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무단침입자에게 점잖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임을 밝힌다.

라)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왜 방문했는지 묻는다.

마)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비실(또는 행정실)에서 방문일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이들과 동행하여 경비실(또는 행정실)로 이동한다.

바) 만일 무단침입자의 학교 방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에게 학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

사)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동행한다.

2)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가) 무단침입자가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교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 만일 무단침입자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이들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다) 무단침입자들과 만난 당시의 상황(이들을 발견한 장소, 이들의 인상착의, 이들이 소지한 무기(흉기) 또는 (소지품)을 파악한다.

라)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단침입자와 시각적 접촉을 유지한다.

마) 학교사고지휘관/학교장 또는 경찰(112)에 학교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무단침입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한다(되도록이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무단침입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다)

바)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은 교육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락다운을 발령한다거나 상황이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실행한다.

사) 만일 인질극을 벌이는 자가 당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끼어들지 않는다.

아)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이나 학교보안관(이들에게 인질극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112 경찰신고)에게 인질극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3)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인질이 된 경우,

가) 인질범의 지시에 따른다.

나) 인질이 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이 있는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다) 가능한 한, 인질범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 인질범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마) 인질범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말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이들과 언쟁을 벌인다가나 어떤 제안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의 역할

가) 즉시 112에 신고한다. 인질범의 수와 인상착의, 인질극이 벌어진 정확한 장소, 학교가 취한 조치(락다운 또는 폭발물을 소지한 인질범에 의한 대피) 등과 같은 상세한 상황을 알려준다. 인질협상팀에게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나) 락다운 또는 상황에 적합한 필요 조치를 실시한다.

다) 학교 건물 바깥에 위치한 교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을 학교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한다.

라)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격리시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질범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마) 교육장에게 인질극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시킨다.

바) 인질범과의 협상을 위한 팀이 도착하는 경우, 이들에게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다.

사)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5) 교사와 직원 역할

가) 교직원은 락다운 또는 지시가 내려진 절차를 실행한다. 만일 학교 건물 밖에 있는 경우 학생들을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 후, 지시를 기다린다.

나) 모든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15. 폭발 사고

가. 폭발사고의 개념과 원인

1) 폭발사고의 개념

어떤 원인으로 인해 급속히 진행되는 화학반응에 있어서, 반응에 관여하는 물체가 급격히 또한 현저하게 그 용적을 증가하는 반응으로 기체나 액체의 팽창.

상변화(相變化) 등의 물리현상이 압력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 폭발과, 물질의 분해 및 연소등 화학반응으로 압력이 상승하는 화학적 폭발이 있다.

2) 폭발의 종류

가) 기체폭발 : 가연성인 기체 또는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이 점화 또는 압축되어

폭발하는 현상인데 혼입하는 공기의 비율에 따라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일이 있다. 혼합기체가 폭발을 일으키는 조성(組成)의 범위를 폭발범위라고 하며 공기 속의 기체 또는 증기의 부피백분율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수소가 공기 속에 4~7%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 점화에 의해서 폭발하는데 4% 이하 또는 74% 이상이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폭발범위 내에서는 연소에 의한 열의 발생속도가 외부로의 산일속도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수소와 공기의 혼합기체에 브롬화에틸을 0.7% 가하면 폭발범위를 9~51%로 축소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을 폭발억제제라고 하며 폭발성인 기체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보통 상태에서는 잘 폭발하지 않는 고체나 액체도 미세한 분말이나 입자가 되어 공기 속에 현탁(懸濁)해 있으면 점화에 의해서 격렬하게 연소하여 폭발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일반적으로 분진폭발(粉塵爆發)이라고 하는데 석탄·목재·담배·밀·녹말·나프탈렌·숯(목탄)·알루미늄 등의 분말 폭발이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기체의 폭발과 마찬가지로 폭발범위를 가진다. 석탄의 경우는 50~1,600g이 공기 1m³ 속에 현탁해 있으면 폭발한다고 한다. 분진 폭발은 기체의 폭발에 의해서 유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탄광의 가스폭발에 의해서 일어나는 탄진폭발(炭塵爆發), 분진폭발 등이 그 보기이다.

나) 연쇄폭발 : 가연성 물질과 산소와의 반응이 연쇄반응에 의해서 진행되어 그 결과 반응속도가 증대하여 폭발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연쇄폭발은 열폭발에 비해서 저압(低壓)에서도 일어나며 열폭발을 고압폭발이라고 하는데 대해 저압폭발이라고도 한다. 수소와 산소의 혼합기체의 폭발을 예로 들면, 반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연소반응을 전혀 수반하지 않고 단지 반응속도가 현저하게 빠르기 때문에 폭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있다. 오존·아세틸렌·과산화수소 등의 분해, 염소와 수소의 혼합기체의 광화학 반응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중수소(重水素)의 핵융합에 의한 수소폭탄은 열폭발의 일종이며 또 우라늄 235에 감속한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일으키는 핵분열은 중성자를 매체로 하는 연쇄폭발로, 원자폭탄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특수한 폭발현상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나. 폭발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 1) 건물 안에서는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 2) 폭발사고 때는 굉음으로 청각 장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귀를 막고 대피한다.
- 3) 폭발사고 시에는 멀리 떨어진 장소, 차폐 벽이 있는 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4) 연기·가스에 의한 질식 등에 대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파편이나 낙하물에 주의하면서 대피한다.
- 5)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먼저 옮긴 후에 응급조치를 한다.

- 6) 추가 폭발에 대비 전기 스위치와 화기사용 등을 금하고, 가스 중간밸브를 잠근 후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시켜야 한다.
- 7) 대피 시에는 연기·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호흡기관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풍향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고 화재발생시와 같이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 8)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설명한다.

다.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요령

- 1)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에 라이터불, 버너 등 점화원을 제거합시다.
- 2)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합시다.
- 3) 가스에 의해 눈이 따가울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 4) 가스누출이 발견되면 즉시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를 잠가야 하며 용기의 밸브도 차단합시다.
- 5)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시고 후 바닥에 남아있는 가스(LPG)를 비나 방석으로 쓸어야 합니다.
- 6) 라이터를 켜거나 쇠불이를 부딪치지 말아야 합니다.
- 7) 환풍기, 선풍기 등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거나 켜면 스파크가 발생하여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즉시 가스판매소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8) 가스 안전점검을 합시다. 우선 냄새로 가스가 새는지 확인합시다. LPG는 바닥에서부터, LNG는 천정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불쾌한 냄새가 나면 가스가 새고 있는 것입니다.
- 9) 가스불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실내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 10)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빨래, 스프레이 통 등)을 가까이 두지 맙시다.
- 11) 비눗물이나 세제의 거품으로 가스기구와 호스의 연결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누설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12) 가스레인지는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버너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13) 취침 전에는 반드시 코크와 중간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4)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밀폐공간 등에서는 집진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 15) 과열이 되기 쉬운 가전제품, 보일러 등은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항상 안전밸브 등을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 16)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축전지는 장시간 또는 고온의 장소에서 사용을 억제하고, 금속물질과 함께 보관하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하지 맙시다.

- 17) 휴대용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등 폭발성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를 배출한 후 버립니다.
- 18) 여름철에 가스라이터 등 폭발성 위험물질을 자동차에 두고 내리지 않습니다.
- 19) 의심이 되는 폭발물을 발견 시에는 마음대로 분해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합니다.

16. 폭파 위협

폭발장치는 화염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방사능 형태 등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폭파위협이 발생한 사건 현장에는 경찰은 물론이고 소방, 응급구조, 그리고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된다.

가.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전달받은 자의 행동요령

- 1) 폭파위협에 관한 메시지에서 사용된 단어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2) 분명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답변을 요청한다. 어디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폭발물의 외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폭발물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폭탄의 유형), 어떻게 되면 폭발하는지, 언제 폭발하는지, 전화건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건 사람이 폭발물을 설치했는지, 왜 폭발물을 설치했는지 등
- 3) 전화로 폭파위협을 받는 경우, 통화자의 목소리, 말하는 패턴, 들리는 소음 등을 세밀하게 경청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 4) 전화로 폭파 위협을 받았고, 통화자와 계속 통화하는 상황이라면, 통화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인근의 다른 교직원에게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다.

나. 학교장의 임무 및 대처요령

- 1)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112와 119에 신고한다.
- 2) 응급대응기관을 맞이하고 상황을 설명할 교직원을 지정한다.
- 3) 교내방송을 통해 교직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린다.
주의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에 비상상황이 발효되었음을 알립니다.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위치한 교실에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 4) 만일 폭발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여 대피 절차를 가동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폭발물 의심 물체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대피경로와 집합장소를 선정한다. 절대로 화재경보를 발령해서는 안 된다. 또는 경찰 등의 긴급대응기관의 도착이나 이들로부터의 별도 지시를 기다리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 5) 대피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들을 학교 건물에서 최소 300m 떨어진 안전한 곳을 집합 장소로 지정한다.

- 6) 수상한 물체를 발견한 교직원은 경찰관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대기시켜 놓는다.
- 7) 유관기관에 폭파 위협 발생 상황을 알린다.
- 8)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 언론, 사건 관련단체에 정보를 제공한다.

다. 교직원의 임무 및 행동요령

- 1) 교실, 사무실, 작업공간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2) 폭발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물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체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발견된 장소에 대한 경계만 실시한다.
- 3)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고, 지시에 따른 절차의 실행을 준비한다.
- 4) 표준화된 대피 절차에 따라 지정된 집합 장소로 학생을 대피시킨다.
- 5) 교실을 떠날 때, 창문과 교실 문을 열어 놓는다.
- 6) 집합장소에 집결한 후, 인원 파악을 한 후 실종 학생이 있는 경우 보고한다.
- 7)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집합장소에서 학생들과 함께 머문다.
- 8) 지시에 따라 별도의 지정된 장소로 이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
- 9)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 안전이 확인 된 이후에는 건물에 다시 들어가 정상적인 수업과 업무를 진행한다.

17. 체험학습활동 사고<현장체험 버스사고>

일반적으로 버스는 학생들을 단체로 이동시키는 경우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버스기사가 안전한 운전을 할지라도 주변의 다른 차량운전자의 부주의나 날씨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가 현장체험활동에 사용할 버스에 는 항상 응급상자, 소화기, 손전등, 비상경고장비(교통사고 안내판, 야광조끼 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버스사고 발생시 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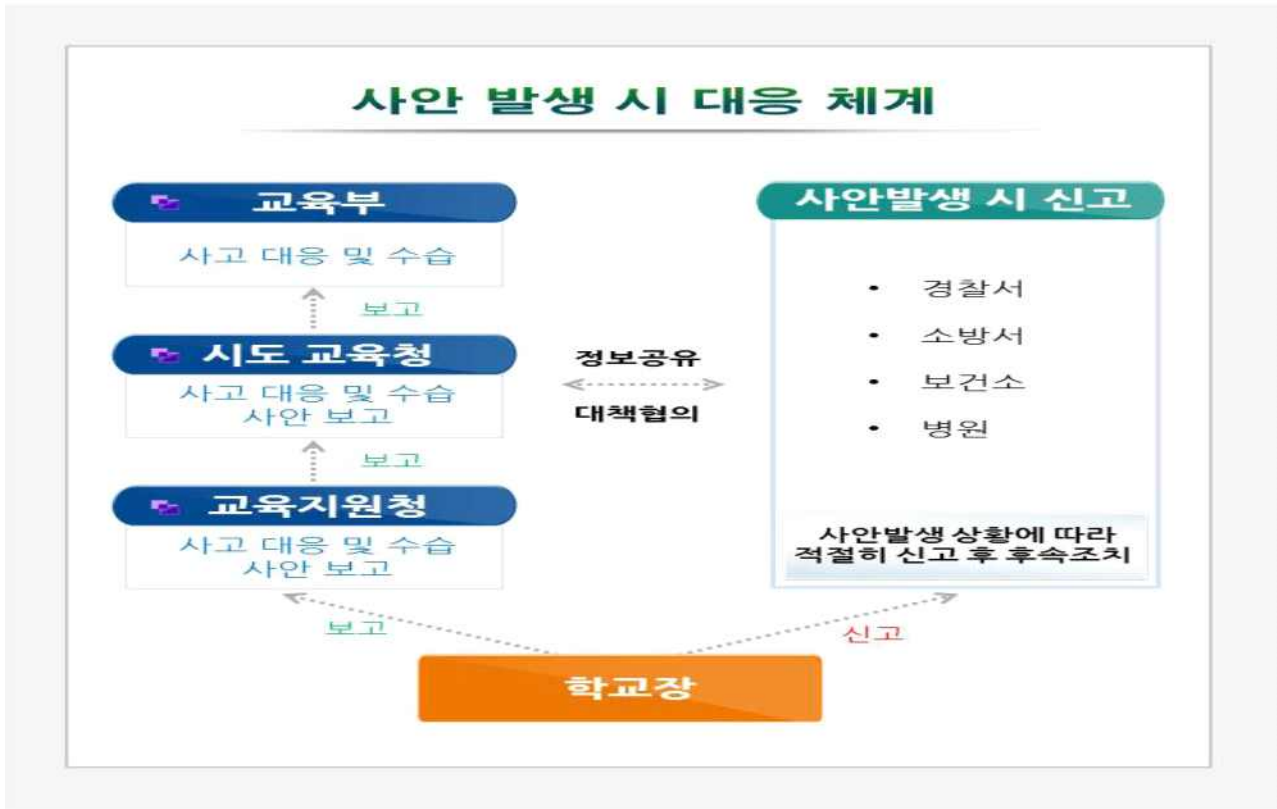
- 1) 비상대응기관(119, 112)에 응급지원을 요청한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위치, 사고의 심각성, 부상자, 현재 버스에 비치된 장비 등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응활동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활동 그리고 사고로 인한 2차적 위험상황(화재 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린다.
- 2) 사고 발생시 버스기사에게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시동을 끄며, 비상등을 켜도록 한다.
- 3) 사고로 인해 필요한 후속의 대응행동을 실행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침착하게 있도록 지도한다.

- 4) 버스기사에게 사고에 의한 화재와 같은 2차적인 위험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도록 한다.
- 5) 후속차량에 의한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가 사고로 인해 정차 중이란 것을 다른 차량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
- 6) 학생들을 버스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만일 화재나 다른 차량에 의한 추돌 등과 같은 2차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안전한 버스 안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한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부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부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상자를 버스 밖으로 옮기지 않는다.
- 7)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8) 학교장/사고지휘관 또는 응급대응기관이 사고로 인한 상황 변화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상황 변화를 알려준다.
- 9) 만일 학생들이 사고버스에서 다른 장소(병원, 피난장소, 다른 버스)로 이송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보(이송된 학생의 이름 등)를 학교장/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10) 학생과 차량의 추가적인 부상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1) 사고에 대한 증거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유지한다.
- 12)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 13) 구급요원들의 지시에 협조한다.
- 14) 사고처리가 종결된 이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버스사고 발생시 학교장/사고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사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을 찾아 보내거나 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를 지원할 교직원을 사고 현장으로 파견한다.
- 2) 사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나 물자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3) 버스 탑승객의 이름, 상태,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송된 경우 그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교육청과 학교의 부모연락 담당자에 이를 통보한다.
- 4) 필요한 경우, 부상자를 치료하는 응급요원(또는 이송병원의 치료의사)에게 학교가 보유한 특별배려학생들에 대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5) 필요한 경우, 현장에 파견된 교직원들에게 후송하는 부상자들과 함께 움직일 것을 지시한다.
- 6) 「가정복귀(학생/학부모 인계) 프로토콜의 실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7)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치료」 프로토콜의 실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



라. 사안 발생시 주체별 역할 안내

학생교사 및 주변 사람에게 도움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발생 시 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 응급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119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기 - 해외의 경우 해당지역 한국 대사관, 영사 콜센터 등에 협조 요청 (**각국응급전화: 미국 911, 일본·대만 119, 중국 120) 							
인솔교사 담임교사 환자상태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여부 결정 (상태가 중한 환자일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119 연락 또는 이송차량을 확보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 •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연락 • 응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 							
학교장 및 관리자 사고경위 파악 사후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도교육청에 사고 경위 보고 • 환자 병문안 등 치료를 위한 지원 • 사후대책 추진 시 학교 창구 일원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각급 학교</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교육 지원청</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도교육청 (학생안전과)</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교육부</td> </tr> </table>	각급 학교	→	교육 지원청	→	도교육청 (학생안전과)	→	교육부
각급 학교	→	교육 지원청	→	도교육청 (학생안전과)	→	교육부			
행정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 결과를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건일지에 기록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 해당 담임교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가 보상신청 							

18. 위험(화학)물질 유출사고

지역사회 및 학교 주변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위험화학물질들의 사용과 운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학사고는 학교 건물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 학교 보유 위험물질 상세 정보

과학실 약품장에 보관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한 달에 한 번 상태를 점검한다.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 시, 학교는 경보시스템을 발령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이를 알린다.

나. 외부에서의 화학(위험)물질의 유출에 따른 절차 및 행동요령

노출된 위험물질의 특성에 기초하여 적합한 학교사고지휘관을 지정하고, 사고현장에 대한 법적 지휘권을 가진 응급대응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대응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한다. 일단 재난안전지휘관이 도착한 이후에는 이들의 지시에 따르고 이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임무 및 행동요령

구분	임무 및 행동요령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와 112 신고전화를 걸어 응급구조기관과 경찰에게 사고발생을 알린다. - 역대피 또는 대피소 대피 등 어떤 절차를 가동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물 관리자에게 환기시스템을 끄도록 지시한다. - 학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발생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관계자에게 사고로 인한 상황과 취해진 조치가 무엇인지 알리고, 이들에게 상황 변화에 따른 변화된 상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라디오, TV,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통해 사고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지휘관에게 이를 알린다. -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결정한 경우, 도보나 차량 등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다시 집합할 것을 지시한다. - 지정해 놓은 재집합 장소를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집합 장소를 새로이 선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 사고발생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고, 필요시 가정복귀절차의 실행을 준비한다. - 임시휴업을 할 것인지 학사 운영을 재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사고발생 및 진행에 따라 취한 모든 활동들을 기록해 놓는다.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즉시 위험인접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동시킨다. - 학생들이 건물 밖에 있는 경우, 즉시 이들을 건물 안으로 대피시킨다. 깃발이나 나뭇잎의 흔들림을 관찰하여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이동 방향을 결정한다. - 사고지휘관으로부터 대피소 대피를 지시 받은 경우, 이를 실행한다. -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동안 학생들과 함께 행동한다. - 실종 또는 부상학생이 1 있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전까지는 안전지역에서 머물도록 한다. - 건물이 파손된 경우, 건물 안 또는 밖의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만일 대피절차를 실행하였다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까지 절대로 다시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사고에 따라 취한 모든 행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다. 교내에서의 화학(위험)물질의 유출에 따른 절차 및 행동요령






학교장은 학교안전비상운영계획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노출된 위험 물질의 특성에 기초하여 적합한 학교사고지휘관을 지정하고, 사고현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진 응급 대응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 대응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한다. 일단 재난안전지휘관이 도착한 이후에는 이들의 지시에 따르고 이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임무 및 행동요령

구분	임무 행동요령
발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이 일어난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한 후, 그 지역에서 벗어난다. -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서 감염지역으로의 접근을 금지 시킨다. - 학교장에게 위험물질의 유출에 대한 내용을 보고한다. - 유출물질을 치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 만일 유출물질과 접촉하였다면, 응급처치 방안을 찾아본다.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방방청과 공중보건기관에 위험물질의 유출을 통보한다. - 제공 정보는 학교명과 주소, 유출사고가 발생한 위치, 유출된 위험물질의 이름, 유출물질의 특성, 부상자 발생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대피 등 어떤 절차를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응급재난기관과 경찰에 대피절차를 시행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한다. - 대피 시에 화학물질이나 유독가스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시설 관리자에게 환기 시스템의 가동을 정지시킬 것을 지시한다. - 내부와 외부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한다. -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도보, 교통수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 위험대응기관으로부터 모든 것이 안전해졌다는 신호를 받기까지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 학교를 임시로 폐쇄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사고와 관련하여 취한 모든 활동들을 기록한다.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과 학생을 위험지역 가까이에서 벗어나도록 이동시키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위험지역에 다시 들어간다거나 모이는 것을 금지시킨다. - 사고지휘관에게 위험물질의 위치와 유형에 관해 보고한다. - 대피절차를 실행하고 재집합 장소로 학생들을 이동시킨다. 만일 재집합 장소에 도시가스나 LPG 유출에 의한 냄새가 존재한다면,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알린 후 즉시 그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출석부, 응급키트, 그리고 사고와 관련한 필요물품을 챙긴다. - 모든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는지를 체크한다.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학생들끼리만 남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대피 장소에 도착한 이후 출석을 확인한다. 실종 또는 부상학생이 있는 경우 사고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 응급구조기관으로부터 모든 것이 안전해졌다는 신호를 받기까지 절대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사고와 관련하여 취한 모든 활동들을 기록한다.

19. 응급 상황

가.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응급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의 전반적인 모습, 행동,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한다
상태파악 및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한다. • 환자의 상태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119에 전화를 걸어 물어 본다. •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119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는다. • 구급차를 불러야 할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일반차량으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경우 2차 부상 등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안전한 환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요원이 현장에 오기 전에는 가급적 환자를 옮기지 않는다. • 현장이 위험하면 이차적인 손상에 주의하면서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응급처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취할 경우 효과가 가장 크다. • 주위에 있는 사람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나. 119 신고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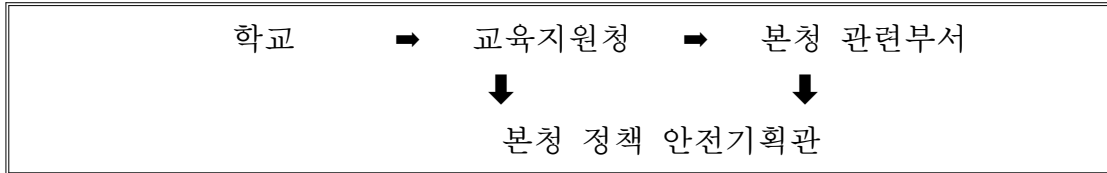
- 1) 정확한 사고위치
- 2) 응급상황 설명(심장발작, 사고 등)
- 3)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 4) 환자의 상태
- 5) 환자에게 처치한 응급처치 내용(심폐소생술 등)
- 6) 다른 질문이 없는 지 확인(예시 : “끝어도 되겠습니까?”)

* 응급의료요원이 더 이상의 지시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때까지는 통화를 유지함.

* 통화를 마친 후에는 119가 오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1. 피해상황 보고

- 가.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먼저 보고
- 나. 추후, 피해상황 및 대책 등 서면 보고



2.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

대상학생 상담교사(사) 상담 및 지역교육지원청 Wee센터 연계 등 협력기관 활용

3. 시설 복구

- 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 재난복구비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청구
- 나. 청구절차 : 사고발생 → 공제급여 신청 → 현장 확인 → 결정 및 송금

4. 피해보상의 청구 등

- 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로 공제급여 청구
- 나. 청구절차 : 사고발생→사고통지(공제급여관리시스템)→치료→청구→심사 및 지급

[붙임 2] 교직원 비상연락망(명단 및 연락처)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써,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청원경찰·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② 본 가이드라인은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후 교육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학생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제14조 1항과 2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이나 이름표를 출입증으로 갈음하여 사용한다.

제4조(발급원칙) ①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별표1]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은 3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증의 발급

제5조(출입증의 종류) ① 출입증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 세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일반출입증(일반차량출입증 포함)
2. 일일방문증(일일차량출입증 포함)

제6조(발급권자) ①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② 출입증 발급 업무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인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르며,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출입증 번호, 사진, 성명,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③ 일일방문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면은 방문증 번호,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방문객 준수사항,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④ 일반차량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면은 차량 출입증 번호, 차량번호, 유효기관,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⑤ 일일차량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차량 방문증 번호,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방문객 준수사항,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제8조(일반출입증 발급)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심사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일일방문증 발급) 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거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방문자의 신분증을 대조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일방문증은 학교의 방문객 수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적정한 수량을 경비실에 발급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구비서류) 일반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3. 사진(3cm × 4cm) 1매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분증과 신청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
3. 교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기타 학교관리·학생보호에 위협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3장 출입관리

제12조(관리인력·업무) 학교 출입 관리 업무는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등)이 경비실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단, 학교의 시설·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해 지정된 별도의 인력이 별도의 장소에서 학교 출입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3조(출입문 개폐 등) ①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하여 출입문 개폐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입관리를 위해 학교 영역을 표시하는 구조물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출입문의 수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다수일 경우 학교장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출입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출입문에 출입증 교부장소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증 패용) ① 출입증은 교내에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 또는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한다.

제15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조치하며, 향후 출입증 발급을 금지한다.

제16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권자가 일정기간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전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방문객의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출입수칙의 게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방문객 출입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개방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 내 보행로

3.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 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절차

5.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출입에 관련된 사항을 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 출입 이외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

다.

제19조(출입거부·퇴교)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교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3.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제18조의 출입수칙을 위반한 경우
5.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20조(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를 발견 시 즉시 학교 내 학생보호 인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② 학생보호인력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하여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입증 취급 시 준수사항

제21조(점검확인) 출입증 발급권자 및 학교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관리) 출입증 발급권자는 출입증 관리 및 교부사항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증명) ① 학교의 장이 인정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출입 시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발행한 출입증 이외의 신분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출입증과 같음 사용하려는 자는 출입증 발급권자와 사전협의 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관리, 회수·반납, 폐기)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 발급된 제 출입증에 대하여 유효기간 경과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인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받은 일반출입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일반출입증 관리대장에 반납 사항을 기재 후 폐기한다.

④ 방문객 퇴교 시 반납 받은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일일방문증 관리 대장에 반납 사항을 기재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제5장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출입증 구분	유효기간	세 부 기 준
일반 출입증	발급일 ~ 최대 3년	1) 계약직,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 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 는 자 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9)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일 방문증	발급 당일	1)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자 3) 학생의 보호자 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1. 제1호 서식]
일반출입증 및 일반차량출입증

출입증 번호 2023-00

일반 출입증

사 진
(3cm×4cm)

홍길동
호원중학교장 직인

앞면 (5.35cm × 8.6cm)

소 속 : _____

직위/직급 : _____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유효기간 : _____

2023. 00. 00.

호원중학교장 직인

뒷면 (5.35cm × 8.6cm)

차량 출입증 번호 2023-00

차량 출입증(일반)

00가 0000 / ~ 2020.00.00 까지
호원중학교장

앞면(15cm × 7cm)

성 명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차 량 번 호 : _____
유 효 기 간 : _____

2023. 00. 00.

호원중학교장인

뒷면(15cm × 7cm)

[별지 1. 제2호 서식]

일일방문증 및 일일차량출입증

방문증 번호 2023-00

일일 방문증

귀하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호원중학교장 직인

앞면 (5.35cm × 8.6cm)

방문객 준수사항

1. 교내에서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중학교장 직인

뒷면 (5.35cm × 8.6cm)

차량 방문증 번호 2023-00

차량 출입증(일일)

이 차량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호원중학교장 직인

앞면(15cm × 5cm)

방문객 준수사항

1. 차량 출입증은 차량의 우측 하단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중학교장

뒷면(15cm × 5cm)

[별지 1.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학교 출입증을 발급 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학교 출입증을 학교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학교 출입증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 분실 및 타용도 사용으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출입증 유효기간 경과 등 출입 사유가 해제되었을 시에는 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호원중학교장 귀하

[별지 1. 제5호 서식]

분실신고서

성 명		연 락 처	
소속기관		직위 / 직급	
주 소			
출입증 종류		출입증 번호	
분실일시		분실장소	
분실경위			

상기 본인은 기 교부받은 위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분실신고자 : (인)

년 월 일

호원중학교장 귀하

[별지 1. 제6호 서식]

단체방문 신청서

방문신청 기관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전 화	
방문일시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까지			
방문목적				
방문인원	총 명 ()			
방문장소				
인 슬 자	성 명		소속/직위	
	생년월일		핸 드 폰	
차량번호 (차 종)				
요청사항				

※ 첨부 : 방문자 개인별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와 같이 ○○학교의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인)

호원중학교장 귀하

[별지 1. 제7호 서식]

일반출입증 관리대장

연번	출입자 기재란								일반출입증 관리인력 기재란					
	이름	소속/직위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차량번호	출입목적	연락처	발급일	출입증 번호		유효기간	출입증 반납	
										일반	차량		일반	차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별지 1. 제8호 서식]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연번	방문객 기재란							일일방문증 관리인력 기재란						
	이름	소속/직위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차량번호	방문목적	발급일	출입증 번호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출입증 반납	
									일반	차량			일반	차량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별지 2] 재난상황 보고서

기 관 명		작 성 자	(서명)	전화번호: E-mail: FAX:
-------------	--	-------------	------	--------------------------

재난 상황 보고

1. 재난개요

- 가. 일시 :
- 나. 장소 :
- 다. 상황개요(사고 원인) :

2. 피해상황

- 가. 인명피해 : 명(사망: 명, 실종: 명, 부상: 명)
- 나. 재산피해 :
- 다. 그 밖의 피해 :

(단위: 천원)

피해상황	기관명	행정구역명	학교급별	설립구분	학교명	피해내용				복구대책		
						시설명	구조	피해정도	피해량	피해액	복구 소요액	복구 계획

재난에 따른 학생수업 관련 조치 현황(등하교 시간조정, 휴업/휴교)

번호	지역	학교급별	학교명	조치사항	비고
1					
2					

※ 조치사항 란은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휴교 등으로 작성(별지작성 가능)
 - 등·하교 시간조정의 경우 구체적인 시간 작성(예: 등교시간 8시→10시로 조정)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이재민 발생 시 수용시설(학교 등) 지정 등 조치 현황

지원 및 협조사항

향후 전망 및 대책

[별지2-1] 피해 현황 사진

위치도

위성사진 삽입	
시설명	피해 소재지 작성

피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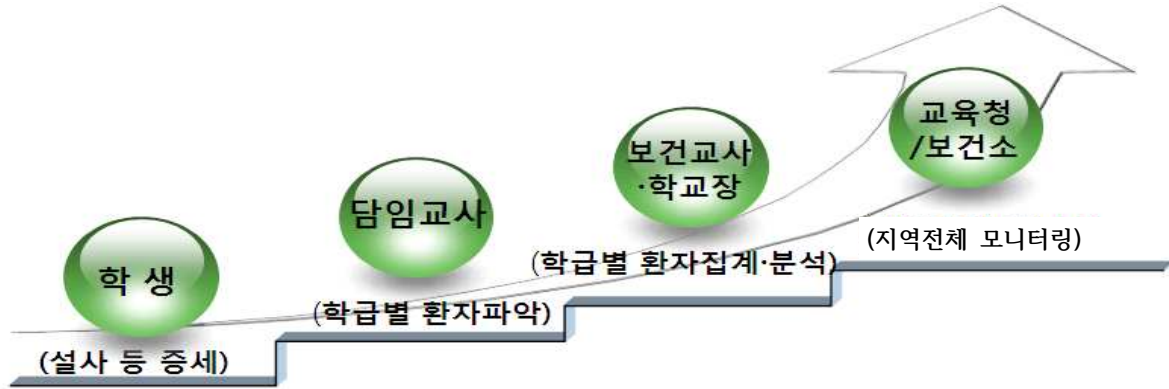
피해 사진 삽입	피해 사진 삽입
피해 내용 작성	피해 내용 작성

[별지3] 자연재해(기상특보) 종류별 학교 수업대책 대응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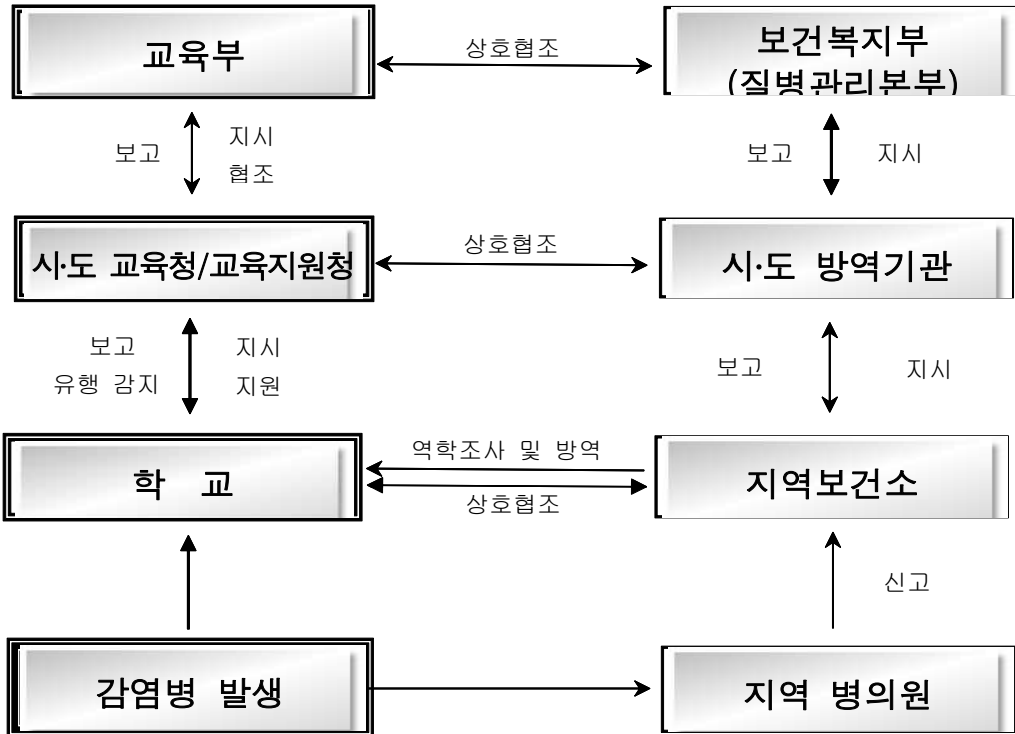
기상특보		발표기준	주요 조치사항	비고
대설	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자제 •단축수업 등(학교장 결정) 	
	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교육감 발령) 	
폭풍해일	주의보	조석(潮汐),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자제 	
	경보	※ 주의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제한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교육감 발령) 	
태풍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의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자제 •단축수업 등(학교장 결정)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풍속 20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이상 예상 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교육감 발령) 	
황사	주의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금지 •단축수업 등(학교장 결정) 	
	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교육감 발령) 	
폭염	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 $^{\circ}\text{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자제 •단축수업 등(학교장 결정) 	
	경보	일 최고기온이 35 $^{\circ}\text{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교육감 발령) 	
오존(O ₃)	주의보	1시간 평균농도 0.12ppm을 초과하고, 초과된 상태를 유지 또는 상승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자제 	대기 오염
	경보	1시간 평균농도 0.3ppm을 초과하고, 초과된 상태를 유지 또는 상승할 때 *중대경보 : 0.5ppm/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활동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교육감 발령) 	

[별지4]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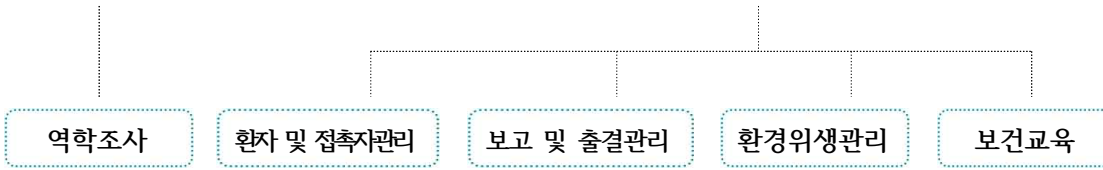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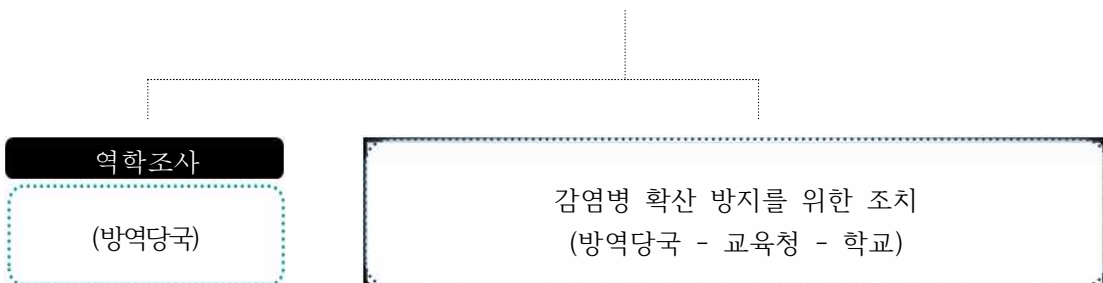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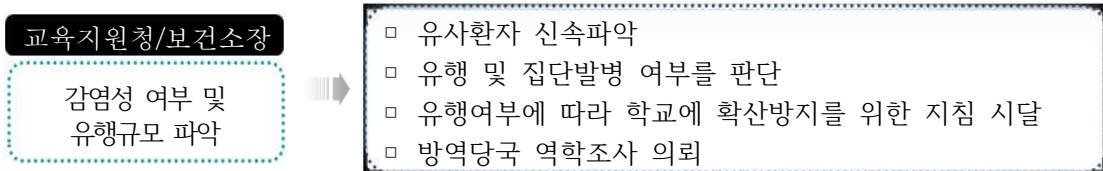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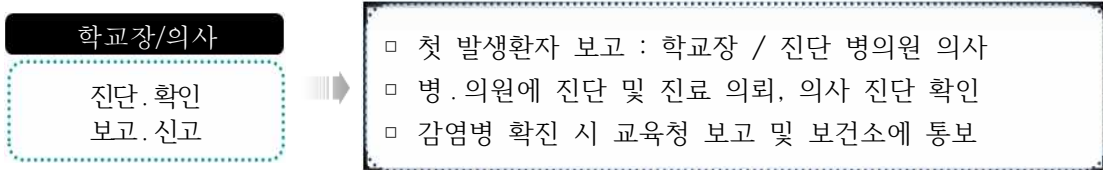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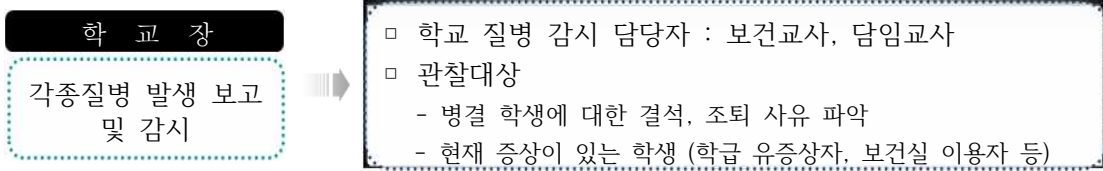
가. 학교 내 감염병 감시 체계



나. 기관간 관리/보고 체계



다. 평상시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검체 채집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조치 ▸ 격리조치 ▸ 접촉자 파악 ▸ 발병감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중지처리 ▸ 휴교휴업검토 ▸ 보고체계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인 환기 ▸ 소독 실시
(시설물, 취약 지역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예방교육 ▸ 개인위생교육 ▸ 학부모 교육 |
|--|--|--|---|--|

1)

1) 소독 취약지구 확인, 손소독제, 비누 등 세정용품 구비 및 화장실 등 위생적 관리 확인

라. 감염병 대유행시 단계별 조치 사항

구분	판단 기준	주요 조치 사항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정보 수집·전파 - 대응태세 점검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홍보 및 예방 교육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지침 시달 - 감염병 확산정보 전파 및 예방활동 강화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 - 방역 실시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 -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재출현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수인성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협조체계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감시 강화 지침 일체 시달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감염 의심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 - 방역 실시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 -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단체활동 금지 - 방역기관 등 협의하에 휴교/휴업 결정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수인성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합동대응, 대국민담화 발표 등 - 감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정보 전파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확산 대비 일체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 방역 실시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 - 각종 단체활동 일체 금지

마. 위기경보에 따른 학교 및 교육청 임무 및 역할

단 계	임 무 및 역 할	
1단계 관심(Blue)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정보 전파 등 예방활동 강화 ▶ 대응태세 점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대응태세 점검 ▶ 감염병 관리 대책위원회 업무 분담 점검 및 업무 담당자 교육
2단계 주의(Yellow)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 감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 (학생, 교직원) 보고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교내 감염학생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가정통신 ▶ 환자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후 격리(등교 중지) 및 보호자에게 통보 ▶ 관리대장, 소독관련 물품, 진단 관련 물품 (체온계 등) 등 점검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 씻기 철저히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 음용수 제공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중단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
3단계 경계(Orange)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 체계 가동 ▶ 관련정보 전파 등 활동 강화 ▶ 각급학교 휴업기준 마련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기관 및 교육청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휴업/휴교 여부 결정 시행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금지
4단계 심각(Red)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기관 및 교육청 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일제 휴업/휴교 조치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금지

별지5 황사 발생 시 대응 체계

황사 피해 예방 단계별 ·특보 발령 단계별 대응 체계

발령 단계		조치 사항
황사 예보 (강한 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반 설치 · 운영(기상청 발표상황 수시 파악) ○ 비상연락망 가동 준비
황사특보	황사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 가동 ○ 실외 · 야외활동 자제 ※ 방진 마스크 등 착용 조치
	황사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조치 발령(교육감) : 지역 및 적용 학교 결정 - 등 · 하교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

황사 발령 시 대응조치 발령 권한 : 교육감

○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대응조치 발령에 따라 조치 후 조치결과 보고

○ 선택된 지침에 대하여 각급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통보하여 혼란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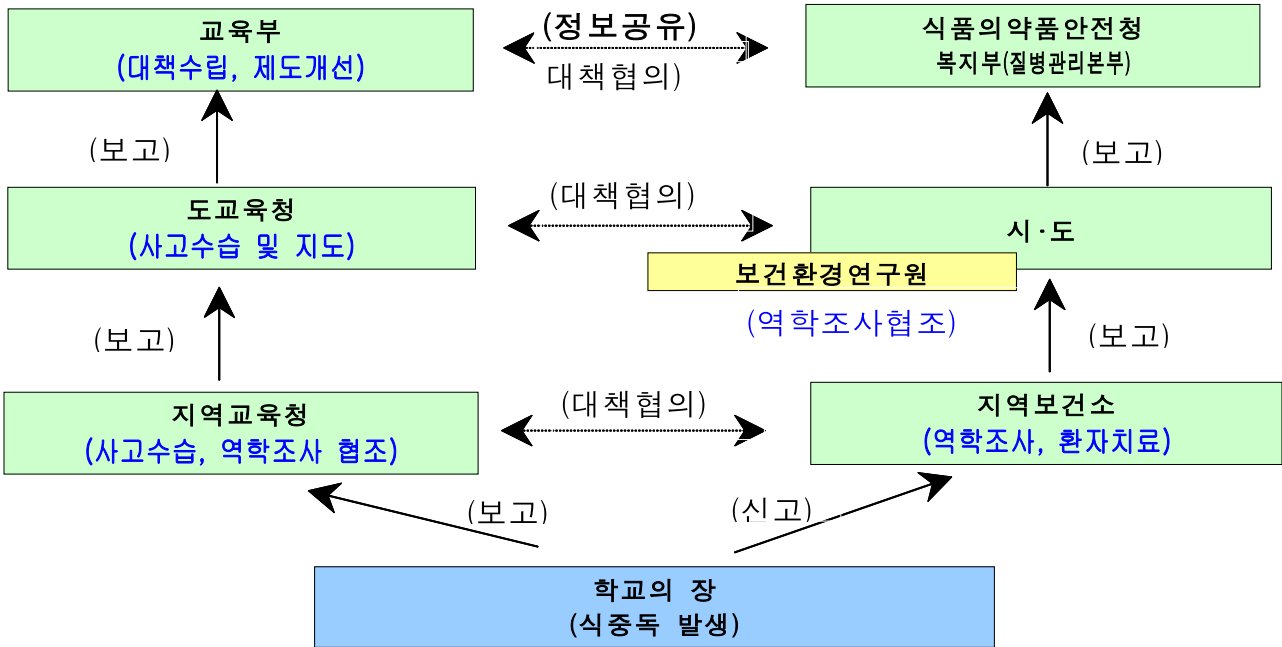
황사 발생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별	기관별	행 동 요 령
황 사 발생 전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 및 환경부의 기상예보 청취 및 분석 ○ 기상상황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신중 검토 ○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 재량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등 결정·통보 ○ 황사기간 중 학생 대상 각종 대회 및 행사시기 조정 검토 ○ 조치결과를 교육부에 신속히 보고
	초·중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발생 대비 단위학교별 학부모 대상 홍보 ○ 황사 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학생행동요령 포함) 실시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 점검 ○ 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에 대한 정보(일기상태 등)를 미리 습득하여 유아들에게 알림 ○ 황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병을 예방 접종토록 함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유아건강 안전 연계 지도 홍보 ○ 황사 등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훈련 실시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황사 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단계별	기관별	행 동 요 령
황 사 발 생 기간 중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 건강 피해 상황, 수업 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 정상수업 진행 여부 결정·통보
	초중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교육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야외 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보건위생교육 철저 : 마스크 착용 및 외출 시 귀가 후 얼굴, 손 씻기 지도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시 마스크,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외출 후 자주 손 발 씻기 등 몸의 청결 유지, 옷세탁 ◦ 유아들의 실외 놀이 삼가 ◦ 물을 많이 먹도록 함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부득이한 등교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근무 : 평상시처럼 근무 ◦ 관할청의 휴업 및 휴교명령 시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일 : 정상 근무(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은 아님) - 휴교일 :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관리업무 등 수행
황 사 종료 후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 피해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초중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유치원 대청소 실시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직원 및 학생 파악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 건강진단

[별지6]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체계

□ 평산시 학교 식중독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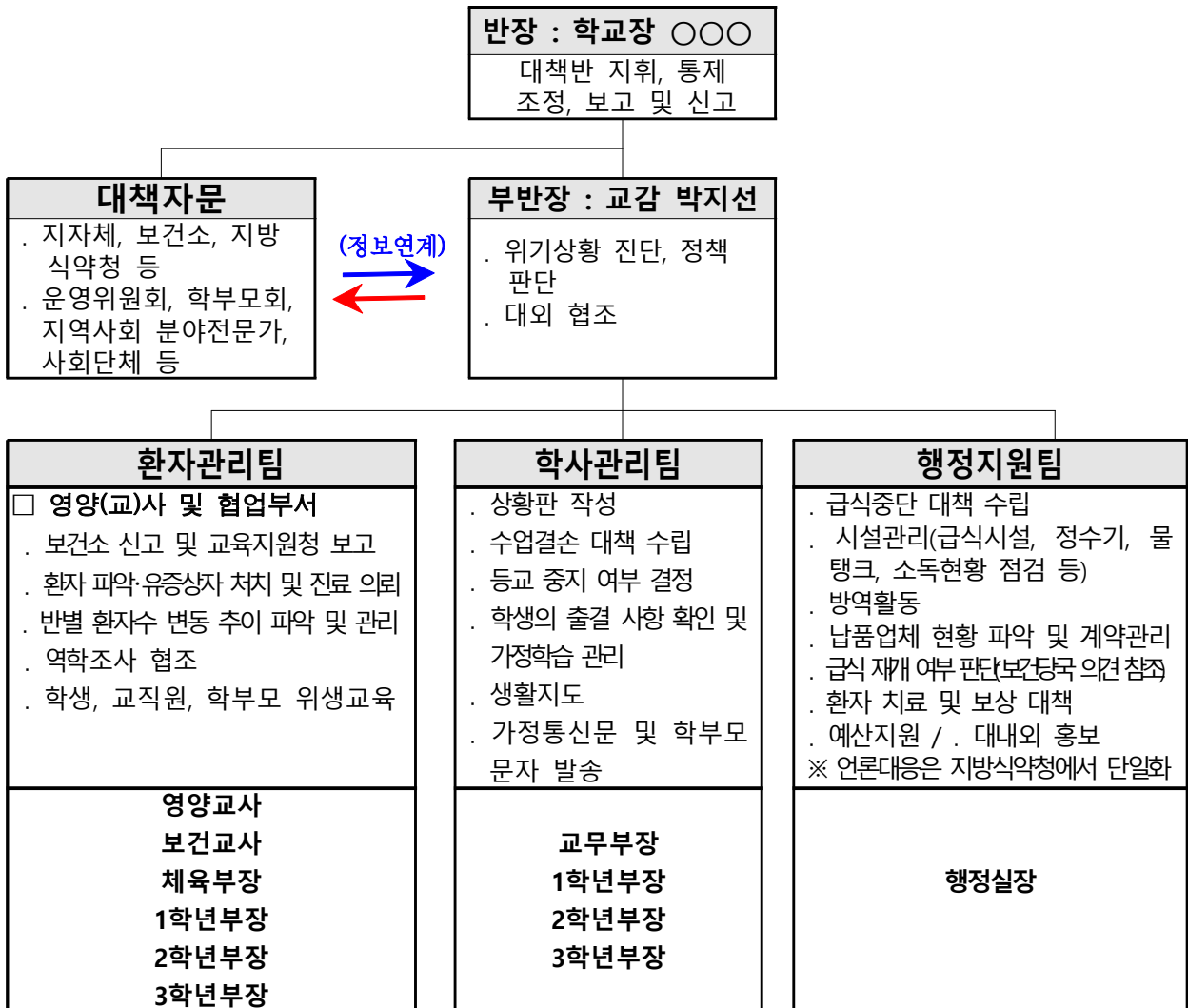
□ 학교 식중독 발생 확산시 단계별 조치 사항

구분	관심 (Blue)	주의 (Yellow)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지수 : 10~34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지수 : 35~50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팀균 검출보도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 발생 •일부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교과부/교육청) ▶ 급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교과부/교육청) ▶ 복통·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학교)
구분	경계 (Orange)	심각 (Red)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지수 : 51~85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 •일부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 이상 발생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지수 : 85이상 •집단급식소에서 100명 이상 식중독 발생 •단위학교 학생의 30% 이상 설사환자 발생 •3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사고 대책본부 운영(교과부/교육청) ▶ 체험학습 억제, 급식 중단, 대책반 운영(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사고 대책본부 비상근무(교과부/교육청) ▶ 급식 및 체험학습 중단, 대책반 비상근무(학교)

[별지기 학교 비상대책반 (호원중학교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 구성 : 교직원 및 대책자문기구 포함 적정인원 구성
- 특성
 -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교육활동구성원과의 공동대응으로 학교급식 조기 정상화
- 기능
 - 환자과약, 환자관리, 행정지원, 학사관리 철저 등 학생중심, 현장중심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체계 구축
 -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지자체, 보건소, 지방식약청 등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역인프라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 조기 정상화

□ 조 직



□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직 및 인원 증감 등 탄력적으로 운영